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Judgment and improvement pla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강은영·강민영·박지선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그간 학계 및 민간영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진짜 강간’ 신화나 진정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 등 법관의 젠더편향성이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진술신빙성 판단이란, 일반화하거나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일반인 경험칙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구는 성폭력사건의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첫째, 판례분석과 다양한 판결문 연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판단자의 젠더편향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합리성 판단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혹은 젠더 편향성이 성폭력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학계 및 실무현장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기초자료로 잘 활용되고, 나아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년 동안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박지선 교수님, 강민영 변호사님, 황정미 조사연구원 그리고 판결문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연구보조원들과 실험연구에 참여해준 로스쿨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강은영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강은영

서 론	17
-----------	----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제2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성인지감수성 관련 쟁점	24
1.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24
2. 진술신빙성 판단: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	27

제2장 박지선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 실험연구	33
--	----

제1절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35
1. 연구내용	35
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45
제2절 실험연구 분석결과	47
1. 사건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49
2.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58
3.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70
4. 매개효과 분석	81

제3절 분석결과 요약	116
1.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116
2.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분석	117
3. 매개효과 분석결과	118

제3장 강은영 · 강민영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

사례 연구 123

제1절 대법원 판례 분석	125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분석	126
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분석	135
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분석	157
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분석	159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분석	161
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분석	168
7.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분석	173
8. 대전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1543 판결 분석	175
9.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 결과	180
제2절 하급심 판결문 분석	189
1. 판결문 조사 개요	189
2. 분석 방법: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일반적 피해자의 경험칙	200
3. 진술 내적 요소	203
4. 진술 외적 요소	227
5.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저항정도,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	235
제3절 분석결과 요약	255

제4장 강은영 · 강민영 · 박지선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 265

제1절 실험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268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68
2.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요인 270
3. 형사사법 기관 성폭력 처리 절차 및 판단 개선에 대한 함의 271
4. 성폭력 사건 실무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274

제2절 사례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275

1.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275
2. 하급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278
3.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논증과 성인지감수성의 적용 288

참고문헌 295

Abstract 311

부 록 321

1. 판결문 기록조사지설문 321
2. 실험연구 설문지 331

표 차례

[표 1-1] 연구방법별 연구내용	22
[표 2-1] 12가지 실험 조건 구성	37
[표 2-2] 연구참여자 성별 및 연령, 소속 분포	46
[표 2-3] 연구참여자 실험 조건 분포	47
[표 2-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49
[표 2-5]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50
[표 2-6]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51
[표 2-7]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51
[표 2-8]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52
[표 2-9]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52
[표 2-10]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53
[표 2-11] 피해자다움에 대한 부합여부 판단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53
[표 2-12]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해자 책임 인식 차이	53
[표 2-13]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54
[표 2-14]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54
[표 2-15]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	55
[표 2-16]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55
[표 2-17]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56
[표 2-18]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57
[표 2-19]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 책임에 판단 차이	57
[표 2-20]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57
[표 2-21]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58
[표 2-22]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59
[표 2-23]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59
[표 2-24]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59
[표 2-25] 판단자 성별에 따른 성차별의식 평균 차이	60
[표 2-26] 판단자 성별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의식 차이	60

[표 2-27] 판단자 성별에 따른 온정적 성차별의식 차이	61
[표 2-28] 판단자 성별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평균 차이	62
[표 2-29] 판단자 성별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62
[표 2-30]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64
[표 2-31]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64
[표 2-32]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65
[표 2-33]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65
[표 2-34] 판단자 연령에 따른 성차별의식 차이	65
[표 2-35] 판단자 연령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의식 차이	66
[표 2-36] 판단자 연령에 따른 온정적 성차별의식 차이	67
[표 2-37] 판단자 연령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68
[표 2-38] 판단자 연령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68
[표 2-39]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71
[표 2-40]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2
[표 2-41]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3
[표 2-42]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4
[표 2-43]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2-44]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2-45]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6
[표 2-46]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7
[표 2-47]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7
[표 2-48]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8
[표 2-49]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9
[표 2-50]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0
[표 2-51]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1
[표 2-52]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82
[표 2-53]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84
[표 2-54]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86
[표 2-55]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87
[표 2-56]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89
[표 2-57]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91
[표 2-58]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93
[표 2-59]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94
[표 2-60]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97

[표 2-61]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98
[표 2-62]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0
[표 2-63]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2
[표 2-64]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3
[표 2-65]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4
[표 2-66]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7
[표 2-67]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09
[표 2-68]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11
[표 2-69]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12
[표 2-70]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114
[표 3-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공소사실 내용	135
[표 3-2] 조사 내용	189
[표 3-3]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190
[표 3-4] 사건 판결 법원	190
[표 3-5] 1심 판결	191
[표 3-6] 징역형 형기	192
[표 3-7] 죄명	192
[표 3-8] 경합여부 및 종류	193
[표 3-9] 피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4
[표 3-10] 피고인의 범죄경력	195
[표 3-1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95
[표 3-12] 피고인-피해자 관계 특성	197
[표 3-13] 성폭력 행위 유형	197
[표 3-14] 폭행 유무 및 유형	198
[표 3-15] 피해자 저항	199
[표 3-16] 음주 여부	199
[표 3-17] 피해 이후 피해자 대응	200
[표 3-18] 범행 후 가해자 태도	200
[표 3-19] 분석틀: 진술신빙성 판단요소의 구분	202

제1장 연구개요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성폭력범죄는 개인 간의 성적 접촉을 주된 범죄내용으로 하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인 쟁점이 됨
- 법관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사실판단자인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실제 진술내용의 합리성, 경험칙 상 부합 여부나 증인의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정에서 “진짜 강간” 신화나 “진정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 법관의 젠더편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사건의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분석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첫째,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단자의 젠더 편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합리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판례연구와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둘째,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진술 과정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요소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혹은 젠더 편향성이 성폭력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실험연구를 실시함

2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연구방법은 세 가지로, 첫째, 국내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사건 요소 및 피해자 진술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8건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셋째, 약271건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요소별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함

연구방법		분석/조사 대상	분석내용
실험연구		로스쿨 재학생 600명	•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사례 연구	판례분석	대법원 판례 8건	•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는 방식
	판결문 분석	하급심 판결문 271건	•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 유형화 • 요소별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 제시

제2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실험연구

제1절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관련 요인
 - 첫째,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음
- 셋째,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는 사람인지(연인 관계)에 따라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함. 또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의 차이를 분석함
-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 관련 요인
 - 연구참여자 성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연령의 경우 조사 참여자 중 20대가 약 70%인 점을 고려하여, ‘20대’와 ‘3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차이를 분석함
 -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있어 성차 및 연령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함
- 조사내용과 구성
 - 사건 관련 세 개의 요인(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이전 성관계 경험 여부)으로 구성된 총 12가지($2 \times 2 \times 3$) 조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및 유무죄 판단, 피해자 책임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함
 -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함께, 양가적 성차별의식(적대적, 온정적)과 강간 통념 수용도를 함께 측정하여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 자료 수집 방법
 - 전국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이주일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짐

4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연구참여자 특성

- 전체 600명 중에서 여성이 272명(45%), 남성이 328명(55%)을 차지함
-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28.61세(표준편차 = 4.96)로 최소 연령은 22세이고 최대 연령은 53세임. 연령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한 599명 중 20대가 420명(70%), 30대가 141명(25%), 40대 이상이 28명(5%)임

제2절 실험연구 분석 결과

□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 사건 관련 요인

-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낮은 조건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고,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판단함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판단함
-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고,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며, 연인 관계에서도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함

- 판단자 관련 요인

-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음.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더 높았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았음
- 연구참여자가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적게 인식함. 판단자가 30대 이상인 경우 20대에 비해 양가적,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모두 더 높았음

□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분석

- 상관분석 결과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피고인-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에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판단자가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며 판단자가 여성일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낮게 판단함
- 판단자의 나이가 많고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한 반면,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함

- 회귀분석 결과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높아진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게 평가됨.
- 피고인의 유죄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높아짐
- 피고인 처벌 수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며, 판단자가 여성이고 판단자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아짐
- 피해자의 책임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낮게 판단하였고,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판단함

□ 매개효과 분석결과

- 양가적(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 및 강간통념 수용도
 -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함
 -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함
 -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또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함
- 피해자 진술신빙성
 -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유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며, 진술신빙성이 낮아질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이 더 높아짐
 -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 피고인-피해자 관계(2단계)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림.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일 경우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진술신빙성이 낮아질수록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림
 -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함.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판단자가 여성일수록 진술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함.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함

제3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사례연구

제1절 대법원 판례분석

□ ‘성인지 감수성’ 강조 이후의 성폭력 사건 판례분석

-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이후의 8건의 성폭력 사건, 주로 하급심 법원과 상급심 법원의 유죄 판단이 다른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상급심 법원의 판결문에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기준,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약·분석함
- 각 판결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고려한 구체적인 사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고, 각 유형에 관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분석

□ 판례분석 결과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사정,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위나 이유 등과 같이 그러한 사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8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 분석한 사건 중 다수의 경우에서,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상급심 법원은 그 발견된 사정과 함께 관련된 추가적인 사정,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상급심 법원의 판단 태도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제2절 하급심 판결문 분석

□ 판결문 분석 방법

- 271개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

진술신빙성 판단요소	
진술 내적 요소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구체성
	진술내용의 합리성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 외적 요소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반영 요소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저항정도,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

□ 진술내적요소에 대한 판단

- 법원은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 진술의 내적요소를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함. 1)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범행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2)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그 상황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3)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다른 진술과의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모순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에서 기인됨. 성폭력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강간의 두려움과 공포, 수사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진술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오랫동안 성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술의 구체성이 부분적으로 저해될 수 있음. 또한 강간범죄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나, 피해 당시 피해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역시 많아 피해자 진술내용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쉽지 않음. 이 경우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혹은 판단자가 판단근거로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을 적용하였는지,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경험칙)'을 고려하였는지에 따라 진술신빙성 판단이 상이해짐. 분석 결과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인정함
- 반면 1) 핵심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거나,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정의 단계별로 진술내용이 늘어나고 구체화되어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나, 2)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사건, 3)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합리적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판례, 4) 피해자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진단서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없어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10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사례 역시 있고, 그 일부는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음

□ 진술외적요소에 대한 판단

- 법원은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명확한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나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가 거짓이 없는 경우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거나 성매매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음
- 법원은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판단근거로 언급한 사례 역시 다수 있음
- 피해자의 주변사람이나 진술조력인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여지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반대로 그러한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 역시 많음

□ 피해자다움

-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다수의 판례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많음
- 그러나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혹은 피해 이후 행동과 진술시 태도를 전형적인 피해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부정한 사례들이 일부 발견됨. 대표적인 예는 성폭력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밝은 표정을 짓거나 웃는 등의 행위, 음식을 먹는 행위, 가해자와 일상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전형적인 강간피해자와 상이함을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피해자 저항 및 폭행협박의 인정

- 일부 사례의 경우 혐의의 폭행·협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저항이나 폭행·협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함.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지며, 특히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인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관찰됨

□ 가해자-피해자 관계, 이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며, 강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를 낮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혹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 해서 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행위의 동의나 피해자의 성경력에 대한 해석 면에서도 분석대상 판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진술신빙성을 논의하였음

□ 신고 시기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

- 많은 판례는 피해사실의 신고 시기를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고가 피해 직후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지만, 신고가 피해시기로부터 상당 시간 흐른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그리고,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후적 관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경험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합의를 고려하다가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음

제4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

□ 실험연구 결과 나타난 제도개선 합의점

-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성폭력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남성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한다는 의미임. 피해자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등 이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막고 궁극적으로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성 관련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함
- 여성을 우대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판단자의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남성일 때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 본 연구결과들은 과거 전통적 성역할 구분을 강조하는 적대적 성차별적 의식에 주목해오다가 최근 일견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이나 호의의 형태로 보이거나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대해 보다 주목하고, 그 성편향적 특성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또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함. 판단자의 연령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함.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선을 통해 이차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거나 신고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재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요함
-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됨. 즉, 피해자 진술일관성은 피고인 처벌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 처벌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신문 시에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사 기법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과 법집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
-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며,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될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킴. 결국,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인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는 요소가 성폭력 사건 판단에서 가져올 수 있는 편향의 위험성을 보여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원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피해자상'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판단자의 성차별의식이나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

14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해자 진술신빙성 및 책임 판단, 피고인 유무죄 및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실험연구 결과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강간 사건의 성립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실무자들의 편견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관적 인상, 법관이나 배심원의 주관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부정당하고 배척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줌. 따라서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성편향적 태도를 지양하고 강간 및 강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 특히 피해자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신문 지침 마련 및 관련 교육 진행,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함

- 본 연구결과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이나 성편향적 태도와 관련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 피해나 부당한 비인격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에서 조사관 등 실무자 및 배심원, 판사 등의 성차별의식에 대한 인지 및 개선 교육이 요구됨

□ 판례분석 및 판결문분석을 통해 나타난 제도개선 합의점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진술내적요소와 진술외적요소,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소(피해자다움, 저항 정도, 이전 성경력, 신고시기 등)을 판단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이러한 판단요소의 적용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대체로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보다는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 경험칙을 고려하여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일부 판결문의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등에 기반한 판단들이 적시되어있는데, 해당 사건의 유무죄판결이나 양형과 무관하게, 이러한 판단들이 판결문에 적시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을 의심하게 함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던 기존의 관념들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더라도, 그와 함께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함

-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기 이전에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관념들에 의한 판례가 오랜 기간 축적되었던 만큼, 기존의 관념들을 깨는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증 과정을 판결이유에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요 판례들에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에서 적용한 논리도,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이지, 모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오랜 기간 판례로 축적된 기존 관념에 익숙해진 피고인과 변호인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나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이유에서 충분한 논증 과정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 1 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서 론

강 은 영

제1절 |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성폭력범죄는 개인 간의 성적 접촉을 주된 범죄내용으로 하는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즉, 많은 경우 범죄발생 여부를 판가름 짓는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위법성, 책임소재 및 기초 사실, 사건의 심각성 등의 판단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의심받는 다거나, 심지어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다.

그간 학계 및 민간영역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최초의 인상과 본연의 신념이나 직관에 의해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법관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사실판단자인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실제 진술내용의 합리성, 경험칙상 부합 여부나 증인의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정에서 '진짜 강간' 신화나 '진정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 법관의 젠더편향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다움(순수하고, 망가진 피해자) 통념, 즉 피해 치명성(회복불가능) 통념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 및 법제화를 통해, 형사사법기관과 언론이 피해자의 병리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간과하며, 나아가 피해사실을 부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¹⁾나 전 도지사의 피감독자위력간음 2심 판결에서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²⁾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³⁾ 등에 나타나듯이,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에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와 형평에 따른 증거 판단이 아니라는 법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곧 증거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대법원은 사실인정을 위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되며, 이러한 증명력이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인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5.1. 선고 2011도16413 판결)는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하여,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에 따른 합리성 판단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성폭력사건의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분석하고자 한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 1) 한겨레신문, 2018.9.12. 대법 “‘성추행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불신은 잘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731.html. 최종검색일 2020.12.29.
- 2) 뉴스핌, 2019.2.1. “[안희정 법정구속] ‘피해자 진술신빙성’ 여부가 1,2심 판결 갈랐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214000053>. 최종검색일 2020.12.29.
- 3) 국민일보, 2018.11.28. “미투 영향, ‘성인지감수성’ 성폭력 판결의 새로운 잣대로 등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39278&code=11131900&cp=nv>. 최종검색일 2020.12.29.
- 4) 중앙일보, 2018.11.01. “‘성인지감수성’ 뒤흔들 뒤집힌 재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 <https://news.joins.com/article/23085209>. 최종검색일 2020.12.29.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단자의 젠더편향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무죄추정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의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합리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판례분석과 다양한 판결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 진술 과정 및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요소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혹은 젠더편향성이 성폭력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성인지감수성의 적용 실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연구 내용과 해당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된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즉 사건 요소 및 피해자 진술 요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로스쿨 재학 중인 학생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는데, 1) 피해자 관련 요인(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다움’, 가해자와의 관계)과 2) 판단자 관련 요인(성별 및 연령, 젠더편향성(성차별의식, 강간통념수용도 등)이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가해자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분석하였고, 해당 요인들이 성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 개선 방안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판례분석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형사사법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이 성폭력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친 8건의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 2)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한 판단, 3)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에 관한 판단으로 나누어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표 1-1] 연구방법별 연구내용

연구방법		분석/조사 대상	분석내용
실험연구		로스쿨 재학생 600명	·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사건요인’, ‘피해자요인’, ‘판단자 요인’
사례연구	판례분석	대법원 판례 8건	·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는 방식 ·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한 판단’,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에 관한 판단’
	판결문분석	하급심 판결문 271건	·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 유형화 · 요소별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 제시 · ‘진술내적요소’, ‘진술외적요소’, ‘특수요소(피해자다움, 폭행협박 적용기준)’

셋째,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경험칙에 따른 합리성 판단의 실제, 즉 성인지감수성 혹은 젠더편향성이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실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요소별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약 271건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이며,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를 ‘진술내적요소(진술의 합리성,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 및 ‘진술외적요소(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유, 피해자 진술시 행동, 피해 후 피해자 태도의 일관성과 합리성,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진술의 동기나 이유, 진술로 연계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로 나누고 각각의 요소별로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이 작용하는 방식과 실재를 살펴보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다움’과 ‘폭행협박의 적용기준’의 면에서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단의 실제 역시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괄하는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제1절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을 설명하였고, 제2절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을 논의하고,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사건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피고인과의 관계별로 검증하였고, 2)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사건 관련 요인의 영향분석, 판단자 관련 요인의 영향분석, 그리고 사건 요인과 판단자 요인의 통합모형 분석을 통해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을 살펴보았다. 4) ‘매개효과 분석’은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 분석,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및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례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제1절에는 판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8개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를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 2)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한 판단, 3)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에 관한 판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271개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진술신빙성 판단의 각 요소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판단요소별로 기술된 내용이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분석틀인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는 진술내적요소(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진술외적요소(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로 연계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그리고 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요소(피해자다움, 피해자 저항 및 폭행협박의 인정, 가해자-피해자 관계/이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신고 시기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이다.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 도출된 쟁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쟁점이 개선방안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제2절 |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성인지감수성 관련 쟁점

1. 성인지감수성의 개념

가. 일반적 의미의 성인지감수성 개념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젠더감수성’, ‘성인지성’, ‘성인지력’, ‘성별감수성’, ‘성평등의식’ 등 다양한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일부 연구는 성인지감수성을 젠더감수성으로 번역하고, 젠더의식(gender awareness)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강선미는 젠더 감수성을 ‘성차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즉 젠더 이슈와 불평등을 지각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강선미, 2005:12), 젠더 감수성 측정도구를 개발한 이진영은 젠더 감수성을 “젠더 이슈를 감시하는 능력으로 젠더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들이 미치는 영향, 즉 성차별과 젠더불평등을 인지하는 것”이라 하였다(이진영, 2013:3; 정재원 이은아, 2018:14-15).

반면 광의의 성인지감수성 개념은 불평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행동화하는 단계까지는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연구들에서 광의의 성인지감수성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성기는 성인지감수성을 “특정 시기의 사회문화에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남녀의 성차별적 가치와 구성요소를 간파해내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가는 지적 능력”이라 하였고(이성기, 2019:113), 김성현 등은 “성별 간에 존재하는 성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가 사회 내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발생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김성현 등, 2019:7).

일부 연구는 성인지감수성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곽연희와 정원철은 성인지감수성이 성차별적 감수성, 양성평등의식, 성폭력 감수성의 세 가지 유형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 때 성차별 감수성은 남성중심의 성역할을 문제시하는 인식을 말하며, 양성평등의식은 성별에 따르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녀가 동등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의식이며, 성폭력 감수성은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이해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곽연희, 정원철, 2018:54; 이성기 2019:113 재인용).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strategy)’이 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으로 채택되고, 국제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서 성인지감수성 향상이나 젠더 트레이닝 등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북경 세계 여성대회 이후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여성부를 신설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공식화한 바 있는데, 특히 1999년 UNDP 후원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성 주류화 워크숍’에서 ‘성인지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정재원, 이은하, 2018:15).

성 주류화란 정책과정의 (재)조직, 향상, 발전, 평가 등의 모든 단계와 수준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행위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지 관점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훈련, 성별영향평가 등 일련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윤경희, 양문승, 장일식, 2019:12;), 성인지감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서의 성인지감수성 개념

성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성인지감수성은 보다 제도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이성기, 2019:113). 왜냐하면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책을 수행할 때 사회적 성별(gender)에 따른 역할과 지위,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찰력과 기술을 가지고, 성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해숙, 2004:25-26; 김성현 등,

2019:7 재인용).

2018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을 고려하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하였고,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이성기는 성인지감수성은 남녀의 역할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와 고정 관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이며, 성인지감수성 개념 그 자체는 법관에게 증명력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이성기, 2019:116).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이 요구하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 입각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판단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경험법칙으로서의 ‘피해자의 평균적 기준’ 설정과 이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성기, 2019:116).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판단기준은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 일반인과 피해자의 구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반면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적 피해자 관점의 판단은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이성기, 2019:113).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판단자의 피해자 감수성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당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객관적 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 성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올바른 피해자적 관점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 행위의 의미와 의도를 맥락상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 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변혜정, 2008:111; 이성기, 2019:113).

2. 진술신빙성 판단: 성인지감수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이래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부각되어 왔다(이선미, 박용철, 2020:5). 법원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판단의 전제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와 같이 확립된 법리로서 반복되어 판시되어 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전통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Lievore, 2004:3; Voogt, Klettke, & Crossman, 2019:52). 이 중에서도 특히 진술의 일관성이란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는 과정에서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지칭하며, 사소한 부분에서 표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는 것은 삼가도록 권고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는 특히 성폭력 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해당 사건 발생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즉,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성인지감수성은 개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도희, 2019:37).

특히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전 00도지사의 강제추행 등 사건(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에서,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다움’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에서의 판단에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고려’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고문에 포함하여 실시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분노, 불신, 좌절, 무기력, 두려움, 공포 등 복잡한 심리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증거판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적 고려라 할 것입니다...(중략)

특히 그 판단에 이르는 증거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성인지감수성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일견 피해자가 보인 범행 전후의 언행에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로서의 일반적 반응”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게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수행한 행동 등을 예로 들어 논의하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로 삼았다(정대현, 2018:90).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좋아하는 식당을 찾으려고 노력한 행위, 피고인과 와인바에 동행한 행위, 지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객실에 들어간 행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행위 등이 1심에서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피해자의 행위로 제시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이에 반해 항소심에서는(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단을,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속단하여 배척한 것으로 보았다(이수진, 2019:48; 정도희, 2019:16).

‘피해자답다’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성질이나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회적 편견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운’ 전형적인 혹은 일반적인 반응, 심지어는 피해자로서의 이상적인 행태를 기대 혹은 요구한다(윤덕경, 김차연, 2015:98; 이수진, 2019:44; 정대현, 2018:94; 허민숙, 2018:73). 이처럼 ‘피해자다움’에 근거한 피해자 판단은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상’이라는 통념에 근거하여 이것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김선희, 2019:12; 정도희, 2019:77). ‘피해자다움’이라는 신화(myths)는 사회에서 이미 형성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하게 하며, 편견을 갖고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무력화시키며, 이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다(김선희, 2019:; 허민숙, 2018:77).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러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부당한 인신공격 등을 통해 이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통념상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로 이어질 수 있다(이수진, 2019:52; 이승준, 2008:297; 허민숙, 2018:74).

위 ‘성인지감수성적 고려’에 관한 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듯,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는 고유하고, 복합적이며, 유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 개인의 연령이나 성격, 가치관 등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거나 정형화하기 힘들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범죄 전후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처가 반드시 일관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으며, 사건 직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밝은 표정을 짓거나 웃는 등의 행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며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행위, 피해 내용 진술 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를 보이지 않는 모습 등을 보일 때, ‘피해자다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신빙성을 의심받기도 한다(김선희, 2019:11; 윤덕경, 김차연, 2015:82; 이명신, 양난미, 2012:163; 정도희, 2019:27; 허민숙, 2017:25; 허민숙, 2018:74). 이처럼 ‘피해자다운’,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위’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김선희, 2019:12; 이수진, 2019:44).

피해자다운은 그간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서 수차례 거론되어 왔는데, 다음 한 특수강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합927 판결)에서는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지칭하였다:

“(중략)...다음의 사정들은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의 경위도 자연스럽지 않다. 즉,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시간 상당을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있었던 안 좋은 일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며 함께 누워 있었다. 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1층까지 배웅을 나온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근처에서 경찰차를 보았으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후 04:28경부터 13:12경까지 약 9시간 동안 피고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않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100만 원(700만 원씩 3번 지급)으로 순차 감액한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1,400만 원(700만

원칙 2번 지급)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합의를 요구하면서 경찰, 변호사, 캠페 등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즉, 위의 예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무르거나, 경찰차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 받은 행위, 합의를 요구하다 신고한 행위 등이 ‘피해자다움’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 및 태도라고 보았다.

결국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피해자다움’, 즉 “진짜 성폭력 피해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태도 혹은 행위란,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사건 발생 즉시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절망적이거나 우는 등 감정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고 일상이 파괴되며 주눅들어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모습을 포함한다(이선미, 박용철, 2020:114; 정대현, 2018:94; 최성호, 2019:393).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2017)은 성폭력 피해자 29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의심받는 피해자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수행하는 피해자 전형적인 행동, 즉 ‘피해자다움 수행’을 우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행위, 피해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옷차림을 더 정숙하게 하기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정형화된 행동패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비난받으며, 형사사법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워진다(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119).

결국 법원에서 ‘일반적인 피해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피해자상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윤덕경, 김차연, 2015:98; 이선미, 박용철, 2020:177).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불신하며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되기도 한다(허민숙, 2017:7; Lonsway, 2010:136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며, 강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를 낮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Ben-David,

& Schneider, 2005:387). 실제로 전국 법원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강간 사건들 중 1심 판결문의 판결 이유에 '신빙성', '경험칙' 두 단어를 포함하는 총 474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확정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안면이 없는 경우 유죄 확정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는 관계일수록 피고인의 무죄 확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 박용철, 2020:166). 때로는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부정당하기도 한다(김민정, 권민숙, 김선영, 2017:124).

미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위증 가능성 판단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이선미, 박용철, 2020:25).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재판 등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전 성경험 여부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동하기도 한다(이수진, 2019:53; 최성호, 2019:384). 즉,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과는 관계없는 피해자의 품행이나 과거 성관계 경험 등의 요소가 사회적 편견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통해 피해자 증언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이수진, 2019:53; 최성호, 2019:384). 특히 피고인과 이전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경험이 현재의 피해 조사에서 강간의 성립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허민숙, 2018:78; Campbell, Menaker, & King, 2015:31). 실제로 474건의 강간 사건 판결문을 대상으로 해당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확정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호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가 이전에 존재할수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미, 박용철, 2020:167).

제 2 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 실험연구

박 지 선

제2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 실험연구

제1절 | 실험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가. 피해자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사건 관련 요인과 판단자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사건 관련 요인

사건 관련 요인은 첫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인지에 관한 진술 일관성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건 관련 두 번째 요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는가에 관한 '피해자다움' 여부이다.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있다.

사건 관련 본 연구에서 조사할 세 번째 요인은 피고인과의 관계 요인이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연인 관계) 여부에 따라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서로 아는 관계(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 경력이 있는지, 즉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 판단자 관련 요인

가장 먼저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 및 피고인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판단자의 젠더편향성이 성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았는데, 여기서의 젠더편향성이란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태도 및 인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을 지칭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판단자의 성차별의식이나 강간통념수용도 등의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 및 피고인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성폭력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 개선 방안에 대한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나. 조사내용과 구성

본 연구는 2020년 현재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묘사를 읽고, 이후 문항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건은 2018노3367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8.20. 선고)의 실제 강간 사건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 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작하는 요인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여부로 연구참여자들은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 2)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낮음 등 두 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무선헌당되었다. 두 번째,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로서 사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1)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거나(피해자다움 부합), 2) 태연하게 차분함을 유지하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모습(피해자다움 비부합)을 보이는 등 두 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연구참여자들이 무선헌당되었다. 셋째, 피고인과의 관계(이전 성관계 경험 여부)로서 연구참여자들은 피고인이 1)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 2) 연인 관계(이전에 합의된 성관계 경험 존재), 3) 연인 관계(이전에 합의된 성관계 경험 부재) 등 세 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무선헌당되었다.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총 12가지($2 \times 2 \times 3$) 조건 중에 하나로 무선헌정되었으며, 각 조건은 50명 내외의 연구참여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작하는 세 개의 요인(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피고인과의 관계와 이전 성관계 경험 여부) 이외에 모든 내용은 전체 연구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총 12가지 실험 조건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1] 12가지 실험 조건 구성

실험조건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
1	높음	부합	처음 만난 사이
2	낮음	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3	낮음	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4	높음	비부합	처음 만난 사이
5	높음	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6	높음	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7	높음	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실험조건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
8	높음	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9	낮음	비부합	처음 만난 사이
10	낮음	부합	처음 만난 사이
11	낮음	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12	낮음	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12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실험 조건(진술일관성 높음, ‘피해자다움’ 부합, 처음 만난 사이)과 두 번째 실험 조건(진술일관성 낮음, ‘피해자다움’ 비부합, 성관계 전력 있는 연인 사이)에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다음에 제시하였다(나머지 10개의 시나리오 각각은 부록 실험연구 조사지 참조).

실험 조건 1: 진술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부합),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 조건 2: 진술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비부합), 피고인과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있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 발생 이전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으로 본 실험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작검증 문항을 포함하였다. 첫째, '피해자다움'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앞의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사회통념상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1) '전혀 가깝지 않다'부터 7) '매우 가깝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위해 앞의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에는 본 연구에서 조작한 '처음 만난 사이'와 '연인' 외에 다양한 관계(이웃, 직장 동료, 가족 등)가 선택지로 포함되었다. 셋째, 진술 일관성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앞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 일관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는지를 1) '전혀 일관적이지 않다'부터 7) '매우 일관적이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첫째,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1) '전혀 신빙성이 없다'부터 7) '매우 신빙성이 높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둘째, 이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셋째,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1) '처벌 받지 않는다'부터 7) '최대한 무거운 처벌'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1) '전혀 책임이 없다'부터 7) '상당한 책임이 있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대답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인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가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척도들을 함께 사용하여 판단자의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양가적 성차별주의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다르게 구분짓고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직업을 가진 현대적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향적 태도를 나타내는 적대적 성차별적 인식에 주목하고, 이러한 인식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Begany & Milburn, 2002:120). 즉,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역할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일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에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김은지, 박지선, 2011:176). 그런데 최근에는 가부장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맞는 여성을 칭찬하고 우대하며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양상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윤병해, 고재홍, 2006:3; Glick & Fiske, 1996:491). 이러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만, 과거에 주로 남성들의 역할이나 지위에 해당

하는 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가부장적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성편향적이라 할 수 있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41; Glick & Fiske, 2000:111). 특히 국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성차별적 인식에서의 양가적인 특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05; Glick 외, 2000:27).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공통적으로 ‘부성주의’, ‘성역할 분화’, ‘이성애’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다(안상수 외, 2005:41; Glick & Fiske, 1996:493). 우선 부성주의에 있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권력이나 지위 등에서 결정권을 갖고 우위에 서야 한다는 지배적 부성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때에 남성은 여성을 우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보호적 부성주의로 나뉜다. 성역할 분화에 있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여성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중요한 업무나 직책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는 세심함이나 감성적인 특성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가사일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적합함을 주장하는 보완적 성역할 분화로 나뉜다. 이성애에 있어서는, 여성은 필요한 경우 외모 등을 통해 남성을 유혹하고 이용한다는 적대적 이성애, 남성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여성의 애정이 필요하다는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는 친밀한 이성애로 나뉜다(안상수 외, 2005:41; Glick & Fiske, 1996:493).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할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피해자의 고통은 더 적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가볍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윤병해, 고재홍, 2006:11). 한편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 태도는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더 묻고, 피해자의 고통은 낮게 평가하며, 가해자 처벌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서윤정, 박지선, 2013:48).

흥미로운 점은 성폭력 피해자 비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116). 피해자 비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이 없었으나, 지인일 때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뚜렷할수록 더 피해자를 비난하였다(Abrams 외, 2003:116).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서로 아는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덜 비난하고 더

짧은 형량을 부과하였으나, 서로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Viki, Abrams, & Masser, 2004:300).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영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뚜렷할수록 가해자를 덜 비난한 반면, 여성들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할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다(이정원, 김혜숙, 2012:55). 이처럼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일반인과 함께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통해 성폭력 이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운정, 박지선, 2013:37).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 안상수 외, 2007:58)를 사용하여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적대적 성차별의식(Hostile Sexism: HS)을 측정하는 12개의 문항은 세 하위 척도, 즉 ‘지배적 부성주의(dominant paternalism: HP)’,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HD)’, ‘적대적 이성애(heterosexual hostility: HH)’를 측정하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적 성차별의식(Benevolent Sexism: BS)을 측정하는 12개 문항 역시 세 하위 척도, 즉 ‘보호적 부성주의(protective paternalism: BP)’,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ementary gender differentiation: BD)’, ‘친밀한 이성애(heterosexual intimacy: BH)’를 측정하는 각각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하위 척도 및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적대적 성차별의식(Hostile Sexism)	
HP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HD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HH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온정적 성차별의식(Benevolent Sexism)	
BP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BD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BH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할 것이다.

* 출처: 안상수 외(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 p.58

2) 강간 통념 수용도

강간 통념(rape myths)이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자 및 가해자, 강간 사건 등에 대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보이는 왜곡된 편견이나 태도를 의미한다(이석재, 1999; Burt, 1980: 217). 강간 통념은 특정 사건에서 강간죄의 성립 기준이나 강간의 발생 원인, 피해자의 행실에 대한 왜곡된 평가 등 강간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폭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김범준, 2007:59). 즉, 강간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거나 음주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를 유발했다는 등의 인식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Burt, 1980:223). 더불어, 애초에 품행이 좋지 않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강간 피해자가 된다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숙하게 행동하지 않아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지, 실제로는 상호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인데 후에 금전적 목적 등을 이유로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신고했다는 등의 인식 등이 포함된다(이석재, 최상진, 2001:102; Lonsway & Fitzgerald, 1994:135). 이러한 강간 통념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필연적으로 이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이석재, 1999:132; 이승준, 2008:297; Lonsway & Fitzgerald, 1994:136). 특히 강간 범죄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편인데(박형민 외, 2019:70), 높은 강간 통념은 강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돌리는 피해자 범죄 유발 등의 논리로 인해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는 실제로 강간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경찰이나 법원 등의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가 이러한 강간 통념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보인다면, 이는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신고를 꺼리며 장기적으로는 강간 범죄의 재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Peterson & Mulenhard, 2004:130). 실제로 경찰의 강간 통념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를 보일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고, 강간 사건으로 겪을 피해자의 고통을 더 낮게 생각하며, 강간 가해자에 가벼운 처벌을 내리며 형량을 낮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 김정희, 2011:90).

과거의 연구들은 강간 통념에 있어서의 성차를 꾸준히 보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의 강간 통념 수용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이건호, 강혜자, 2009:23; 이석재, 최상진, 2001:104). 이렇게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는 실제 높은 성적 공격성과 연결된다(이석재, 최상진, 2001:106). 더불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재, 1999:137; Ben-David, & Schneider, 2005: 387; Burt, 1980:224).

본 연구에서는 강간 통념 수용도 척도로서 McMahon과 Farmer(2011)의 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SRM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 '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2.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3. 여성이 남자와 단 둘이 방안으로 들어간다면, 강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탓이다.
4. 문란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5.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는 종종 '싫다'고 말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여성이 먼저 키스를 하거나 유혹하기 시작했다면,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7.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대체로 강한 성욕 때문이다.
8. 남성은 보통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나, 때로는 견장을 수 없이 너무 흥분하기도 한다.
9.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10. 남성이 술에 취했다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강간할 수도 있다.
11.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12.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
13. 여성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했는지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
14.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5. 여성에게 멍이나 상처가 없다면, 강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6.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7.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18.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실제로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이를 후회하는 것이다.
19. 강간 신고는 종종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0.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 중 많은 경우가, 남성을 유혹했지만 나중에 이를 후회한 것이다.
21.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22. 바람을 피우다 걸린 여성들은 때때로 그것이 강간이었다고 주장한다.

*McMahon & Farmer(2011), Subtle Rape Myth Acceptance Scale(SRMA)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마지막으로 각자의 성별과 연령(만 나이), 소속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에 협조를 얻어 연구 참여에 동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약 이주일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성별과 만 나이, 소속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가 아래 <표 2-2>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을 보면 전체 600명 중에서 여성이 272명으로 약 45%, 남성이 328명으로 약 5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약 28.61세(표준편차 = 4.96)로 최소 연령은 22세이고 최대 연령은 53세였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제외한 599명 중 20대가 420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가 141명으로 약 25%, 40대 이상이 28명으로 약 5%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소속을 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99명(16.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74명(12.3%),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71명(11.8%),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69명(11.5%)의 순으로 많았다. 그 다음 성균관대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50명(8.3%), 원광대 49명(8.2%), 연세대 42명(7.0%), 강원대 41명(6.8%), 인하대 19명(3.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14명(2.3%)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6명(1.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5명(0.8%),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4명(0.7%),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2명(0.3%)이었고,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1명(0.2%)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 [표 2-2] 연구참여자 성별 및 연령, 소속 분포

	항목	빈도	비율
연구참여자 성별	남성	328	54.7
	여성	272	45.3
연구참여자 연령	20대	420	70.1
	30대	141	25.2
	40대 이상	28	4.7
연구참여자 소속	강원대	41	6.8
	건국대	1	.2
	경북대	1	.2
	경희대	1	.2
	고려대	1	.2
	부산대	2	.3
	서울대	99	16.5
	서울시립대	69	11.5
	성균관대	50	8.3
	아주대	50	8.3
	연세대	42	7.0
	영남대	74	12.3
	원광대	49	8.2
	인하대	19	3.2
	전남대	5	.8

	항목	빈도	비율
	제주대	6	1.0
	충남대	71	11.8
	충북대	4	.7
	한국외대	14	2.3
	한양대	1	.2
합계		600	100

총 600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총 12가지 조건 중에 하나로 무선 배정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에 응답하였다(시나리오 외에 모든 내용은 동일하게 제시). 각 실험조건 연구참여자의 빈도 및 성별 분포는 다음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 [표 2-3] 연구참여자 실험 조건 분포

실험조건	빈도	남성	여성
1	50	27	23
2	50	27	23
3	50	27	23
4	52	30	22
5	47	27	20
6	54	29	25
7	48	27	21
8	50	27	23
9	47	26	21
10	49	27	22
11	52	27	25
12	51	27	24
합계	600	328	272

제2절 | 실험연구 분석결과

먼저 본 실험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작검증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피해자다움’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건 묘사에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사회통념상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조건(실험 조건 1, 7, 8, 10-12)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N = 300$, 평균 5.56, 표준편차 1.15)이 부합하지 않는 조건(실험 조건 2-6, 9)의 연구참여자들($N = 300$, 평균 4.03, 표준편차 1.49)보다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사회통념상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더 가깝다고 응답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작이 성공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t = -14.06$, $p < .001$).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해당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작한 '처음 만난 사이'($N = 198$, 실험 조건 1, 4, 9-10)와 '연인'($N = 402$, 실험 조건 2, 3, 5-8, 11, 12)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직장 동료, 가족 등)로 응답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진술 일관성에 대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 일관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실험 조건 1, 4-8)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N = 301$, 평균 5.84, 표준편차 1.03)이 진술일관성이 낮은 조건(실험 조건 2-3, 9-12)의 연구참여자들($N = 299$, 평균 3.83, 표준편차 1.36)보다 피해자 진술이 더 일관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작이 성공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t = -20.43$, $p < .001$).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양가적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리커트 7점 척도 기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의 평균은 5.10, 피고인의 처벌수준의 평균은 4.66, 피해자의 책임수준의 평균은 2.27점이었다. 한편,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변수인 피고인 유무죄 판단과 관련하여 총 600명의 판단자 가운데 전체의 약 77%인 462명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23%인 138명이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성차별의식(7점 Likert 척도)과 강간 통념 수용도(5점 Likert

척도)와 관련하여, 양가적 성차별의식(24문항)의 평균은 2.18로 하위 척도인 적대적 성차별의식(12문항)의 평균은 1.91, 온정적 성차별의식(12문항)의 평균은 2.44로 각각 나타났다.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참여자의 해당 성차별적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강간 통념 수용도의 평균은 1.74였다. 이 역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참여자가 강간 통념에 동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표 2-4]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1.31
피고인 처벌	4.66	1.60
피해자 책임	2.27	1.38
양가적 성차별의식(평균)	2.18	.95
적대적 성차별의식(평균)	1.91	.99
온정적 성차별의식(평균)	2.44	1.16
강간 통념 수용도(평균)	1.74	.59

1. 사건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사건 관련 요인은 첫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인지에 관한 진술 일관성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혹은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사건 관련 두 번째 요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피해자다움’ 여부이다.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더불어 피고인의 처벌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사건 관련 세 번째 요인은 피고인과의 관계 요인이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

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는 사람인지(연인 관계)에 따라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 경력이 있는지, 즉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성이 높은지, 혹은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5>와 같다.

》》 [표 2-5]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평균	일관성 낮음 (N = 299)	일관성 높음 (N = 301)	t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4.79	5.41	-5.96***

*** $p < .001$

조사 참여자 전체 응답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진술신빙성은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이 5.10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실험 조건 1, 4-8)의 연구 참여자들은 낮은 조건(실험 조건 2-3, 9-12)의 연구참여자들보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5.41 > 4.7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5.96$).

2)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차이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약 82%인 반면, 낮은 조건은 약 72%로 약 10%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ext{Chi-square} = 7.62$).

▶▶ [표 2-6]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피해자 진술일관성		전체
	일관성 낮음	일관성 높음	
무죄	83 (27.8)	55 (18.3)	138 (23.0%)
유죄	216 (72.2)	246 (81.7)	462 (77.0%)
전체	299 (100)	301 (100)	600 (100)

Pearson Chi-square = 7.62**

** $p < .01$

3)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7>과 같다. 피고인의 처벌수준의 경우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이 4.66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낮은 조건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고(4.90 > 4.4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74$).

▶▶ [표 2-7]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일관성 낮음 (N = 299)	일관성 높음 (N = 301)	t
피고인 처벌수준	4.66	4.42	4.90	-3.74***

*** $p < .001$

4)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피해자의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8>과 같다. 피해자의 책임은 7점 척도 기준 전체 평균이 2.27이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낮은 집단보다 피해자의 책임을 다소 낮게 인식하였지만(2.22 < 2.3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90$).

» [표 2-8] 피해자 진술일관성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항목	전체 평균	일관성 낮음 (N = 299)	일관성 높음 (N = 301)	t
피해자 책임	2.27	2.32	2.22	.90

나.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조사 참여자들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9>와 같다. 피해자가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조건(실험 조건 1, 7-8, 10-12)의 연구참여자들은 부합하지 않는 조건(실험 조건 2-6, 9)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다소 높게 판단하였지만(5.18 > 5.0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56$).

» [표 2-9]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피해자다움 (N = 300)	비부합 (N = 300)	t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5.18	5.02	-1.56

2)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차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약 80%인 반면, 피해자가 피해자상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74%로 약 6%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하여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ext{Chi-square} = 3.05$).

» [표 2-10]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피해자다움		전체
	부합	비부합	
무죄	60 (20.0)	78 (26.0)	138 (23.0)
유죄	240 (80.0)	222 (74.0)	462 (77.0)
전체	300 (100)	300 (100)	600 (100)

Pearson Chi-square = 3.05

3)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1>과 같다. 피해자가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부합하지 않은 조건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고(4.82 > 4.50)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46$).

» [표 2-11] 피해자다움에 대한 부합여부 판단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피해자다움 (N = 300)	비부합 (N = 300)	t
피고인 처벌수준	4.66	4.82	4.50	-2.46*

* $p < .05$

4)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2>와 같다. 피해자가 피해자상에 부합하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을 다소 낮게 인식하였지만(2.19 < 2.3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42$).

» [표 2-12]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에 따른 피해자 책임 인식 차이

항목	전체	피해자다움 (N = 300)	비부합 (N = 300)	t
피해자 책임	2.27	2.19	2.35	1.42

다. 피고인과의 관계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지, 연인 관계인지에 따라 조사 참여자들의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3>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실험 조건 1, 4, 9-10) 연인 관계인 경우(실험 조건 2-3, 5-8, 11-12)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5.25 > 5.02)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01$).

▶▶▶ [표 2-13]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N = 402)	t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5.25	5.02	2.01*

* $p < .05$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 경력이 있는지, 즉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4>와 같다.

분석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실험 조건 1, 4, 9-10)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된 성관계 전력이 없는 경우(실험 조건 3, 6, 8, 12)가 있는 경우(실험 조건 2, 5, 7, 11)에 비해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다(5.25 > 5.07 > 4.97). 다만,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통한 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2.30$).

▶▶▶ [표 2-14]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이전 성관계 없음) (N = 205)	연인 (이전 성관계 있음) (N = 197)	F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5.25	5.07	4.97	2.30

2)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차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에 약 78%, 연인 관계인 경우 약 77%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ext{Chi-square} = .10$).

▶▶▶ [표 2-15]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

	피고인과의 관계		전체
	처음 만난 사이	연인 사이	
무죄	44 (22.2)	94 (23.4)	138 (23.0)
유죄	154 (77.8)	308 (76.6)	462 (77.0)
전체	198 (100)	402 (100)	600 (100)

Pearson Chi-square = .10

앞서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6>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약 78%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며 성관계 전력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식한 비율은 약 76%,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면서 성 관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식한 비율은 약 78%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ext{Chi-square} = .34$).

▶▶▶ [표 2-16]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피고인과의 관계			전체
	처음 만난 사이	연인 (이전 성관계 무)	연인 (이전 성관계 유)	
무죄	44 (22.2)	50 (24.4)	44 (22.3)	138 (23.0)

	피고인과의 관계			전체
	처음 만난 사이	연인 (이전 성관계 무)	연인 (이전 성관계 유)	
유죄	154 (77.8)	155 (75.6)	153 (77.7)	462 (77.0)
전체	198 (100)	205 (100)	197 (100)	600 (100)

Pearson Chi-square = .34

3)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지, 연인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7>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더욱 무거워야 한다고 인식하였고(4.88 > 4.56)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33$).

▶▶ [표 2-17]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N = 402)	t
피고인 처벌수준	4.66	4.88	4.56	2.33*

* $p < .05$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8>과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 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4.88 > 4.66 > 4.45).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통한 검정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65$).

▶▶▶ [표 2-18]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이전 성관계 없음) (N = 205)	연인 (이전 성관계 있음) (N = 197)	F
피고인 처벌수준	4.66	4.88	4.66	4.45	3.65*

* $p < .05$

4)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람인지, 연인 관계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19>와 같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나 연인 관계인 경우에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12$).

▶▶▶ [표 2-19]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 책임에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N = 402)	t
피해자 책임	2.27	2.28	2.27	.12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연인 관계라고 해도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0>과 같다.

그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면서 성 관계 전력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책임 판단이 가장 높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면서 성관계 전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다만,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통한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33$).

▶▶▶ [표 2-20] 피고인과의 관계(성관계 여부)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처음 만난 사이 (N = 198)	연인 (이전 성관계 없음) (N = 205)	연인 (이전 성관계 있음) (N = 197)	F
피해자 책임	2.27	2.28	2.21	2.32	.33

2.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판단자 관련 요인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참여자 성별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체 600명의 연구참여자 중 여성은 272명(약 45%), 남성은 328명(약 55%)이었다. 연령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생 가운데 20대가 약 70%를 비율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20대'와 '3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후,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인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태도에서의 성차 및 연령차를 살펴보기 위해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가. 성별에 따른 차이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1>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5.55 > 4.73),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8.31$).

▶▶▶ [표 2-21]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여성 (N = 272)	남성 (N = 328)	t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5.55	4.73	-8.31***

*** $p < .001$

2)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차이

또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약 91%인 반면, 남성인 경우 약 66%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ext{Chi-square} = 53.57$).

▶▶▶ [표 2-22]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판단자 성별		전체
	여성	남성	
무죄	25 (9.2)	113 (34.5)	138 (23.0)
유죄	247 (90.8)	215 (65.5)	462 (77.0)
전체	272 (100)	328 (100)	600 (100)

Pearson Chi-square = 53.57***

*** $p < .001$

3)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2-23>과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고(5.24 > 4.1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8.70$).

▶▶▶ [표 2-23]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여성 (N = 272)	남성 (N = 328)	t
피고인 처벌수준	4.66	5.24	4.19	-8.70***

*** $p < .001$

4)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 책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4>와 같다. 분석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을 더 적게 인식하였으며(1.99 < 2.51), 이러한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4.79$).

▶▶▶ [표 2-24]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항목	전체	여성 (N = 272)	남성 (N = 328)	t
피해자 책임	2.27	1.99	2.51	4.79***

*** $p < .001$

5) 성별에 따른 성차별의식 차이

한편,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성차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5>와 같다.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의식(1.61 < 2.65), 적대적 성차별의식(1.38 < 2.35), 온정적 성차별의식(1.84 < 2.94)이 모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25] 판단자 성별에 따른 성차별의식 평균 차이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양가적 성차별의식	2.18	1.61	2.65	16.37***
적대적 성차별의식	1.91	1.38	2.35	14.20***
온정적 성차별의식	2.44	1.84	2.94	13.52***

*** $p < .001$

구체적으로 판단자 성별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6>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에서 모두 남성의 응답 평균이 여성의 응답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26] 판단자 성별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의식 차이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1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2.72	1.77	3.51	13.68***
2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2.80	1.83	3.60	14.10***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려먹는다.	2.21	1.65	2.67	9.34***
4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	1.47	1.15	1.73	7.34***
5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1.61	1.25	1.91	7.85***
6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2.02	1.39	2.55	11.84***
7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62	1.33	1.85	5.66***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8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53	1.19	1.80	8.24***
9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	1.79	1.27	2.21	10.58***
10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38	1.10	1.62	8.32***
11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89	1.33	2.35	10.15***
12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92	1.31	2.42	11.39***

*** $p < .001$

또한 판단자 성별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7>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에서 모두 남성의 응답 평균이 여성의 응답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27] 판단자 성별에 따른 온정적 성차별의식 차이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1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3.27	2.54	3.87	9.41***
2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2.11	1.61	2.52	8.01***
3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2.23	1.67	2.69	8.03***
4	가벼운 집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주어야 한다.	1.78	1.32	2.17	8.70***
5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3.04	2.37	3.59	8.59***
6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82	1.39	2.18	7.54***
7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27	1.60	2.83	10.74***
8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3.20	2.49	3.79	9.30***
9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2.57	1.79	3.21	10.51***
10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2.06	1.47	2.55	9.04***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11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2.93	2.33	3.44	7.46***
12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2.03	1.46	2.50	9.03***

*** $p < .001$

6) 성별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한편,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강간 통념 수용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8>과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강간 통념 수용도 (1.44 < 1.98)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13.27$).

▶▶▶ [표 2-28] 판단자 성별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평균 차이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강간 통념 수용도	1.74	1.44	1.98	13.27***

*** $p < .001$

구체적으로 판단자 성별에 따라 강간 통념 수용도 척도를 측정하는 2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29>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강간 통념 수용도를 측정하는 22가지 항목에서 모두 여성의 응답 평균이 남성의 응답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29] 판단자 성별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1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59	1.39	1.76	5.12***
2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1.34	1.18	1.47	5.38***
3	여성이 남자와 단 둘이 방안으로 들어간다면, 강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탓이다.	1.30	1.17	1.40	4.51***
4	문란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1.76	1.43	2.03	7.36***
5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는 종종 '싫다'고 말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2	1.37	1.83	6.26***
6	여성이 먼저 키스를 하거나 유혹하기 시작했다면,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2.44	1.75	3.02	13.92***

연번	항목	전체	여성	남성	t
7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대체로 강한 성욕 때문이다.	2.20	1.93	2.43	4.75***
8	남성은 보통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나, 때로는 견잡을 수 없이 너무 흥분하기도 한다.	2.38	2.09	2.62	5.24***
9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2.55	2.32	2.74	3.74***
10	남성이 술에 취했다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강간할 수도 있다.	1.41	1.31	1.49	2.63**
11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1.39	1.22	1.52	4.74***
12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	1.55	1.31	1.76	6.20***
13	여성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했음지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	1.49	1.20	1.73	8.44***
14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28	1.11	1.42	6.44***
15	여성에게 멍이나 상처가 없다면, 강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64	1.25	1.95	9.19***
16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09	1.03	1.14	3.80***
17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3	1.61	2.39	8.16***
18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실제로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이를 후회하는 것이다.	1.63	1.28	1.91	10.13***
19	강간 신고는 종종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52	1.80	3.12	15.13***
20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 중 많은 경우가, 남성을 유혹했지만 나중에 이를 후회한 것이다.	1.53	1.22	1.78	9.86***
21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1.27	1.10	1.40	6.25***
22	바람을 피우다 걸린 여성들은 때때로 그것이 강간이었다고 주장한다.	2.22	1.58	2.74	13.51***

** p < .01, *** p < .001

나. 연령에 따른 차이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0>과 같다. 앞서 기술한대로, 전체 600명의 조사참여자 중 연령을 기입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599명 중 20대(20-29세)는 420명(약 70%), 30대 이상은 179명(약 30%)이었다. 이러한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20대'와 '3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판단자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다소 높게 평가하였는데(5.14 > 5.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12$).

» [표 2-30]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차이

항목	전체	20대 (N = 420)	30대 이상 (N = 179)	t
피해자 진술신빙성	5.10	5.14	5.01	1.12

2)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약 79%인 반면, 30대 이상인 경우에는 약 72%로 약 7%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ext{Chi-square} = 4.28$).

» [표 2-31]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고인 유무죄 판단 차이

	판단자 연령		전체
	20대	30대 이상	
무죄	87 (20.7)	51 (28.5)	138 (23.0)
유죄	333 (79.3)	128 (71.5)	461 (77.0)
전체	420 (100)	179 (100)	599 (100)

Pearson Chi-square = 4.28*

* $p < .05$

3)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2>와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가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더욱 무거워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4.71 > 4.54),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 = 1.18$).

▶▶▶ [표 2-32]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 차이

항목	전체	20대 (N = 420)	30대 이상 (N = 179)	t
피고인 처벌수준	4.66	4.71	4.54	1.18

4)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판단 차이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사건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3>과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가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을 더 적게 인식하였으며(2.15 < 2.56), 이러한 집단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3.19$).

▶▶▶ [표 2-33] 판단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자 책임 판단 차이

항목	전체	20대 (N = 420)	30대 이상 (N = 179)	t
피해자 책임	2.27	2.15	2.56	-3.19**

** $p < .01$

5) 연령에 따른 성차별의식 차이

한편,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성차별의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4>와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가 30대 이상인 경우 20대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의식(2.04 < 2.50), 적대적 성차별의식(1.78 < 2.23), 온정적 성차별의식(2.30 < 2.78)이 모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34] 판단자 연령에 따른 성차별의식 차이

	전체	20대 (N=420)	30대 이상 (N=179)	t
양가적 성차별의식	2.18	2.04	2.50	-5.64***
적대적 성차별의식	1.91	1.78	2.23	-4.78***
온정적 성차별의식	2.44	2.30	2.78	-4.45***

*** $p < .001$

구체적으로 판단자 연령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5>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에서 모두 20대의 응답 평균이 30대 이상의 응답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35] 판단자 연령에 따른 적대적 성차별의식 차이

연번	항목	전체	20대	30대 이상	t
1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2.72	2.53	3.17	-4.01***
2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2.80	2.60	3.26	-3.92***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성들을 부려먹는다.	2.21	2.04	2.60	-4.14***
4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	1.47	1.38	1.68	-2.87**
5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1.61	1.52	1.83	-2.80**
6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	2.02	1.87	2.39	-3.91***
7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1.62	1.54	1.80	-2.32*
8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	1.53	1.45	1.70	-2.53*
9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	1.79	1.60	2.22	-5.07***
10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	1.38	1.30	1.58	-3.21**
11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1.89	1.78	2.15	-2.98**
12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1.92	1.71	2.41	-5.19***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판단자 연령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의식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 중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1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6>에 정리되어 있다. 그 결과,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며

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항목에서 모두 20대의 응답 평균이 30대 이상의 응답 평균에 비해 모두 낮았고,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36] 판단자 연령에 따른 온정적 성차별의식 차이

연번	항목	전체	20대	30대 이상	t
1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3.27	3.12	3.61	-2.95**
2	남자는 이치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	2.11	2.04	2.28	-1.75
3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2.23	2.06	2.61	-3.47**
4	가벼운 짐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	1.78	1.65	2.09	-3.47**
5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3.04	2.90	3.35	-2.70**
6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1.82	1.68	2.15	-3.45**
7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27	2.13	2.60	-3.23**
8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3.20	3.10	3.45	-2.17*
9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2.57	2.42	2.91	-2.87**
10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	2.06	1.83	2.58	-4.94***
11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	2.93	2.78	3.31	-3.19**
12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	2.03	1.88	2.38	-3.35**

* $p < .05$, ** $p < .01$, *** $p < .001$

6) 연령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한편, 판단자의 연령에 따라 강간 통념 수용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집단을 구분하여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7>과 같다. 분석결과, 판단자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에 비해 강간 통념 수용도($1.67 < 1.90$)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4.60$).

▶▶ [표 2-37] 판단자 연령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전체	20대 (N = 420)	30대 이상 (N = 179)	t
강간 통념 수용도	1.74	1.67	1.90	-4.60***

*** p < .001

구체적으로 판단자 연령에 따라 강간 통념 수용도 척도를 측정하는 22가지 항목의 응답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38>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결과, 강간 통념 수용도를 측정하는 22가지 항목에서 모두 20대의 응답 평균이 30대 이상의 응답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에 대하여 검정결과,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대체로 강한 성욕 때문이다.,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남성이 술에 취했다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강간할 수도 있다.”,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에게 멍이나 상처가 없다면, 강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등 8가지 항목의 경우 연령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외에 나머지 14가지 항목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표 2-38] 판단자 연령에 따른 강간 통념 수용도 차이

연번	항목	전체	20대	30대 이상	t
1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1.59	1.50	1.81	-3.43**
2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1.34	1.25	1.56	-4.42***
3	여성이 남자와 단 둘이 방안으로 들어간다면, 강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탓이다.	1.30	1.25	1.39	-2.10*
4	문란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	1.76	1.67	1.98	-3.16**
5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는 종종 ‘싫다’고 말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2	1.53	1.85	-3.48**

연번	항목	전체	20대	30대 이상	t
6	여성이 먼저 키스를 하거나 유혹하기 시작했다면,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2.44	2.30	2.78	-4.24***
7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대체로 강한 성욕 때문이다.	2.20	2.15	2.34	-1.62
8	남성은 보통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나, 때로는 견장을 수 없이 너무 흥분하기도 한다.	2.38	2.29	2.60	-2.80**
9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2.55	2.50	2.67	-1.33
10	남성이 술에 취했다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강간할 수도 있다.	1.41	1.37	1.51	-1.84
11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1.39	1.38	1.41	-.42
12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	1.55	1.54	1.58	-.45
13	여성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했음지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	1.49	1.39	1.72	-4.09***
14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28	1.22	1.41	-3.03**
15	여성에게 멍이나 상처가 없다면, 강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1.64	1.61	1.71	-1.11
16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1.09	1.08	1.12	-1.11
17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3	1.99	2.14	-1.32
18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실제로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이를 후회하는 것이다.	1.63	1.56	1.78	-2.81**
19	강간 신고는 종종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52	2.38	2.86	-4.30***
20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 중 많은 경우가, 남성을 유혹했지만 나중에 이를 후회한 것이다.	1.53	1.47	1.67	-2.77**
21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	1.27	1.22	1.38	-2.54*
22	바람을 피우다 걸린 여성들은 때때로 그것이 강간이었다고 주장한다.	2.22	2.05	2.61	-5.30***

* $p < .05$, ** $p < .01$, *** $p < .001$

3.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먼저 본 연구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을 측정하는 종속변수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 유무죄 판단, 피고인의 처벌, 피해자의 책임과 함께, 사건 관련 요인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피고인-피해자 관계, 그리고 판단자 관련 요인인 판단자 성별, 판단자 연령, 더불어 판단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양가적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표 2-39>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들간 상관관계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유무죄, 피고인의 처벌수준은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 반면, 피해자 책임과는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판단자의 성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피고인-피해자 관계,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또한 판단자가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판단자의 성별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판단자가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 판단자의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벌수준과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판단자의 성별 변수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피고인-피해자관계,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할수록, 그리고 판단자가 여성일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낮게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 책임의 경우 판단자의 연령, 성차별의식, 강간 통념 수용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판단자의 성별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판단자의 나이가 많고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한 반면,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 [표 2-39]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진술 신빙성	피고인 유무죄	처벌 수준	피해자 책임	일관성	피해자 다움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판단자 성별	판단자 연령	양가적 성차별	적대적 성차별	온정적 성차별
피고인 유무죄	.62**	1											
처벌 수준	.70**	.72**	1										
피해자 책임	-.37**	-.21**	-.33**	1									
일관성	.24**	.11**	.15**	-.04	1								
피해자 다움	.06	.07	.10*	-.06	-.02	1							
관계 (2단계)	-.08*	-.01	-.10*	-.01	-.02	.00	1						
관계 (3단계)	-.09*	-.01	-.11**	.01	-.03	.01	.86**	1					
판단자 성별	.31**	.30**	.33**	-.19**	-.02	.01	.01	.01	1				
판단자 연령	-.04	-.07	-.02	.17**	.06	-.09*	.06	.04	-.28**	1			
양가적 성차별	-.28**	-.18**	-.23**	.43**	.06	-.04	-.01	-.01	-.55**	.31**	1		
적대적 성차별	-.35**	-.22**	-.29**	.46**	.02	-.05	.01	.01	-.48**	.30**	.86**	1	
온정적 성차별	-.16**	-.11**	-.13**	.31**	.09*	-.03	-.02	-.01	-.48**	.24**	.90**	.55**	1
강간 통념	-.41**	-.27**	-.37**	.52**	-.01	-.06	.03	.02	-.47**	.24**	.74**	.75**	.56**

* $p < .05$, ** $p < .01$

피고인 유무죄: 0 = 무죄, 1 = 유죄; 관계(2단계): 0 = 처음 만난 사이, 1 = 연인; 관계(3단계): 0 = 처음 만난 사이, 1 = 연인(이전 성관계 무), 2 = 연인(이전 성관계 유); 판단자 성별: 0 = 남성, 1 = 여성

다음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가. 사건 관련 요인의 영향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피해자관계가 2단계(처음 만난 사이, 연인)인 경우와 3단계(처음 만난 사이, 성관계 전력 없는 연인, 성관계 전력 있는 연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아래 <표 2-40>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4.19/14.29$, 둘 다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7%로 나타났다($R^2 = .07$).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관계(3단계, $\beta = -.08$, $p < .05$) 변수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높아진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피고인-피해자관계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40]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진술신빙성		구분	피해자 진술신빙성	
	β	t		β	t
진술일관성	.24	5.97***	진술일관성	.24	5.96***
피해자다움	.07	1.71	피해자다움	.07	1.72
관계(2단계)	-.08	-1.95	관계(3단계)	-.08	-2.03*
F	14.19***		F	14.29***	
R ²	.07		R ²	.07	

* $p < .05$, *** $p < .001$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 이분형 변수로 측정된 점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아래 <표 2-4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osmer & Lemeshow $\chi^2 = 5.28/6.21$, $p = .51/.62$).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55$, $p < .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피해자다움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승산비(odds ratio)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약 1.73배로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 [표 2-41]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유무죄		구분	피고인 유무죄	
	B	OR		B	OR
진술일관성	.55**	1.73	진술일관성	.55**	1.74
피해자다움	.35	1.43	피해자다움	.35	1.42
관계(2단계): 처음 만남 사이, 연인	-.06	.95	처음 만남	참조집단	
			연인(관계 무)	-.12	.89
			연인(관계 유)	.01	1.01
-2LL	636.13		-2LL	635.85	
Nagelkerke R ²	.03		Nagelkerke R ²	.03	
Hosmer & Lemeshow χ^2	5.28(p = .51)		Hosmer & Lemeshow χ^2	6.21(p = .62)	

** $p < .01$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 <표 2-4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8.68/9.30$, $p < .001$), 회귀모형

의 설명력은 약 5%로 나타났다($R^2 = .04/.05$).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0$, $p < .05$), 피고인-피해자관계(2단계 $\beta = -.09$, $p < .05$ /3단계 $\beta = -.11$, $p < .01$)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가까울 경우 피고인의 처벌 수준은 높아진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고인의 처벌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피해자다움과 피고인-피해자 관계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피고인-피해자 관계를 2단계로 분류할 때보다 3단계로 분류할 때가 표준화계수의 크기가 더 컸다.

▶▶ [표 2-42]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처벌수준		구분	피고인 처벌수준	
	β	t		β	t
진술일관성	.15	3.77***	진술일관성	.15	3.74***
피해자다움	.10	2.56*	피해자다움	.10	2.58*
관계(2단계)	-.09	-2.29*	관계(3단계)	-.11	-2.66**
F	8.68***		F	9.30***	
R^2	.04		R^2	.05	

* $p < .05$, ** $p < .01$, *** $p < .001$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 = .96/.98$),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로 나타났다($R^2 = .0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 모두 피해자의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표 2-43] 사건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책임		구분	피해자 책임	
	β	t		β	t
진술일관성	-.04	-.93	진술일관성	-.04	-.92
피해자다움	-.06	-1.43	피해자다움	-.06	-1.43
관계(2단계)	-.01	-.14	관계(3단계)	.01	.29
F	.96		F	.98	
R ²	.01		R ²	.01	

나. 판단자 관련 요인의 영향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판단자 관련 요인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아래 <표 2-44>와 같다.

» [표 2-44]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진술신빙성			
	B	SE	t	VIF
판단자 성별	.86	.11	8.06***	1.09
판단자 연령	.01	.01	1.21	1.09
F	33.09***			
R ²	.10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33.09$,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0%로 나타났다($R^2 = .10$).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beta = .86$, $p < .001$)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판단자의 연령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45>와 같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osmer & Lemeshow $\chi^2 = 6.61$, $p = .58$).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66$,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판단자의 연령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된다.

▶▶▶ [표 2-45]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유무죄 판단		
	B	SE	OR
판단자 성별	1.66***	.25	5.28
판단자 연령	.01	.02	1.01
-2LL	589.12		
Nagelkerke R ²	.14		
Hosmer & Lemeshow χ^2	6.61($p = .58$)		

*** $p < .001$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아래 <표 2-46>와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37.3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1%로 나타났다($R^2 = .11$).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11$, $p < .001$)과 연령($\beta = .03$, $p < .05$)이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무거워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판단자의 성별이 연령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46]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처벌수준			
	B	SE	t	VIF
판단자 성별	1.11	.13	8.63***	1.09
판단자 연령	.03	.01	1.99*	1.09
F	37.31***			
R ²	.11			

* $p < .05$, *** $p < .001$

4)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에는 아래 <표 2-47>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5.82$,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로 나타났다($R^2 = .05$).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04$, $p < .01$)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판단하였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판단자의 성별이 연령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판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47] 판단자 관련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책임			
	B	SE	t	VIF
판단자 성별	-.43	.12	-3.70***	1.09
판단자 연령	.04	.01	3.02**	1.09
F	15.82***			
R ²	.05			

** $p < .01$ *** $p < .001$

다. 사건 요인과 판단자 요인의 통합모형 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앞서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판단자 관련 요인들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 <표 2-48>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3.93/23.94$,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7%로 나타났다($R^2 = .17$).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 변수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피해자다움과 판단자의 연령 변수는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높아지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2-48]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진술신빙성		구분	피해자 진술신빙성	
	β	t		β	t
진술일관성	.24	6.34***	진술일관성	.24	6.33***
피해자다움	.07	1.77	피해자다움	.07	1.77
관계(2단계)	-.08	-2.20*	관계(3단계)	-.08	-2.21*
판단자 성별	.33	8.46***	판단자 성별	.33	8.44***
판단자 연령	.05	1.20	판단자 연령	.05	1.16
F	23.93***		F	23.94***	
R ²	.17		R ²	.17	

* $p < .05$, *** $p < .001$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판단자 관련 요인들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49>와 같다.

▶▶ [표 2-49]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유무죄		구분	피고인 유무죄	
	B	OR		B	OR
진술일관성	.63**	1.87	진술일관성	.63**	1.87
피해자다움	.37	1.45	피해자다움	.37	1.45
관계(2단계): 처음 만남 사이, 연인	-.09	.92	처음만남	참조집단	
			연인(관계 무)	-.17	.85
			연인(관계 유)	-.01	.99
판단자 성별	1.70***	5.49	판단자 성별	1.71***	5.51
판단자 연령	.01	1.01	판단자 연령	.01	1.01
-2LL	576.66		-2LL	576.26	
Nagelkerke R ²	.17		Nagelkerke R ²	.17	
Hosmer & Lemeshow χ^2	4.58(p = .80)		Hosmer & Lemeshow χ^2	5.12(p = .7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 Lemeshow $\chi^2 = 4.58/5.12$, p = .80/.7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피해자다움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연령 변수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판단자 관련 요인들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2-50>과 같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1.72/22.11$,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6%로 나타났다($R^2 = .16$).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2단계 $\beta = -.10$, $p < .01$ /3단계 $\beta = -.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 판단자의 연령($\beta = .09$, $p < .05$) 변수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할 경우, 판단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무거워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 [표 2-50]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고인 처벌수준		구분	피고인 처벌수준	
	β	t		β	t
진술일관성	.15	3.98***	진술일관성	.15	3.96***
피해자다움	.11	2.77**	피해자다움	.11	2.79**
관계(2단계)	-.10	-2.64**	관계(3단계)	-.11	-2.94**
판단자 성별	.35	8.95***	판단자 성별	.35	8.94***
판단자 연령	.09	2.23*	판단자 연령	.09	2.20*
F	21.72***		F	22.11***	
R ²	.16		R ²	.16	

* $p < .05$, ** $p < .01$, *** $p < .001$

4)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한 회귀분석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판단자 관련 요인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성하고 피해자 책임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 <표 2-51>

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6.87/6.86$, $p < .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6%로 나타났다($R^2 = .06$).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5/- .16$, $p < .001$), 판단자의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는 피해자의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해자다움,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는 피해자의 책임판단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즉, 판단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피해자의 책임이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 [표 2-51] 사건 및 판단자 요인들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피해자 책임		구분	피해자 책임	
	β	t		β	t
진술일관성	-.05	-1.19	진술일관성	-.05	-1.18
피해자다움	-.05	-1.13	피해자다움	-.05	-1.13
관계(2단계)	-.01	-.28	관계(3단계)	.01	.17
판단자 성별	-.15	-3.71***	판단자 성별	-.16	-3.72***
판단자 연령	.13	2.97**	판단자 연령	.12	2.95**
F	6.87***		F	6.86***	
R^2	.06		R^2	.06	

** $p < .01$, *** $p < .001$

4. 매개효과 분석

가.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관련 요인들인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판단자 관련 요인들인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

등의 변수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2단계(처음 만난 사이, 연인)인 경우와 3단계(처음 만난 사이, 성관계 전력 없는 연인, 성관계 전력 있는 연인)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Baron과 Kenny(1986)의 분석방법의 한계를 보완한 매개효과 분석기법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Hayes(2018)가 제안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여 경로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아래 <표 2-52>에 제시하였다.

▶▶▶ [표 2-52]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양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5	.05	57.25*** (57.25***)	.33 (.33)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50***	-.50***		
	판단자 연령	.16***	.16***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5***	.25***	23.55*** (23.55***)	.19 (.19)
	피해자다움	.06	.06		
	피고인-피해자관계	-.09*	-.08*		
	판단자 성별	.24***	.23***		
	판단자 연령	.08*	.08		
	양가적 성차별의식	-.19***	-.19***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2	.02	-.06	.01
피해자다움→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2	-.02	.05
관계(2단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2	-.03	.05
관계(3단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0	.01	-.02	.03
판단자 성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25	.07	.11	.40
판단자 연령→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0	-.01	-.00

* p < .05,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57.25, p < .001$), 2단계($F = 23.93/23.94, p < .001$), 3단계($F = 23.55,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3%($R^2 = .33$), 2단계에서 17%($R^2 = .17$), 3단계에서 19%($R^2 = .19$)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50, p < .001$)과 연령($\beta = .16, p < .001$) 변수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즉,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낮은 반면,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의식($\beta = -.19, p < .001$)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진술일관성($\beta = .25,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9/-.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24/.23, p < .001$)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피해자 2단계 변수가 투입된 모형에서만 판단자의 연령($\beta = .08, p < .05$)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은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판단자의 연령 또한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연령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57.25, p < .001$), 2단계(Hosmer & Lemeshow $\chi^2 = 4.58/5.12, p = .80/.75$), 3단계(Hosmer & Lemeshow $\chi^2 = 7.19/5.29, p = .52/.7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50, p < .001$)과 연령($\beta = .16, p < .001$) 변수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4,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6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한편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든 경로에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53]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양가적 성차별 의식	진술일관성	.05	.05	57.25*** (57.25***)	.33 (.33)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50***	-.50***		
	판단자 연령	.16***	.16***		
종속변수	독립변수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Hosmer & Lemeshow χ^2	Nagelkerke R ²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3**	.63**	4.58(p=.80) 5.12(p=.75)	.17 (.17)
	피해자다움	.37	.37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0***	1.71***		
	판단자 연령	.01	.01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4**	.64**	7.19(p=.52) 5.29(p=.73)	.17 (.17)
	피해자다움	.37	.37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6		
			-.00		
	판단자 성별	1.61***	1.61***		
	판단자 연령	.01	.01		
	양가적 성차별의식	-.10	-.10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4	.02
피해자다움→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0	.01	-.01	.04
관계(2단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0	.01	-.02	.03
관계(3단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0	.01	-.01	.02
판단자 성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9	.12	-.14	.34
판단자 연령→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1	.01

** p < .01, *** p < .001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57.25, p < .001), 2단계(F = 21.72/22.11, p < .001), 3단계(F = 19.19/19.52,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3%(R² = .33), 2단계에서 16%(R² = .16), 3단계에서 16%(R² = .16/.17)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β = -.50, p < .001)과 연령(β = .16, p < .001) 변수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β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β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β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과 연령($\beta = .09$, $p < .05$)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의식($\beta = -.11$, $p < .05$)이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6/.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0$,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0$,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이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54]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양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5	.05	57.25*** (57.25***)	.33 (.33)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50***	-.50***		
	판단자 연령	.16***	.16***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1.72*** (22.11***)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5***	.35***		
	판단자 연령	.09*	.09*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6***	.15***	19.19*** (19.52***)	.16 (.17)
	피해자다움	.10**	.10**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0***	.30***		
	판단자 연령	.11**	.11**		
	양가적 성차별의식	-.11*	-.11*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2		.01	-.05 .01
	피해자다움→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1	-.01 .04
	관계(2단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0		.01	-.03 .03
	관계(3단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0		.01	-.01 .02
	판단자 성별→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17		.08	.01 .34
	판단자 연령→양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0	-.01 -.00

* p < .05, ** p < .01, *** p < .001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55]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양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5	.05	57.25*** (57.25***)	.33 (.33)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50***	-.50***		
	판단자 연령	.16***	.16***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6.87*** (6.86***)	.06 (.0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15***	-.16***		
	판단자 연령	.13**	.12**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7	-.07	23.99*** (24.01***)	.20 (.20)
	피해자다움	-.04	-.04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07	.07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판단자 연령	.05	.05		
	양가적 성차별의식	.46***	.46***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6	.04	-.03	.14
피해자다움→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3	.04	-.11	.06
관계(2단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5	-.11	.08
관계(3단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3	-.06	.04
판단자 성별→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63	.08	-.81	-.48
판단자 연령→양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2	.01	.01	.03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57.25, p < .001$), 2단계($F = 6.87/6.86, p < .001$), 3단계($F = 23.99/24.01,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33%($R^2 = .33$), 2단계에서 6%($R^2 = .06$), 3단계에서 20%($R^2 = .20$)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50, p < .001$)과 연령($\beta = .16, p < .001$) 변수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판단자의 성별($\beta = -.15/-.16, p < .001$)과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의식($\beta = .46, p < .001$) 변수만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변

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6>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42.29, p < .001$), 2단계($F = 23.93/23.94, p < .001$), 3단계($F = 28.34/28.35,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6%($R^2 = .26$), 2단계에서 17%($R^2 = .17$), 3단계에서 22%($R^2 = .22$)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8, p < .001$) 변수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즉,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낮고,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증가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beta = -.27, p < .001$)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21, p < .001$), 연령($\beta = .10/.09, p < .05$)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 [표 2-56]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적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0	-.00	42.29*** (42.29***)	.26 (.26)
	피해자다움	-.03	-.03		
	피고인-피해자관계	.00	.00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자 성별	-.43***	-.43***	23.93*** (23.94***)	.17 (.17)
	판단자 연령	.18***	.18***		
	진술일관성	.24***	.24***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자 연령	.05	.05	28.34*** (28.35***)	.22 (.22)
	진술일관성	.24***	.24***		
	피해자다움	.06	.06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21***	.21***		
	판단자 연령	.10*	.09*		
적대적 성차별의식		-.27***	-.27***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0	.03	-.05	.05
피해자다움→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2	.03	-.03	.07
관계(2단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3	-.05	.06
관계(3단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2	-.03	.03
판단자 성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31	.06	.19	.44
판단자 연령→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0	-.02	-.01

* p < .05, *** p < .001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42.29, p < .001$), 2단계(Hosmer & Lemeshow $\chi^2 = 4.58/5.12, p = .80/.75$), 3단계(Hosmer & Lemeshow $\chi^2 = 6.29/3.51, p = .62/.90$)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8, p < .001$) 변수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beta = -.21, p < .05$)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52,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 변수의 간접효과 경로만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변수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57]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적대적 성차별 의식	진술일관성	-.00	-.00	42.29*** (42.29***)	.26 (.26)
	피해자다움	-.03	-.03		
	피고인-피해자관계	.00	.00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8***	.18***		
종속변수	독립변수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Hosmer & Lemeshow χ^2	Nagelkerke R^2
피고인 유무죄	진술일관성	.63**	.63**	4.58(p=.80)	.17
	피해자다움	.37	.37	5.12(p=.75)	(.17)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판단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0***	1.71***		
	판단자 연령	.01	.01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3**	.63**	6.29(p=.62) 3.51(p=.90)	.18 (.18)
	피해자다움	.36	.36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6		
			-.00		
	판단자 성별	1.52***	1.52***		
	판단자 연령	.02	.02		
	적대적 성차별의식	-.21*	-.21*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0	.02	-.04	.03
피해자다움→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2	-.02	.06
관계(2단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2	-.04	.03
관계(3단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2	.02
판단자 성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19	.10	.00	.38
판단자 연령→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0	-.02	.01

* p < .05, ** p < .01, *** p < .001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 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8>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58]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적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0	-.00	42.29*** (42.29***)	.26 (.26)
	피해자다움	-.03	-.03		
	피고인-피해자관계	.00	.00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8***	.18***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1.72*** (22.11***)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5***	.35***		
	판단자 연령	.09*	.09*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2.15*** (22.50***)	.18 (.19)
	피해자다움	.10**	.10**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27***	.27***		
	판단자 연령	.12**	.12**		
	적대적 성차별의식	-.20***	-.20***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0	.02	-.05	.05
피해자다움→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2	.02	-.03	.07
관계(2단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2	-.05	.05
관계(3단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1	-.03	.03
판단자 성별→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27	.08	.13	.43
판단자 연령→적대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0	-.02	-.00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42.29$, $p < .001$), 2단계($F = 21.72/22.11$, $p < .001$), 3단계($F = 22.15/22.50$,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6%($R^2 = .26$), 2단계에서 16%($R^2 = .16$), 3단계에서 18%($R^2 = .18/.19$)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

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8, p < .001$) 변수가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과 연령($\beta = .09, p < .05$)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beta = -.20, p < .001$)이 피고인의 처벌수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0,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27, p < .001$), 연령($\beta = .12, p < .01$)이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59>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59]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적대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0	-.00	42.29*** (42.29***)	.26 (.26)
	피해자다움	-.03	-.03		
	피고인-피해자관계	.00	.00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8***	.18***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6.87*** (6.86***)	.06 (.0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15***	-.16***		
	판단자 연령	.13**	.12**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27.95*** (27.93***)	.22 (.22)
	피해자다움	-.03	-.03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05	.05		
	판단자 연령	.04	.04		
	적대적 성차별의식	.47***	.47***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5	-.09	.09
피해자다움→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3	.05	-.13	.06
관계(2단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0	.05	-.10	.10
관계(3단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0	.03	-.05	.06
판단자 성별→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57	.07	-.72	-.43
판단자 연령→적대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2	.01	.01	.04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42.29$, $p < .001$), 2단계($F = 6.87/6.86$, $p < .001$), 3단계($F = 27.95/27.93$,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6%($R^2 = .26$), 2단계에서 6%($R^2 = .06$), 3단계에서 22%($R^2 = .22$)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8$, $p < .001$) 변수가 적대적 성차별 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도 판단자의 성별($\beta = -.15/-.16$, $p < .001$)과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의식($\beta = .47$, $p < .001$) 변수만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변수와 피해자 책임 판단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0>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8.91/38.89$, $p < .001$), 2단계($F = 23.93/23.94$, $p < .001$), 3단계($F = 20.18$,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5%($R^2 = .25$), 2단계에서 17%($R^2 = .17$), 3단계에서 17%($R^2 = .17$)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07$,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44$,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1$, $p < .001$) 변수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편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든 경로에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0]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온정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7*	.07*	38.91*** (38.89***)	.25 (.25)
	피해자다움	-.01	-.01		
	피고인-피해자관계	-.02	-.01		
	판단자 성별	-.44***	-.44***		
	판단자 연령	.11**	.11**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0.18*** (20.18***)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1***	.31***		
	판단자 연령	.05	.05		
	온정적 성차별의식	-.05	-.05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1	-.04	.01
피해자다움→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0	.01	-.01	.02
관계(2단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0	.01	-.01	.02
관계(3단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0	.00	-.01	.01
판단자 성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6	.06	-.05	.18
판단자 연령→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0	-.01	.01

* p < .05, ** p < .01, *** p < .001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

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61]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온정적 성차별 의식	진술일관성	.07*	.07*	38.91*** (38.89***)	.25 (.25)
	피해자다움	-.01	-.01		
	피고인-피해자관계	-.02	-.01		
	판단자 성별	-.44***	-.44***		
	판단자 연령	.11**	.11**		
종속변수	독립변수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Hosmer & Lemeshow χ^2	Nagelkerke R ²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3**	.63**	4.58(p=.80) 5.12(p=.75)	.17 (.17)
	피해자다움	.37	.37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0***	1.71***		
피고인 유무죄 판단	판단자 연령	.01	.01	7.14(p=.52) 6.71(p=.57)	.17 (.17)
	진술일관성	.61**	.62**		
	피해자다움	.38	.38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6***	1.77***		
	판단자 연령	.01	.01		
	온정적 성차별의식	.06	.06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2	-.03	.06
피해자다움→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2	.02
관계(2단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3	.02
관계(3단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1	.01	-.02	.01
판단자 성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6	.10	-.27	.13
판단자 연령→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유무죄		.00	.00	-.01	.01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8.91/38.89$, $p < .001$), 2단계(Hosmer & Lemeshow $\chi^2 = 4.58/5.12$, $p = .80/.75$), 3단계(Hosmer & Lemeshow $\chi^2 = 7.14/6.71$, $p = .52/.57$)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07$,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44$,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1/.62$,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6/1.77$,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한편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든 경로에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8.91/38.89$, $p < .001$), 2단계($F = 21.72/22.11$, $p < .001$), 3단계($F = 18.07/18.40$,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5%($R^2 = .25$), 2단계에서 16%($R^2 = .16$), 3단계에서 16%($R^2 = .16$)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07$,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44$,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온정적 성차별 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 연령($\beta = .09$, $p < .05$)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6$, $p < .001$), 연령($\beta = .09$, $p < .05$)이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준 반면,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피고인의 처벌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한편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든 경로에서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2]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온정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7*	.07*	38.91*** (38.89***)	.25 (.25)
	피해자다움	-.01	-.01		
	피고인-피해자관계	-.02	-.01		
	판단자 성별	-.44***	-.44***		
	판단자 연령	.11**	.11**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1.72*** (22.11***)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5***	.35***		
	판단자 연령	.09*	.09*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18.07*** (18.40***)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6***	.36***		
	판단자 연령	.09*	.09*		
	온정적 성차별의식	.01	.01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0	.01	-.02	.03
피해자다움→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1	-.01	.01
관계(2단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1	-.02	.01
관계(3단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0	-.01	.01
판단자 성별→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1	.07	-.14	.12
판단자 연령→온정적 성차별→피고인 처벌수준		.00	.00	-.01	.01

* $p < .05$ ** $p < .01$ *** $p < .001$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3>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8.91/38.89$, $p < .001$), 2단계($F = 6.87/6.86$, $p < .001$), 3단계($F = 12.14/12.15$,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5%($R^2 = .25$), 2단계에서 6%($R^2 = .06$), 3단계에서 11%($R^2 = .11$)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07$,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44$,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온정적 성차별 의식과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15/-.16$, $p < .001$),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판단자 연령($\beta = .09$, $p < .05$)과 온정적 성차별의식($\beta = .27$, $p < .0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피해자 진술일관성,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은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판단자 연령은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3]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온정적 성차별의식	진술일관성	.07*	.07*	38.91*** (38.89***)	.25 (.25)
	피해자다움	-.01	-.01		
	피고인-피해자관계	-.02	-.01		
	판단자 성별	-.44***	-.44***		
	판단자 연령	.11**	.11**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6.87*** (6.86***)	.06 (.0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15***	-.16***		
	판단자 연령	.13**	.12**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7	-.07	12.14*** (12.15***)	.11 (.11)
	피해자다움	-.04	-.04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04	-.04		
	판단자 연령	.09*	.09*		
	온정적 성차별의식	.27***	.27***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6	.03	.00	.12
피해자다움→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3	-.06	.04
관계(2단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3	-.08	.04
관계(3단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2	-.04	.03
판단자 성별→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33	.07	-.47	-.20
판단자 연령→온정적 성차별→피해자 책임		.01	.00	.00	.02

* p < .05 ** p < .01 *** p < .001

라.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 분석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 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4>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5.32/35.19$, $p < .001$), 2단계($F = 23.93/23.94$, $p < .001$), 3단계($F = 33.69/33.84$,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3%($R^2 = .23$), 2단계에서 17%($R^2 = .17$), 3단계에서 26%($R^2 = .26$)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강간 통념 수용도와 유의하였다. 즉, 판단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강간 통념 수용도가 낮은 반면,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강간 통념 수용도($\beta = -.34$, $p < .001$)가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진술일관성($\beta = .23$,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7/-0.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19/.18$, $p < .001$), 연령($\beta = .08$, $p < .05$) 변수가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4]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강간 통념 수용도	진술일관성	-.02	-.02	35.32*** (35.19***)	.23 (.23)
	피해자다움	-.04	-.04		
	피고인-피해자관계	.03	.01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1**	.11**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3***	.23***	33.69*** (33.84***)	.26 (.2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7*	-.08*			
	판단자 성별	.19***	.18***			
	판단자 연령	.08*	.08*			
	강간 통념 수용도	-.34***	-.34***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3	-.05	.08
피해자다움→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04		.03	-.03	.11
관계(2단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03		.03	-.10	.04
관계(3단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2	-.05	.03
판단자 성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38		.07	.26	.52
판단자 연령→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진술신빙성		-.01		.00	-.02	-.00

* p < .05 ** p < .01 *** p < .001

2)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 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65]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강간통념 수용도	진술일관성	-.02	-.02	35.32*** (35.19***)	.23 (.23)
	피해자다움	-.04	-.04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고인-피해자관계	.03	.01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1**	.11**			
종속변수	독립변수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Hosmer & Lemeshow χ^2	Nagelkerke R ²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3**	.63**	4.58(p=.80) 5.12(p=.75)	.17 (.17)	
	피해자다움	.37	.37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0***	1.71***			
	판단자 연령	.01	.01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2**	.62**	7.33(p=.50) 3.25(p=.92)	.19 (.17)	
	피해자다움	.33	.33			
	피고인-피해자관계	-.07	참조			
			-.14			
			.00			
	판단자 성별	1.38***	1.38***			
	판단자 연령	.02	.02			
	강간 통념 수용도	-.65**	-.64**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01	.03	-.05	.07
피해자다움→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03	.03	-.02	.11
관계(2단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02	.03	-.09	.04
관계(3단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01	.02	-.05	.03
판단자 성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33	.11	.14	.56
판단자 연령→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유무죄			-.01	.00	-.02	-.00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5.32/35.19, p < .001), 2단계(Hosmer & Lemeshow χ^2 = 4.58/5.12, p = .80/.75), 3단계(Hosmer & Lemeshow χ^2 = 7.33/3.25, p = .50/.9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강간 통념 수용도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는 강간 통념 수용도($\beta = -.65/-.64, p < .01$)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2,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38,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판단자의 연령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판단자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6>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5.32/35.19, p < .001$), 2단계($F = 21.72/22.11, p < .001$), 3단계($F = 27.18/27.68,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3%($R^2 = .23$), 2단계에서 16%($R^2 = .16$), 3단계에서 22%($R^2 = .22$)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강간 통념 수용도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 판단자의 연령($\beta = .09, p$

< .05)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강간 통념 수용도($\beta = -.28, p < .001$)가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09, p < .05$),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9/-11,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23, p < .001$), 판단자의 연령($\beta = .12, p < .01$)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 [표 2-66]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강간 통념 수용도	진술일관성	-.02	-.02	35.32*** (35.19***)	.23 (.23)
	피해자다움	-.04	-.04		
	피고인-피해자관계	.03	.01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1**	.11**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1.72*** (22.11***)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5***	.35***		
	판단자 연령	.09*	.09*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7.18*** (27.68***)	.22 (.22)
	피해자다움	.09*	.09*		
	피고인-피해자관계	-.09*	-.11**		
	판단자 성별	.23***	.23***		
	판단자 연령	.12**	.12**		
	강간 통념 수용도	-.28***	-.28***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01	.03	-.05	.08
피해자다움→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04	.03	-.02	.11
관계(2단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03	.04	-.10	.04
관계(3단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01	.02	-.05	.03
판단자 성별→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39	.07	.25	.55
판단자 연령→강간통념 수용→피고인 처벌수준		-.01	.00	-.02	-.00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은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4)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강간 통념 수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35.32/35.19$, $p < .001$), 2단계($F = 6.87/6.86$, $p < .001$), 3단계($F = 38.28/38.14$,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3%($R^2 = .23$), 2단계에서 6%($R^2 = .06$), 3단계에서 28%($R^2 = .28$)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43$, $p < .001$)과 연령($\beta = .11$, $p < .01$) 변수가 강간 통념 수용도와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15/-16$, $p < .001$),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판단자 성별(관계 2단계 모형 $\beta = .08$, $p < .05$)과 강간 통념 수용도($\beta = .54$, $p < .0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판단자의 성별은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판단자의 연령은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강간 통념 수용도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7] 강간 통념 수용도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강간 통념 수용도	진술일관성	-.02	-.02	35.32*** (35.19***)	.23 (.23)
	피해자다움	-.04	-.04		
	피고인-피해자관계	.03	.01		
	판단자 성별	-.43***	-.43***		
	판단자 연령	.11**	.11**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6.87*** (6.86***)	.06 (.0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15***	-.16***		
	판단자 연령	.13**	.12**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4	-.04	38.28*** (38.14***)	.28 (.28)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3	-.00		
	판단자 성별	.08*	.08		
	판단자 연령	.07	.07		
	강간 통념 수용도	.54***	.54***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02	.05	-.12	.09
피해자다움→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06	.06	-.17	.04
관계(2단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05	.06	-.07	.16
관계(3단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01	.03	-.05	.08
판단자 성별→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65	.08	-.81	-.51
판단자 연령→강간통념 수용→피해자 책임		.02	.01	.00	.03

** $p < .01$, *** $p < .001$

마.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 분석

1)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8>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23.93/23.94$, $p < .001$), 2단계(Hosmer & Lemeshow $\chi^2 = 4.58/5.12$, $p = .80/.75$), 3단계(Hosmer & Lemeshow $\chi^2 = 12.06/16.62$, $p = .15/.0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63$, $p < .01$)과 판단자의 성별($\beta = 1.70/1.71$, $p < .001$)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3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beta = 1.49/1.50$, $p < .001$)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이외에 판단자의 성별($\beta = .91$, $p < .01$) 변수만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는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판단자의 성별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판단자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표 2-68]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종속변수	독립변수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Hosmer & Lemeshow χ^2	Nagelkerke R^2
피고인 유무죄 판단	진술일관성	.63**	.63**	4.58(p=.80) 5.12(p=.75)	.17 (.17)
	피해자다움	.37	.37		
	피고인-피해자관계	-.09	참조		
			-.17		
			-.01		
	판단자 성별	1.70***	1.71***		
피고인 유무죄 판단	판단자 연령	.01	.01	12.06(p=.15) 16.62(p=.03)	.54 (.54)
	진술일관성	-.22	-.22		
	피해자다움	.18	.16		
	피고인-피해자관계	.35	참조		
			.18		
			.56		
	판단자 성별	.91**	.91**		
	판단자 연령	-.01	-.01		
	피해자 진술신빙성	1.49***	1.50***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93	.18	.62	1.33
피해자다움→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26	.15	-.03	.58
관계(2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34	.16	-.69	-.04
관계(3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20	.10	-.40	-.02
판단자 성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1.30	.19	.99	1.74
판단자 연령→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유무죄		.02	.02	-.01	.05

* $p < .05$, ** $p < .01$, *** $p < .001$

2)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69>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 2-69]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고인 처벌수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15***	.15***	21.72*** (22.11***)	.16 (.16)
	피해자다움	.11**	.11**		
	피고인-피해자관계	-.10**	-.11**		
	판단자 성별	.35***	.35***		
	판단자 연령	.09*	.09*		
피고인 처벌수준	진술일관성	-.00	-.00	100.02*** (100.48***)	.50 (.51)
	피해자다움	.06*	.06*		
	피고인-피해자관계	-.05	-.06*		
	판단자 성별	.14***	.14***		
	판단자 연령	.06	.06		
	피해자 진술신빙성	.65***	.65***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49	.08	.34	.65
피해자다움→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14	.08	-.01	.30
관계(2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18	.08	-.34	-.03
관계(3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11	.05	-.20	-.01
판단자 성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69	.09	.52	.86
판단자 연령→피해자 진술신빙성→피고인 처벌수준		.01	.01	-.01	.03

* p < .05, ** p < .01, *** p < .0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23.93/23.94$, $p < .001$), 2단계($F = 21.72/22.11$, $p < .001$), 3단계($F = 100.02/100.48$,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7%($R^2 = .17$), 2단계에서 16%($R^2 = .16$), 3단계에서 50%($R^2 = .50/.51$)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 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15$, $p < .001$)과 피해자다움($\beta = .11$, $p < .01$),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10/-11$, $p < .01$), 판단자의 성별($\beta = .35$, $p < .001$), 연령($\beta = .09$, $p < .05$) 모두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3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신빙성($\beta = .65$, $p < .001$)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다움($\beta = .06$, $p < .05$), 피고인-피해자 관계(관계 3단계 모형 $\beta = -.06$,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14$, $p < .001$) 변수가 피고인의 처벌수준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은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판단자의 성별은 각각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2단계)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고인 처벌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2단계)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3단계)는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3단계)와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피해자 책임판단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들이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을 각각 실시하고 아래 <표 2-70>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 23.93/23.94$, $p < .001$), 2단계($F = 6.87/6.86$, $p < .001$), 3단계($F = 19.36/19.20$,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7%($R^2 = .17$), 2단계에서 6%($R^2 = .06$), 3단계에서 16%($R^2 = .16$)였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였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점대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beta = .24$, $p < .001$)과 피고인-피해자 관계($\beta = -.08$, $p < .05$), 판단자의 성별($\beta = .33$, $p < .001$)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beta = -.15/-16$, $p < .001$), 판단자의 연령($\beta = .13/.12$, $p < .01$) 변수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건 관련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판단자 연령($\beta = .14$, $p < .001$) 변수는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 반면, 피해자 진술신빙성($\beta = -.36$, $p < .001$)은 피해자 책임판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 [표 2-70]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피해자 책임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2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진술신빙성	진술일관성	.24***	.24***	23.93*** (23.94***)	.17 (.17)
	피해자다움	.07	.07		
	피고인-피해자관계	-.08*	-.08*		
	판단자 성별	.33***	.33***		
	판단자 연령	.05	.05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F (3단계)	R ² (3단계)
		관계 2단계	관계 3단계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5	-.05	6.87*** (6.86***)	.06 (.06)
	피해자다움	-.05	-.05		
	피고인-피해자관계	-.01	.01		
	판단자 성별	-.15***	-.16***		
	판단자 연령	.13**	.12**		
피해자 책임	진술일관성	.04	.04	19.36*** (19.20***)	.16 (.16)
	피해자다움	-.02	-.02		
	피고인-피해자관계	-.04	-.02		
	판단자 성별	-.03	-.04		
	판단자 연령	.14***	.14***		
	피해자 진술신빙성	-.36***	-.36***		
경로		B	S.E.	LLCI	ULCI
진술일관성→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24	.05	-.34	-.15
피해자다움→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07	.04	-.15	.01
관계(2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09	.04	.01	.17
관계(3단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05	.02	.00	.10
판단자 성별→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33	.06	-.45	-.22
판단자 연령→피해자 진술신빙성→피해자 책임		-.01	.01	-.01	.0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결과,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의 성별 변수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는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해자 책임 사이,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 변수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때에는 피해자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사건 관련 세 개의 요인(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여부,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이전 성관계 경험 여부)으로 구성된 총 12가지($2 \times 2 \times 3$) 조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 처벌수준 및 유무죄 판단, 피해자 책임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함께, 양가적 성차별의식(적대적, 온정적)과 강간 통념 수용도를 함께 측정하여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및 피고인 처벌, 피해자 책임 판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사건 및 판단자 관련 요인에 따른 차이

사건 관련 첫 번째 요인인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피고인의 처벌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낮은 조건의 연구참여자들보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고,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건 관련 두 번째 요인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 관련한 특성이 나타나느냐에 관한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조건의 연구참여자들은 부합하지 않는 조건의 연구참여자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건 관련 세 번째 요인인 피고인과의 관계(처음 만난 사이, 연인 관계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으며, 연인 관계에서도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

판단자 관련 요인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책임

을 더 낮게 판단하였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참여자를 '20대'와 '30대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대인 경우 30대 이상인 연구참여자에게 비해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피해자의 책임을 더 적게 인식하였다. 판단자가 30대 이상인 경우 20대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의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 또한 더 높았다.

2.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 분석

상관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피고인-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에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비율이 더 높은 반면, 판단자가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며 판단자가 여성일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판단자의 성차별의식과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낮게 판단하였다. 또한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한 반면, 판단자의 나이가 많고 성차별의식 및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높아진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유죄 판단 가능성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 경우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높아졌다. 피고인 처벌 수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부합하며, 판단자가 여성이고 판단자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아졌다. 피해자의 책임은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낮게 판단하였고, 판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판단하였다.

3. 매개효과 분석결과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 판단자의 연령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남성일수록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으며,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간접 효과와 함께, 남성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직접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또한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 판단자 연령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는데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처벌을 더 가볍게 평가하는 동시에, 남성일 경우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한편, 양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도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으며,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간접 효과와 함께, 남성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직접 효과와 함께 나타난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는데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 비율이 더 높아지는 동시

에, 남성일 경우 피고인을 더 무죄로 판단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 판단 사이에서는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는데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처벌을 더 가볍게 평가하는 동시에, 남성일 경우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도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으로 피해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는데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판단자 연령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으며,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는 효과와 함께,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 변수와 피해자 진술신빙성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하며,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는 부분매개 역할을, 판단자의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판단자가 남성일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으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효과와 함께, 남성일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는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인 무죄 판단 비율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남성일 경우 피고인을 더 무죄로 판단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더불어 판단자의 연령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더불어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하며,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는 부분매개 역할을,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 및 연령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처벌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는데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처벌을 더 가볍게 평가하는 동시에, 남성일 경우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책임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더불어 판단자의 연령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도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일관성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유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불어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아지며, 진술신빙성이 낮아질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판단자 성별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다.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는데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피고인의 유죄 판단 비율이 더 높아지는 동시에, 여성일 경우 피고인을 더 유죄로 판단하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판단자의 성별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일관성이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피고인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고인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하는데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판단할수록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여성일 경우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피해자 관계 변수(2단계)와 관련하여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일 경우 피고인 처벌수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연인 관계일 경우 진술신빙성이 낮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낮아질수록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피고인-피해자 관계(3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피고인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피고인 처벌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는데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할수록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효과 또한 같이 나타난다.

또한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해자 책임 사이,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도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 진술일관성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한다. 또한 판단자 성별이 피해자 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여성일수록 진술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진술신빙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판단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제 3 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 사례 연구

강은영 · 강민영

제3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와 요소 : 사례 연구

제1절 | 대법원 판례 분석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 달려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최근에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⁵⁾. 법원은 그 이후의 여러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이후의 성폭력 사건에 관한 8개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하였다. 먼저 각 판결의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의 판단을 살핀 후, 판단의 법리 및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판단의 기준, 근거, 고려된 사정 등을 분석하였다.

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1심, 항소심, 상고심 등의 판결 내용의 변화를 살핀다. 판결 변화의 결정적인 근거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배척 또는 인정 태도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고려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되,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 및 이례적으로 신빙성을 배척한 경우에 대하여 판단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모텔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고, 2017. 7. 17. 04:28경부터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연속하여 총 4차례 강간하였다.

2) 법원 판단의 변화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⁶⁾.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다르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6) 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노203 판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1) 항소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⁷⁾.

특히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⁸⁾.

2) 대법원이 실시한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⁹⁾.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9)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¹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¹¹⁾.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¹²⁾.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항소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반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 ②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상 전화통화 내역이 있는 점, ④ 모텔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피해자는 사건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1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1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직후 이동한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 ③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 ④는 ‘성적 행위에 이전의 정황’ ⑤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⑥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항소심 법원 판단의 구체적 내용

항소심 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 당시 ‘욕설을 하였다’거나, 두 번째 강간 당시 ‘목을 졸랐다’, ‘강제로 끌고 왔다’, ‘욕을 하였다’는 것 외에 그 진술의 대부분이 남녀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자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외력으로 발생한 멍이나 상처, 붓기 등의 흔적이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②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가 다시 옷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 화장실 사용 여부 및 화장실 문의 형태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현장사진 등과 비교한 실제 모텔 객실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7. 17. 00:00 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뒤,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인 2017. 7. 17. 10:39:46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19초간 통화한 사실과 2017. 7. 17. 10:40: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32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와 관련하여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방향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G호 객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⑤와 관련하여 “2017. 7. 16.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9.부터 2017. 7. 16. 까지 8일 동안 48회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30분 이상 긴 시간 통화한 횟수도 20회나 되고,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⑥과 관련하

여 “모텔에서 나와 식당으로 이동하기로 한 후, 식당 앞에 도착하여 커피숍으로 도망가려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식당 입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당시 여러 명의 식당 직원이 있었고, 손님들이 식당에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변에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님이 3명 정도에 모두 나이 드신 분들이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 ②, ③)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앞서 본 감금 범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상태에서 모텔에 오게 되었고, 낯선 장소의 밀폐된 공간인 객실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단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반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서 간음하였고, 네 번의 성관계 모두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한 것이고 그때마다 피해자는 몸을 밀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죽인다면 위협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적 차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그 당시 피고인과 모텔에 오기까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당시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강간 범행 이후에 옷을 입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강간을 네 번 당했는데, 첫 번째 강간을 당한 후 옷을 입었고, 피고인이 당시 강제로 옷을 벗겼습니다. 한 번은 아래로 벗겼던 것 같고, 다른 한 번은 위로 벗겼던 것 같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다시 이후의 검찰 조사 및 제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 이후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4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는 동안 옷을 입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을 반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는, 검사가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어떻게 벗겼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위로 올려 벗겼는지 아래로 내려서 벗겼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다시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과정을 검사에게 설명하면서 나오게 된 추측성 진술로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혼동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해자도 제1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헷갈렸던 것이고 그 당시 옷을 다시 입은 기억이 없다.”라고 다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같은 장소에서 긴 시간에 걸쳐 네 차례나 강간을 당한 사정을 감안하면, 첫 번째 강간과 두 번째 강간 사이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었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결정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 객실의 화장실을 두 번 정도 사용하였는데,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문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탐문하여 촬영한 현장 사진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원심 법정에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모텔 객실의 화장실 문은 나무 재질이고 잠금장치 또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문’이 정확히 객실이나 화장실 내부의 어디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강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지도 못하게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덧붙인 부수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로 모텔에서

나오기 전까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직원들에게 두 차례 발신하여 각 19초, 32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신 상대방인 피해자의 직원들도 그 시경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자동녹음된 통화내용을 듣거나 남자 연락처를 지우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해당 통화시간이 불과 몇 십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통화내역은 피해자가 스스로 발신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제대로 된 통화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화 내역 중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물리적,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직접적 내용인지 아니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인지 구분하여 판단하였고,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일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내용인 경우에도 역시 양립 불가능하거나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2)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사정 ④)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④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낯선 장소의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감금 범행과 협박으로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 엘리베이터나 객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심리상태에 비추어, 원심이 이러한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강제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은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에 이른 경위’를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상,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모텔 입구 엘리베이터 방향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G호 객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3)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사정 ⑤)를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⑤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호감을 갖거나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바닷가에서부터 돌변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이 네 차례 강간하였다고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은 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할 지라도 사건 당일 갑자기 돌변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립 가능한 사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각 네 차례 강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⑥)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⑥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였는데, 식당 안에 나이 드신 손님들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식당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7. 7. 17. 13:19 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식당에 들어간 직후나 식사 도중 계속 식당 밖으로 나가거나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뒤쫓아 다시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끄는 등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식사 도중 H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수를 먹지 않고 전화통화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신발이 벗겨진 채로 다시 차량에서 내려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에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강간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식당에 도착하여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정을 근거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원심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당일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를 마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보인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앞서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했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고, 그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강간 직후 이동한 식당 앞에서의 상황 및 식당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식당에 도착하여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립 가능한 사정으로 판단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2.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부터 2018. 2. 25.까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및 강제추행 등 연속하여 수차례 추행한 공소사실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3-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공소사실 내용

순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1			2017. 7. 29. 추행 (러시아 보트)
2	2017. 7. 3. 간음 (러시아 호텔)		

순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3			2017. 8. 10. 추행 (KTX 열차 내)
4			2017. 8. 12. 추행 (호프집 2층 화장실 복도)
5	2017. 8. 13. 간음 (서울 엠베서더 호텔)		
6			2017. 8. 16. 추행 (호텔 내 중식당)
7			2017. 8. 중순 ~ 말경 추행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8	2017. 9. 3. 간음 (스위스 호텔)		
9		2017. 11. 26. 추행 (카니발 승합차 내)	
10	2018. 2. 25. 간음 (마포 오피스텔)		

2) 법원 판단의 변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¹³⁾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다.¹⁴⁾ 대법원도 위와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에서는 개별 공소사실별로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1) 1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¹⁵⁾

2) 항소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¹⁶⁾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¹⁷⁾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¹⁸⁾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

1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1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1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1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다. 개별 공소사실별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및 인정

1) 2017. 7. 29.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29. 저녁경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주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강가에서 CQ 부부, J도청 직원들, 수행비서인 피해자 등과 함께 요트를 타고 있던 중 요트의 앞쪽에 있다가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에 피고인의 엉덩이와 다리를 갖다 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은 경위나 담요의 위치에 관하여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요트의 뒤쪽 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T또는 S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의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R이 피해자의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19)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위 ①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 ②, ③은 ‘그 밖의 사정 : 목격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의 진술에 관한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1심 법원 판단의 구체적 내용

1심 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허리를 감싸 안은 경위나 담요의 위치에 관하여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 ②와 관련하여 “엉덩이와 다리가 밀착된 상태에서 팔로 옆 사람의 허리를 감싸기 위해서는 신체구조상 팔을 등 뒤로 빼는 동작과 같이 눈에 띄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시 요트의 뒤쪽 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T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의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S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도 그와 같은 장면을 보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일행이 요트를 탄 시간이 저녁 9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북반구이고 백야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네바강 좌우로는 가로등이나 상점의 불빛이 있어서 요트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과 관련하여 “R는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재차 추궁이 이어지자 신체접촉 부위가 허리인지 어깨동무인지 구분을 하지 않았다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는다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앉음과 동시에 허리 부분에 손이 들어와 깜짝 놀랐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팔을 감싸 안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 담요의 위치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피해자가 일부 부수적인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팔을 감싸 안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 담요의 위치 등)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피고인의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2) 그 밖의 사정(사정 ②, ③)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② 사정과 관련하여 “당시 강가를 달리는 요트 안이 제법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붙어 앉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것인데, 피해자가 너무 놀라 경직되어 있었더니 피고인이 금방 손을 뺐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타인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③ 사정과 관련하여 “R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 입은 내용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고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R가 남자이고 하니까 말을 좀 순화해서 표현한다고 “지사님이 요트에서 어깨동무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들은 것인지 허리를 감싸 안았다고 들은 것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R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밖의 사정 : 목격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의 진술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위 각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소 배치되거나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목격자의 이목을 피해 기습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사정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가 피해진술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사정이나 피해자가 그 자에게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을 사정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2) 2017. 7. 30.경 피감독자간음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새벽경 위 상테페테르부르크에 있는 U 호텔의 객실에서 다른 객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맥주가 필요하니 맥주를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를 가지고 피고인의 객실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맥주를 들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수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첫 간음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인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면서 러시아 영사관 직원, 출장에 동행한 도청 직원 등을 동원해 인근의 순두부집을 물색하려고 애쓴 점, ② 러시아에서 귀국한 당일 가해자가 이용했던 미용실에 연락하여 가해자의 머리를 손질했던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으려고 예약하여 찾아간 점, ③ 업무상 대화는 차치하고 P 등 가까운 제3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피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도 전혀 남기지 않고 특히 평소와 다름없이 가해자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의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였다.

위 ①, ②, ③는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①, ②, ③)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제2회 진술 시 ‘성폭행 사건은 지사 하나의 일이지만, 일은 지사 하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비서실, 정무팀, 참모지, 지지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었다. 지사의 행보가 청와대나 AP당의 관심사항이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 성폭행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걸 잊어야만 해. 일과 사건을 분리시켜야만 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러시아 순방에 동행한 사람들 중 피해자만이 비서실 소속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식사메뉴를 확인, 보고하는 등의 업무는 수행비서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러시아 현지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중단한 채 홀로 귀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상 비록 그것이 간음 피해를 입은 당일 아침이라 하더라도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식당과 식사 메뉴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J도지사인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실제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서울에 아는 미용실도 없던 차에, 피고인이 갔던 미용실에서 다음에 한 번 오라고 하였고, BX과 DI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머리를 했던 것이다. 피고인의 오래된 팬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수행비서 일이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시 법정에서 ‘위 미용실은 피고인의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피고인을 한번 모시고 갔던 곳이고, 연예인이 많이 오는 유명한 미용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법정에서 위 미용실은 오래된 팬클럽 회원이 점장인 곳으로,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한 번 가본 것에 불과한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CB의 원심 법정 진술의 및 DK의 진술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에게 ‘수행비서 역할이 너무 적성에 잘 맞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③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P 등 제3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피해가 있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사용한 표현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평소 P, BF, R, O 등에게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에서 사용해온 문투나 표현, 특히 이러한 이모티콘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애교 섞인 표현’이라고 칭하는 표현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P에게 특별히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의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피해자가 동료인 P나 상관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정형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정 및 피해 이전의 평소의 행동,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3) 2017. 7. 29.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신문사 독서스터디에 참석한 후 서울역에서 천안아산역으로 이동하는 KTX 열차 안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시길래 깜짝 놀랐었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② 다른 피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의 추행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뺨을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등 진술 반복의 경위 설명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③ 애초에 이 부분 공소소실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는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 ③은 ‘신고·고소의 경위’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 ②)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검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 뽀뽀인지 키스인지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후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을 맞춘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내용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정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이 부분 추행행위에 관하여 검찰 제1회 진술 시 최초로 개괄적인 진술을 하면서 고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비로소 이 부분 추행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 후 당시 피해자가 오른쪽 뺨에 쪽 하고 뽀뽀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때 오른쪽 뺨을 약간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서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에 알렸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의 이 부분 추행행위는 러시아 출장에서 의 간음행위 후 최초 성적 접촉행위로 피해자로서는 피해감정을 더 크게 느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반복되었다거나 그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명확해진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기초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반복된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2) 신고 · 고소의 경위(사정 ③)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제1회 진술 시 2017. 8. 중순 내지 말경 J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P의 성추행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면서, 피고인의 짝은 성추행 범행에 노출되었음에도 스스로 방어력을 잃고 무기력해져 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고, 이 부분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변호사님들에게 추행이 수시로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몇 가지 큰 것만 넣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야기하자고 하여 고소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부분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나 이 부분 피해사실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궁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추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 · 고소의 경위’를 고려할 경우, 일부 피해사실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나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4) 2017. 8. 12.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밤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호프집에서 X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Y'에 출연한 배우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층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②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어떻게 호프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는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 ②)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상태와 관련하여, '사실 그날 일정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다. 뮤지컬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나서 관객과의 대화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봐서 지쳐 있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황이니 까. 그런데 1차 하시고 2차 하시고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힘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듯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추행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가 설령 그 이후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서 있었던 정확한 위치나 추행행위 후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호프집으로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추행행위 전 피해자의 위치나 추행행위 후의 사정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당시의 피해자의 피곤하고 지친 상태나 예상치 못한 기습추행을 입은 정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 만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5) 2017. 8. 13.경 피감독자간음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새벽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내 방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배정받은 위 호텔의 1720호실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를 안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꼭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여 움직이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꼭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고인이 AA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구두로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언·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러시아에서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W 호프집에서 원하지 않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을 것에 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야 시간에 객실을 달리하여 단둘만이 투숙한 호텔에서 ‘씻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그 용건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조차 없이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씻고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침을 풀고 오라는 건가’라는 뜻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의 방으로 간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씻고 오라’는 말을 짐을 풀고 씻고 오라는 걸로 이해했고, ‘피고인이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뭘 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오라고 하니까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한 역할, 평소 피해자의 업무태도와 피고인의 요구사항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해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말이 성관계를 하자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가 그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직전에 호프집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또다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물론 그냥 이렇게 뭘가 씻었던 것 같다.’, ‘어쨌든 저도 너무 찝찝해서 몸을 물로 샤워는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그날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명확히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해행위를 당하기 전 피고인에 의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6) 2017. 8. 16.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저녁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호텔 3층 ‘AD’ 중식당에서 기자들과 만찬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앞방으로 담배를 가져다달라’고 지시하고 그 앞방으로 간 다음 담배를 가져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법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2017. 8. 중순 내지 말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또는 말경 AE에 있는 J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엉덩이인 가 허리를 만졌다. 추행들이 너무 잦아서 특정 장소가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증언내용이 추가되기도 한 점, ② 피해자의 증언·진술을 선행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시기에 ‘가슴’쪽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행당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정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는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 ②)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②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제1회 진술 시, ‘피고인이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집무실 내실인가 사무공간에서 제 신체를 만졌다. 포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으라고도 하셨던 것 같다.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까지 그러시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신체, 가슴

쪽에 터치가 있었다. 딱 안은 느낌이 있다. 제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저를 껴안았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사실 집무실은 너무 많이 들락거려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엉덩이인가 허리를 이렇게 만지셨던 것 같다. 추행들이 너무 잦아서, 다 겹쳐 있어서 특정한 장소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법정에서도 ‘제가 진술할 때도 너무 잦아서, 집무실도 관용차도 수시로 항상 가슴이나 손 만지시고 몸 만지시는 거야 항상 잦았기 때문에 늘상 이루어져서 특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도지사 집무실에서도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어 실제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인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다른 추행행위 등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거나 일관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해사실의 주요한 내용인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8) 2017. 9. 3.경 피감독자간음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3. 새벽경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AF 호텔의 421호실에서 스마트폰 펠레그램을 이용하여 그 호텔의 다른 객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가져오라’는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객실에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침대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그곳에 눕힌 후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AF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은 421호를,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동에 속한 41호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의 교체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동에 속한 513호를 사용하게 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의 객실을 방문하기 전에 R에게 ‘(피고인이) 부른다, 어떻게 하나?’고 묻는 등 다시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종전의 거절방법보다 더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행비서 업무 초기에도 피고인의 객실 방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었던 바, 이 당시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담배를 두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담배를 가져다주는 업무는 지시대로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있는 후 불과 몇 시간이 경과한 때 BF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특별한 용건 없이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는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③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사정 ①, ②)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AF 호텔은 두 동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고, 각동이 1층을 통해서만 연결되는 구조인데, 당초 호텔 측에서 피고인에게 421호를 CK에게 513호를, 피해자에게 41호를 각 배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513호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EK에서 2017. 8.경 작성한 ‘UN인권 이사회 ED 토의 참석 도지사 스위스 제네바 방문 활동 계획’의 부록에 의하면 “※ 지사님과 수행비서는 가급적 같은 층(근거리 객실)에 배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EH도 ‘통상적으로 수행비서는 지사의 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행비서가 근거리에 위치한 객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방을 피고인의 방 근처에 있는 객실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전에 R가 피고인이 불러도 거절하고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맥주를 갖고 오라고 해서 불안했지만, 일로 부른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실제로 전날에는 그냥 맥주만 갖다 주고 온 날이 있었으니까. 항상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또 부르니까 갈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항상 일로 “뭘 갖고 와라.”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나를 겁탈할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업무로 불러서 제가 바로 대답을 안 하거나 늦게 가면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모든 비서들이 피고인이 부르면 누구나 용건도 안 묻고 “예”라고 달려가는 상황에서 “지사님 왜 부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스위스 출장 이전인 2017. 8. 26. ~27. 피고인을 수행하여 김해 출장을 다녀왔고, 당사에서 피고인이 2017. 8. 27. 02:12 경 “같은 숙소?”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다음 “맥주 줌”, “맥주 두 캔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로 맥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교체요청을 하여 피고인과 가까운 객실을 배정받거나,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담배를 두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가 담배를 가져다 준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특성(수행비서가

근거리에 위치한 객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상 당연한 것으로 보임)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기존의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③)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③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9. 3. 스위스 현지에서 스위스가 어떻냐는 BF의 메시지에 대하여 “그냥 지사님 있는 출퇴근이 있는 세상”, “ㅋㅋㅋㅋ 하루하루 같아요”, “관광 관심없음”, “풍류 관심없음”, “나 맨날 출장갈때 박박해 뒤질것 같으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귀국 후인 2017. 9. 7. EG에게 “그래도 스위스 다녀오고선 그나만 털...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릴렉스와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ㅜㅜ”, “ㅋㅋㅋ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즐거우니 문제라고 하는데. 뭐 어찌겠어요 제 마음이 그런걸요ㅎ”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7. 9. 16. BF에게 J도청 비서실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저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아요”, “내가 주말이든 아침 밤이든 공휴일이든 지사님 위해 다 함께 하는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거긴 한데”,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모두들 당연한 듯이 생각한다면 당연한건 맞는데”, “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것두 같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BF, EG의 관계 및 BF, EG와 피고인의 관계, 일반적으로 업무로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 주고 받는 메시지 내용이 그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 상황이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BF 등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냈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있는 후 불과 몇 시간이 경과한 때 제3자와 카카오톡으로 특별한 용건 없이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점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및 일반적으로 업무로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이 그 메시지를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 상황이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9) 2017. 11.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오피스텔에서 출발하여 AI에 있는 관사로 이동하는 관용차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담요를 덮으면서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퍼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에 벨트에 연결된 버클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만류하기는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날 경우 관용차 운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추행 상황을 알아차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스스로 지퍼를 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퍼를 열려고 시도하면서 벨트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고,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 두려워 벨트를 푼 것이라고 증언·진술하나, 추행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오히려 운전기사가 다소라도 알아채도록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이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의 관용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운행한 운전자는 J도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BI이었던 점, 관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BI이 뒷좌석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폭력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BI에게 피해사실을 들키는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로 인하여 향후 J도청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운전자에게 피고인이 추행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벨트를 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벨트를 푼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구체적인 이유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10) 2017. 9. 3.경 피감독자간음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5.경 AJ AK 녹화현장 및 만찬을 마친 다음 같은 날 밤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H 오피스텔 B동 607호에서 있던 중 스마트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AJ 녹화촬영의 모니터링과 현장수행을 담당하였던 피해자에게 ‘어디니, 뭐하니, 마포로 오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가족들과 식사 중이어서 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1시간 안에 와라, 늦더라도 오라’며 수회 재촉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속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채 다음날 새벽경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요즘 미투(Me Too)에 대하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투를 보며 그때 내가 너한테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된 걸 알았다, 미안하다, 그때 너 괜찮았나?’

괜찮니? 괜찮은 것 같니?’라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동안 입은 피해를 문제 삼겠다고 할 경우 피고인으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내가 어떻게 미투를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안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지 않은 채 주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1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1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1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AK 촬영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AX의 요청을 받고 부득이 녹화장에 가게 되었다는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AK 녹화현장에 사실상 자발적으로 참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2019. 2. 26. 월요일 AK 녹화현장 지원에 관한 출장 품신 및 결제를 받은 점, AX의 당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현장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무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위 녹화현장에서 정무비서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다가, 이처럼 피해자가 AK 녹화현장에 자발적으로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고는 보겨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에 관한 사정’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녹화현장에 참석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그 현장에 참석한 구체적인 동기 및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와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3.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주소 생략) 소재 ‘○○ 호텔’ △△△호실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앉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법원 판단의 변화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²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및 심신

20)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미약자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²¹⁾

1) 항소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은 애초에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으로 부터 실제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필로폰 투약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을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피해자가 혈관 주사 방식의 필로폰 투약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②, ③은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이 예견하기 어려운 가학적인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적 학대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21) 항소심 법원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를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매매에 관하여 합의한 관계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사전 동의를 한 범위 내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2)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사정 ②, ③)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②, ③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동의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동의하고 협조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 행위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거부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4.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팔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

2) 법원의 판단의 변화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²²⁾ 대법원도 항소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피고인이 주장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피고인은 2018. 1. 26.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2018. 1.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날 심각한 폭행 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주장한,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사정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①)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범행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

22) 대전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43, 2019노454(병합), 2019전노44(병합) 판결

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8. 1. 26.자 강간을 당한 후 그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구체적인 이유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23:43경부터 다음 날 01:06경까지 사이에 ○○ 무인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법원 판단의 변화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²³⁾

23)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과는 다르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1) 항소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²⁴⁾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²⁵⁾

2) 대법원이 실시한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²⁶⁾

2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2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²⁷⁾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²⁸⁾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²⁹⁾

26)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28)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항소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2017. 4. 11. 무렵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7. 4. 14. 사이에 네 번 정도 더 피고인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의 친정어머니나 딸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②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모텔에서 생리대, 피해자의 속옷에 관한 이야기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 관한 일상의 대화를 나눈 점, 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조치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즉시 이야기 하지 않고 2017. 4. 15. 저녁 경에야 말한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17. 4. 16.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 ③은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④, ⑤, ⑥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항소심 법원 판단의 구체적 내용

항소심 법원은, ①, ②, ③, ⑥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행 이전에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갈 때까지 외포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④와 관련하여, “ 피해자는 강간 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 속옷을 입는데, 피고인이 ‘생리 중이라면서 속옷의 모양이 왜 그러냐?’고 물어 ‘이런 종류의 속옷은 여성이 생리 중 운동할 때 템포를 끼우고 입는 속옷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남편 등 가정 관련 대화를 10여 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왔다고도 진술하

였다.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지도 않은 ‘템포’라는 생리대의 상호를 듣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보다는,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⑤와 관련하여 “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조직폭력단체 내에서의 위상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남편이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경우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즉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 등으로 강간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였다는 진술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강간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사정 ①, ②, ③)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남편의 친구, 친구의 처 사이로서 2016. 12.경 피해자와 남편이 이사가기 전까지 한 동네에 살면서 부부동반으로 만나기도 하고,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는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상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대답해주었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정과 관련하여, “ 피해자의 집과 범행장소인 이 사건 모텔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해자가 당일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시각, 위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시각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도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났을 때는 모텔에 가기로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위 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미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기 때문에 미리 남편에게 앞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꾸며서 알린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늦은 밤에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일부러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사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는 것이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아가 모텔 객실에서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성적 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한 행위 또는 남편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만을 보낸 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간 행위 그 자체만을 단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상황)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2)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④, ⑤, ⑥)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④ 사정과 관련하여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 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미 외포된 상태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반항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달랬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⑤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귀국한 당일 잠깐 집에 들러

옷만 갈아입고는 다시 집을 나가 광주에 있는 장례식에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피해 사실을 남편이 귀국하여 집에 도착한 즉시 말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이후에야 말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설시와 같이 남편이 과거 조직폭력단체 내에서 피고인과 위상이 비슷하거나 더 높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이미 약 7년 전에 조직폭력단체에서 탈퇴한 점을 고려하면, 남편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남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남편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⑥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을 당한 날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 날 때마다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모두 지우라고 해서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모두 지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찰 수사에서 메시지 등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남편이나 수사기관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대처양상 그 자체만 놓고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해자가 그렇게 대처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경 직장선배인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4. 5. 경 길거리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혀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2) 법원 판단의 변화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³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1) 항소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원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 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³¹⁾

30)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3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2) 대법원이 실시한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³²⁾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³³⁾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³⁴⁾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수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3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3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³⁵⁾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³⁶⁾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항소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직장동료였던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 택시 기사에게 도와달라고 대처하지 않고 단순히 택시를 탄 점, ③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피해자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된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②는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③은 ‘그 밖의 사정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항소심 법원 판단의 구체적 내용

항소심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서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으며,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나는 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적인 저지하려는 모습이나 거부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3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36) 본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했다는 내용의 무고죄 판례인바, 이하에서는 무고죄 피고인을 피해자로, 무고죄 피해자를 가해자로 각 치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것이라면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가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위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고 판시하면서,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습니다.

라.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사정 ①)를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가해자와 사이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설령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관계만을 가지고 강제추행사실 자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2)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②)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②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강제추행사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3) 그 밖의 사정 :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사정 ③)을 고려한 판단

대법원은, ③ 사정과 관련하여,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무고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령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7.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³⁷⁾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남, 사건 당시 15세)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던 2014. 3. 경부터 2015. 2. 경까지 약 1년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기거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어느 날 23:00 ~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오, 몸 좋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법원 및 대법원은, 1심법원과 다르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 배척

1) 항소심 법원의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복장 및 피해자가 형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7)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9도821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2) 항소심 법원 판단의 구체적 내용

항소심 법원은, ①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제1회 및 제3회 조사 시, ‘피고인이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 처음에는 팬티 위로 만지다가 나중에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 ‘처음에는 주물럭거리다가 나중에는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댔으며, 피해자가 살짝 몸을 돌렸지만 피고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고, 발기된 성기를 계속 만지다가 어느 순간 손을 떼고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오~ 몸 좋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몸 좋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올라왔는데, 옷 안으로 손을 넣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거나 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다시 만지다가 잠시 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경찰 제1회 조사 시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0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나갔는지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는, ‘이 부분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비롯한 상반신을 만지면서 몸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피해의 전부였고, 피해자의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고만 거듭 진술하였다가, 신문이 끝나 갈 무렵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올라와 피해자가 움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의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의 복장 및 피해자가 형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주요사항인 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과 같은 공소사실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8. 대전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노1543 판결 분석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법원 판단의 변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위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가 교우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2015. 10.경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위 학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³⁸⁾ 및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항소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다.³⁹⁾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1) 항소심 법원이 실시한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7. 선고 2018고합138 판결

3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

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⁴⁰⁾

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1) 항소심 법원 판단의 근거 - 고려된 사정 및 그 분류

항소심 법원은 ① 피해자는 피해일시, 횡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반복하거나 변경하고 있고 그 변경 경위에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교사들이 왕래하는 교무실이나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니거나 목격할 수 있는 운동장 부근에서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③ 피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수차례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소견들은 대체로 '학교상황에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감, 악몽,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재현 등의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위 ①, ②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 ③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으로 분류할 수 있다.

40)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2)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사정 ①, ②)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7. 3. 7. AK센터, 2017. 10. 27. 검찰, 2019. 10. 11. 당심에 각 출석하여 총 3번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손을 잡고 비비면서 팔도 문지르고 어깨도 주물렀다. 한 달에 10~12번씩 추행했다. 운동장이랑 백엽상 쪽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위로 벗기려고 하였고 팔을 주무르면서 비비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짹 잡았다 놓기도 했다. 피고인은 제가 등교할 때에도 제 손을 잡거나 지퍼를 올려주면서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는데, 자켓을 입고 간 날마다 그랬다'는 것이다. 이 당시 피해자 모친은 동석하여 "손을 잡으면서 재연을 해봐. 다 합해서 열 번이예요, 애가 지금 헛갈려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지시하거나 정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교무실에서 한 달에 열 번, 아니 3달에 다 합해서 10번 정도 당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할 때 등 넘어 왼손으로 제 오른쪽 어깨를 잡으며 등을 스쳤고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백엽상에서는 1번, 등교할 때는 거의 매일 20번 넘게 당했다. 지퍼를 올려준 행동을 한 것은 한 번이다. 피고인이 치마 입은 제 다리를 보며 미소를 짓고 살짝 다리를 스치기도 했다'며 모친의 지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교무실로 불러내어 제 몸을 마구 만졌다.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손을 짹 잡고 위로 올리면서 팔을 비비고 문질렀고, 어느 날은 전화를 하며 저를 일으켜서 팔을 뒤로 꺾어서 문지르기도 했다. 등굣길에서는 제가 학교에 늦었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는 피해일시, 횟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반복하거나 변경하고 있고, 그 변경 경위에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부른 적은 없고 항상 수업시간에 불렀다. 수업 도중 공용전화기로 담임선생님에게 저를 교무실로 오게 하라고 한 것이다. L 선생님과 M 선생님이 보고도 방관하듯 나갔다. 08:45~08:50경 등교할 때 피고인이 지퍼를 올려주며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교사들이 왕래하는 교무실이나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니거나

목격할 수 있는 운동장 부근에서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개별 상담하기 위하여 만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갓길에 추행하였다는 장소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통행하는 길이라서 등교 시간에는 다수의 학생이나 학부모, 선생님이 통행하는 장소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주요한 내용, 즉 피해일시, 횡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교무실이나 운동장, 등갓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그곳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3)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사정 ③)을 고려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③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0.경 급우와 어울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2016. 5. 16.경부터 다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 따라와 안을 들여다보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폭력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정신과 의원, AL센터, AR센터, 천안교육지원청Wee센터 등에서 수차례 상담 및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소견들은 대체로 ‘학교상황에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감, 악몽,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재현 등의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해자 모친은 2016. 6. 말경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무렵부터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치욕감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담 및 진료 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에 관하여 심각한 트라우마

우마를 갖고 있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가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는 피해자 모친이 위 상담 및 진료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모친이 그 무렵 상담사나 의사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오히려 피해자를 위하여는 가능한 한 빨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하여 상담과 진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설령 피해자 모친이 상담사나 의사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상담 및 진료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담 및 진료 내역에는 그러한 내용이 드러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2016. 11. 28.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AR센터의 센터장 W이 발행한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학기 초부터 학급 친구들의 집단따돌림과 더불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음. 친구들의 작은 행동에 대하여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높게 나타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으로 인하여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기 자신이 가해학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환시까지 경험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 달라 보이게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급우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한 피고인으로부터의 성추행 사실이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수치심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과 의원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9.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의 분석 결과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된 사정

앞에서 살펴본 8개의 판례들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고려한 사정들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이선미, 박용철, 서용성, 2020:82-83)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

-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반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였고, 범행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점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빼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상 전화통화 내역이 있는 점
-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은 경위나 담요의 위치에 관하여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시길래 깜짝 놀랐었죠...’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점
- 다른 피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도의 추행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뺨을 도려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등 진술 반복의 경위 설명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어떻게 호프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가슴 같은 데를 만지고, 엉덩이인가 허리를 만졌다. 추행들이 너무 잦아서 특정 장소가 아니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범행의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증언내용이 추가되기도 한 점
- 피해자의 증언·진술을 선택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시기에 ‘가슴’쪽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행당한 것인지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점
- 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복장 및 피해자가 형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 피해자는 피해일시, 횟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반복하거나 변경하고 있고 그 변경 경위에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교사들이 왕래하는 교무실이나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니거나 목격할 수 있는 운동장 부근에서 교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하여 일관성(진술 반복 여부, 반복 경위), 명확성, 객관적 상당성(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합리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 모텔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AA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구두로 말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언·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러시아에서 피고인의 성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W 호프집에서 원하지 않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을 것에 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야 시간에 객실을 달리하여 단둘만이 투숙한 호텔에서 ‘씻고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그 용건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이나 질문조차 없이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씻고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집을 풀고 오라는 건가’라는 뜻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의 방으로 간 점
- AF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은 421호를,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동에 속한 41호를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의 교체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같은 동에 속한 513호를 사용하게 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의 객실을 방문하기 전에 R에게 ‘(피고인이) 부른다, 어떻게 하나?’고 묻는 등 다시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종전의 거절방법보다 더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행비서 업무 초기에도 피고인의 객실 방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었던바, 이 당시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담배를 두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담배를 가져다주는 업무는 지시대로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피고인의 AK 촬영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AX의 요청을 받고 부득이 녹화장에 가게 되었다는 이 부분 피해자의 증언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 피해자가 2017. 4. 11. 무렵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7. 4. 14. 사이에 네 번 정도 더 피고인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피해자의 친정어머니나 딸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점
- 피해자가 모텔로 가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행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나 피해 방지 행위의 유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 또는 피고인을 겁내지 않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퍼를 열려고 시도하면서 벨트에서 ‘딸그락’ 소리가 났고,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 두려워 벨트를 푼 것이라고 증언·진술하나, 추행 사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임이 분명하고, 오히려 운전기사가 다소라도 알아채도록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것이 피해방지를 위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필로폰 투약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을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할 것인 점
- 피해자가 혈관 주사 방식의 필로폰 투약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협조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동한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반복하였던 점
- 첫 간음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인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순두부를 좋아한다면서 러시아 영사관 직원, 출장에 동행한 도청 직원 등을 동원해 인근의 순두부집을 물색하려고 애쓴 점
- 러시아에서 귀국한 당일 가해자가 이용했던 미용실에 연락하여 가해자의 머리를 손질했던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으려고 예약하여 찾아가는 점
- 업무상 대화는 차치하고 P 등 가까운 제3자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조차 피해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단서도 전혀 남기지 않고 특히 평소와 다름없이 가해자를 적극 지지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점
-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있을 후 불과 몇 시간이 경과한 때 BF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특별한 용건 없이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모텔에서 생리대, 피해자의 속옷에 관한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남편이나 가족에 관한 일상의 대화를 나눈 점
-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 조치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즉시 이야기 하지 않고 2017. 4. 15. 저녁 경에야 말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인 2017. 4. 16.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모두 삭제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강제추행 이후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 택시 기사에게 도와달라고 대처하지 않고 단순히 택시를 탄 점
- 피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수차례 상담 및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소견들은 대체로 '학교상황에서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감, 악몽,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재현 등의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하였는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피해 직후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은 애초에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 피해자가 직장동료였던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연애 또는 호의적인 감정, 기존의 신체접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신고·고소의 경위 및 그 밖의 사정

- 애초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 당시 요트의 뒤쪽 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T또는 S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의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R이 피해자의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
- 가해자가 강제추행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고 피해자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법원에서 기각된 점

위와 같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고소의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의 고소장 포함 여부, 참고인의 증언, 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자가 받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및 피해자가 제기한 재정신청의 기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 태도

앞서 살펴본 8개의 판례들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고려한 사정들의 각 유형에 따른 법원의 판단 태도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직접적 내용인지 아니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인지 구분하여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의 주요사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일부 다소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수적 내용인 경우에도 역시 양립 불가능하거나 일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피해자가 일부 부수적인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에 팔을 감싸 안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 담요의 위치 등)에 관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주요한 부분(피고인의 신체접촉 부위)에 관한 진술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나중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명확해진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기초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반복된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추행행위 전 피해자의 위치나 추행행위 후의 사정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당시의 피해자의 피곤하고 지친 상태나 예상치 못한 기습추행을 입은 정황 등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사실의 주요한 내용인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사정이 있다면,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
- 공소사실의 주요사항인 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과 같은 공소사실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주요한 내용, 즉 피해일시, 횡수, 추행 부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반복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교무실이나 운동장, 등굣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그곳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 자체에 관한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인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여, 1)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

는 태도를 보이고, 다만 최초 진술에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가 법정에서 그 진술이 명확해진 경우라도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우를 고려하여 신빙성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경우에는 다소 일관성, 특정성, 명확성 등이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피해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 및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상, 원심이 설치한 바와 같이 호텔 입구 엘리베이터 방향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G호 객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객실 안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피해행위를 당하기 전 피고인에 의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스스로 교체요청을 하여 피고인과 가까운 객실을 배정받거나, 담배를 피고인의 방문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방문 앞에 담배를 두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의 객실로 들어가 담배를 가져다 준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수행비서로서의 업무 특성(수행비서가 근거리에 위치한 객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상 당연한 것으로 보임)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기존의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녹화현장에 스스로 참석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그 현장에 참석한 구체적인 동기 및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와의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성적 행위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한 행위 또는 남편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만을 보낸 행위,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간 행위 그 자체만을 단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상황)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성적 행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나 피해 방지 행위가 없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 또는 피고인을 겁내지 않는 모습 등이 나타는 경우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태도, 피해자의 업무특성, 구체적인 동기나 경위,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와의 관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 지퍼를 내리거나 벨트를 푼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구체적인 이유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로폰을 투약하는데 동의하고 협조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어떠한 성적 행위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과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거부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협조하였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동의 또는 협조를 한 구체적인 이유나 사정 및 다른 행위에 대한 동의 또는 협조가 어떠한 성적 행위도 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피해자가 간음행위가 있은 후 불과 몇 시간이 경과한 때 제3자와 카카오톡으로 특별한 용건 없이 일상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점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및 일반적으로 업무로 연관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메세지 내용이 그 메세지를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 상황이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이유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거나, 남편이나 수사기관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대처양상 그 자체만 놓고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 강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해자가 그렇게 대처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강제추행사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과 의원에서 상담 및 진료를 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보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 이후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사정,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친밀한 유지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정 등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그렇게 대처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제3자의 관계, 외부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람의 개인적 상황이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애의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할 지라도 사건 당일 갑자기 돌변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사를 함께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양립 가능한 사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각 네 차례 강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진술이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매매에 관하여 합의한 관계에 있더라도, 피고인의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피해자가 예상하거나 사전 동의를 한 범위 내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설령 강제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행위 자체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관계만을 가지고 강제추행사실 자체를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연애 또는 호의적인 감정이 보이거나 기존에 신체 접촉을 해온 모습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돌변하였는지, 기존 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신고·고소의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는 경우의 판단 태도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신고·고소의 경위'를 고려할 경우, 일부 피해사실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나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밖의 사정 : 목격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의 진술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위 각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소 배치되거나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목격자의 이목을 피해 기습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사정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가 피해진술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사정이나 피해자가 그 자에게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을 사정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무죄 사건에서, 대법원은 설령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바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이 신고·고소의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태도를 정리하면, 법원은 일부 피해사실이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정, 목격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의 각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다소 배치되거나 피해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사정 등이 있더라도, 그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나 최초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목격자의 이목을 피해 기습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사정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자가 피해진술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사정이나 피해자가 그 자에게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았을 사정, 피해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절 | 하급심 판결문 분석

1. 판결문 조사 개요

가. 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에서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실제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성인지각 수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논의한데 이어, 제2절에서는 271개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당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강간사건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대한 기록조사를 병행하였는데, 분석을 위해 조사된 변인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제시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 [표 3-2] 조사 내용

구분	변수	비고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정성·정량적 변인
처분 및 사건 특성	사건판결법원, 죄명, 경합여부, 형량 및 형기 공범여부, 공범자수, 피해자수	정량적 변인
피고인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국적, 정신 및 신체장애 여부, 범죄경력	
피해자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국적, 정신 및 신체장애 여부 피고인-피해자 관계, 피고인-피해자의 이전 성관계 여부	
범죄행위 특성	사건발생 지역, 발생장소, 성폭행 행위유형, 폭행협박 특성, 범행도구, 피해자 저항정도, 범행당시 피고인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피해자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범행(피해) 이후 태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 후 피해자의 태도	

조사 내용은 크게 ‘피해자 진술신빙성’, ‘처분 및 사건 특성’, ‘피고인 특성’, ‘피해자 특성’, ‘범죄행위 특성’, ‘범행(피해) 이후 태도’의 여섯 유형으로 구분되며, 약33개의 변수를 정량 혹은 정성적으로 측정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에 진행하였다.

나. 분석대상 성폭력사건의 일반적 특성

기록조사에서 측정된 양적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 사건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강간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 316명 중 88.3%에 해당하는 279명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으며, 11.1%인 35명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건은 신빙성 인정 여부가 판결문에 적시되어있지 않았다.

» [표 3-3]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구분	빈도	백분율(%)
신빙성 있음	279	88.3
신빙성 없음	35	11.1
미상	2	0.6
합계	316	100.0

2) 처분 및 사건 특성

사건 판결 법원은 서울(21.4%), 대구(14.4%), 수원(13.3%)이 가장 많아 약50%를 차지하며, 그 외 대전(10.7%), 인천(9.2%), 부산(6.3%), 울산(4.8%), 창원(4.8%), 의정부(4.4%), 춘천(3.7%) 등으로 총 14개 법원이 포함되었다.

» [표 3-4] 사건 판결 법원

구분	빈도	%
서울	58	21.4
대구	39	14.4
수원	36	13.3
대전	29	10.7

구분	빈도	%
인천	25	9.2
부산	17	6.3
울산	13	4.8
창원	13	4.8
의정부	12	4.4
춘천	10	3.7
전주	7	2.6
광주	4	1.5
청주	4	1.5
제주	4	1.5
합계	271	100

1심 판결 결과 무죄가 10.8%, 유죄가 89.2%이며,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징역형이 가장 많아 71.5%, 다음으로 집행유예 10.8%, 벌금 2.3%의 순이다.

» [표 3-5] 1심 판결

구분		빈도	%
무죄		37	10.8
유죄	벌금	8	2.3
	집행유예(보호관찰포함)	37	10.8
	징역	246	71.5
	기타(부착명령, 사형)	16	4.7
합계		344	100

징역형을 받은 246명 중 미상을 제외한 242명의 형기 분포를 살펴보면, ‘2년 초과-3년 이하’가 가장 많고(27.2%), ‘3년 초과-4년 이하’(16.3%), ‘5년’(14.6%), ‘1년 초과-2년 이하’(12.6%)의 순이다.

징역형 형기 평균값은 54.11개월이었고, 최빈값은 36개월, 중위수는 42개월이었다.

» [표 3-6] 징역형 형기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이하	10	4.0
~2년 이하	31	12.6
~3년 이하	67	27.2
~4년 이하	40	16.3
5년	36	14.6
6년	12	4.9
7년	13	5.3
8년	10	4.0
9년	3	1.2
10년	10	4.0
그 이상	10	4.0
합계	242	100.0

평균 54.11개월 / 최빈값 36개월 / 중위수 42개월

303명의 피고인들의 죄명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미성년자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대부분의 강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 [표 3-7] 죄명

구분	빈도	%
강간	39	12.9
강간미수	7	2.3
강간상해	14	4.6
강간치상	5	1.7
강도강간	3	1.0
특수강도강간	3	1.0
미성년자간음	1	0.3
미성년자의제강간	2	0.7
위계등간음	2	0.7
유사강간/준유사강간	15	5.0

구분	빈도	%
준강간등	35	11.6
강간이외(추행 등)	10	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30	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위계등간음)	1	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준강간등)	1	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2	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1	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8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0	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6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33	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7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1	0.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9	9.6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3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등)	10	3.3
합계	303	100.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이 포함됨

경합범은 61.1%였으며, 동종경합이 29.0%, 이종경합이 19.8%, 동종과 이종범죄가 모두 경합된 경우가 12.2%였다. 경합범이 아닌 경우도 118명으로, 전체 피고인의 38.9%이다.

» [표 3-8] 경합여부 및 종류

구분	빈도	%
경합아님	118	38.9
동종범죄경합	88	29.0
이종범죄경합	60	19.8
이종+동종범죄경합	37	12.2
합계	303	100.0

3) 피고인 특성

법원행정처에서는 연구를 위하여 판결문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미상의 비율이 높다.

조사대상 사건 피고인은 모두 남성이었고,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많고, 미혼비율이 높으며, 서비스직, 관리자, 전문직,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상 비율이 60-70%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 [표 3-9] 피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303	100.0
	여성	-	-
	합계	303	100.0
연령	10대	20	6.6
	20대	25	8.3
	30대	8	2.6
	40대	5	1.7
	50대	4	1.3
	60대	1	0.3
	70대 이상	2	0.7
	미상	238	78.5
	합계	303	100.0
혼인상태	미혼	67	22.1
	기혼	48	15.8
	미상	188	62.0
	합계	303	100.0
직업	관리자	15	5.0
	군인	1	0.3
	무직	4	1.3
	학생	11	3.6
	전문직	13	4.3
	사무종사자	6	2.0
	서비스종사자	17	5.6
	판매종사자	9	3.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	1.7
	단순노무종사자	2	0.7
	미상	218	71.9
	합계	303	100.0

피고인들 중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는 36.6%였고, 없는 경우는 46.2%로,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이 좀 더 많았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17.2%는 범죄경력 유무를 알 수 없었다.

» [표 3-10] 피고인의 범죄경력

구분	빈도	%
있음	111	36.6
없음	140	46.2
미상	52	17.2
합계	303	100.0

4) 피해자 특성

조사대상 사건의 피해자는 총 316명으로, 이 중 99.1%에 해당되는 313명은 여성이었고, 남성 피해자는 3명으로 0.9%이다.

피해자는 10대(41.5%)와 20대(26.9%)가 68%가 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2.7%), 40대(8.2%), 10대(4.1%), 50대(2.8%), 60대 이상(0.9%)의 순이다. 피해자의 국적 면에서는 외국인이 11명(3.9%) 있었다.

혼인상태와 직업은 미상의 비율이 6.70% 대로 매우 높아, 그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강간범죄의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 연령이 낮아 미혼과 학생의 비율이 기혼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표 3-11]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3	0.9
	여성	313	99.1
	합계	316	100.0
연령	10세 미만	13	4.1
	10대	131	41.5
	20대	85	26.9
	30대	40	12.7
	40대	26	8.2

구분		빈도	%
	50대	9	2.8
	60대 이상	3	0.9
	미상	9	2.8
	합계	316	100.0
혼인상태	미혼	81	25.6
	기혼	21	6.6
	미상	214	67.7
	합계	316	100.0
직업	관리자	1	0.3
	무직	1	0.3
	학생	33	10.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0.9
	사무종사자	10	3.2
	서비스종사자	33	10.4
	판매종사자	2	0.6
	단순노무종사자	1	0.3
	미상	232	73.4
	합계	316	100.0
국적	내국인	289	91.5
	외국인	11	3.9
	미상	16	5.1
	합계	316	100.0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이 15.1%, 가면식(사건직전처음 만난 사람)이 20.7%이고 면식범은의 비율은 57.9%이다. 면식범 중에는 ‘친구/지인/동네사람’(20.7%)과 ‘애인/전애인’(11.2%)이 많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했던 경우보다는(6.3%)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나(51.6%), 미상 비율이 42.0%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특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 [표 3-12] 피고인-피해자 관계 특성

구분		빈도	%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친부모	17	5.6
	의부모/양부모	8	2.6
	조부모/의조부모	5	1.6
	형제(자매)	1	0.3
	친척	18	5.9
	동거인/전동거인	7	2.3
	애인/전애인	34	11.2
	친구/지인/동네사람	63	20.7
	직장동료/상사/부하/거래처직원	21	6.9
	기타(선생님/종교관련자/母的내연남 등)	21	6.9
	사건직전처음 만난 사람 (즉석만남/소개팅/채팅후만남 등)	63	20.7
	모르는 사람	46	15.1
	합계	303	100
이전 성관계 유무	있음	20	6.3
	없음	163	51.6
	미상	133	42.0
	합계	316	100.0

5) 범죄행위 특성

성폭력 행위 유형은 중복응답으로 측정되었는데, 성기삽입이 가장 많고(36.6%), 그 외 애무, 손가락 삽입, 구강 삽입, 성적 키스, 드라이 섹스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 [표 3-13] 성폭력 행위 유형

구분	빈도	%
성적키스	44	8.4
애무	131	25.0
자위	6	1.1
구강삽입	44	8.4
손가락삽입	53	10.1
항문삽입	15	2.9
성기삽입	192	36.6

구분	빈도	%
이물질 삽입	8	1.5
드라이 섹스(성기 문지르기)	13	2.5
기타(촬영, 옷 벗기기, 음란물 보여주기 등)	19	3.6
합계	525	100

*중복응답으로 측정됨

폭행 및 협박 특성을 보면 피해자가 만취상태이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등을 포함하여 협박 및 폭행이 없는 경우가 14.9%이고, 그 외 85.1%는 언어적 폭력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폭행·협박이 있었다.

» [표 3-14] 폭행 유무 및 유형

구분	빈도	%
협박 및 폭행 없음(피해자 만취 등 저항불능상태 포함)	80	14.9
완력사용	179	33.3
흥기로 위협	30	5.6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기(1회)	29	5.4
2회 이상 구타	63	11.7
흥기로 찌르기	3	0.6
발로 밟기	6	1.1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95	17.7
결박(테이프, 끈 등)	11	2.0
감금	20	3.7
피해자의 겉옷이나 속옷을 찢거나 자름	6	1.1
기타(문신보여주기, 자해, 살인 포함)	16	3.0
합계	538	100

*중복응답으로 측정됨

피해 당시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가 25.8%이고, 언어적 저항을 한 경우가 44.7%(소리 지르기 22.7%, 간청 11.0%, 언어적 거부 거절 10.3%), 도망이 10.3% 등이다.

» [표 3-15] 피해자 저항

구분	빈도	백분율(%)
저항 없음	110	25.8
물리적 힘 사용(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밀기)	103	24.1
언어적 저항(소리 지름 등)	97	22.7
간청(폭행을 그만두기를 빌기 등)	47	11.0
도망	44	10.3
언어적 거부, 거절	22	5.2
협상(돈을 주겠다고 협상 등), 협박	4	0.9
합계	427	100

*중복응답으로 측정됨

사건당시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42.9%(음주 15.8%, 약간 취함 25.4%, 만취 1.7%), 피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은 41.4%로(음주 4.4%, 약간 취함 18.0%, 만취 19.0%),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비하여 만취 상태였던 비율이 높다.

» [표 3-16] 음주 여부

구분		빈도	%
가해자 음주	음주안함	117	38.6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48	15.8
	약간 취함	77	25.4
	만취	5	1.7
	미상	56	18.5
	합계	303	100.0
피해자 음주	음주안함	148	46.8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14	4.4
	약간 취함	57	18.0
	만취	60	19.0
	미상	37	11.7
	합계	316	100.0

6) 범행(피해) 이후 태도

피해 이후 피해자의 대응방식은 고소·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절반 정도이고

(51.1%),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9.5%), 상담소 등에 연락한 경우가(5.9%) 있었다. 피해자의 피해 이후 반응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2.9%로 높은 편이다.

» [표 3-17] 피해 이후 피해자 대응

구분	빈도	%
가해자 고소, 신고	183	51.1
상담소 등에 도움 요청	21	5.9
지인에게 도움 요청	34	9.5
기타(처벌불원, 도망, 회피 등 포함)	38	10.6
미상	82	22.9
합계	358	100

*중복응답으로 측정됨

반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는 ‘범행을 부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81.2%), 그 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4.8%), ‘합의를 시도’하거나(2.2%), ‘사과’한 비율은(1.7%)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기타’는 도주, 피해자 책임전가 등’으로 5.9%이다.

» [표 3-18] 범행 후 가해자 태도

구분	빈도	%
합의시도	8	2.2
사과	6	1.7
범행부인(합의된 성관계 등)	289	81.2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음란 메시지 전송 등)	17	4.8
기타(도주, 책임전가, 피해자 행실비난 등)	21	5.9
미상	15	4.2
합계	356	100

*중복응답으로 측정됨

2. 분석 방법: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일반적 피해자의 경험칙

2018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이 아닌, ‘(성폭력)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¹⁾

그런데 성폭력사건의 판결에서 판사의 유무죄 판단 혹은 피해자 및 피고인 진술신빙성 판단이,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칙에 기초한 것인지, 특히 그것이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판단인지를 객관적인 척도와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일반화에 이르거나 지나친 여성주의에 치우쳐 가치중립성이 결여된 분석이 되기 쉽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판결문은 극히 정형화된 언어와 구조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판단자의 유무죄 판결과 진술신빙성 판단이 성인지감수성적 관점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판결문 성폭력사건의 유무죄 판결이나 피해자·피고인 진술신빙성 판단 전체에 대한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판결문에 적시된 진술신빙성 판단의 각 요소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판단요소별로 기술된 내용이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한 바 있는 진술신빙성 판단의 기준과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법리는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기준을 진술 내적 요소와 진술 외적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이선미, 박용철, 2020:81-86). 진술 내적 요소에는 1)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일관성, 2) 구체성, 3) 합리성, 그리고 객관적 상당성 등이 있다. 진술 외적 요소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1) 진술의 동기, 이유나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2)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태도와 모습, 3) 진술의 진실성과 신뢰성, 4)

41)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다”. 이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등까지를 판단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더불어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합리성 판단기준으로 세 가지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1) 피해자다움에 대한 판단과 2) 피해자 저항정도에 대한 판단(폭행협박의 적용기준), 3)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에 대한 판단이다.

판결문 분석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표 3-19>와 같다

» [표 3-19] 분석틀: 진술신빙성 판단요소의 구분

진술신빙성 판단 요소		판단요소별 사례 구분
진술 내적 요소	진술내용의 일관성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구체성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합리성	진술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 외적 요소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누양스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반영 요소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저항정도,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	

이하에서는 조사대상 성폭력사건 판결문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 내적 요소와 진술 외적 요소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이 드러나는 사례들을 분석, 제시하였다.

3. 진술 내적 요소

가. 진술내용의 일관성

1)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목격자 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 성폭력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결국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진술내용의 일관성으로, 대법원은 진술의 일관성이란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도16628 판결)고 하였다. 즉 진술내용이 바뀌거나 번복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까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범행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인정한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신빙성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 강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모텔 방에 들어가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들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B가 위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 그 방법 및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저항 방법, 피고인 B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모텔 방으로 피고인 A가 들어와 피고인 B를 옆방으로 보낸 경위 및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위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기억 단절 시점과 기억 회복 시점 당시 상황, 사건 발생 이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전까지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을 노래주점 종업원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에게 이끌려 판시 범행장소인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개시할 무렵 피해자는 야한 꿈을 꾸는 줄 알고 제대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므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평소 주량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성교가 이루어진 경위와 술집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서 성교를 하게 된 과정 등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드문드문 기억난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진술내용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사례에 대한 판단

실제 사건에서 모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피해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주취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자체가 가져다주는 공포심과 불안 등으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거짓증언을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진술내용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 성폭력피해자 경험칙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진술일관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일관성을 가지지는 못하나, 주된 공소내용 및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성이 있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 사소한 사항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없다하더라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이나, 신빙성을 인정한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기 전 옷을 언제 벗었는지, 강간당한 장소인 노래방 6번방의 조명을 언제 끄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는 ‘피고인 D가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 점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간음할 당시 피고인들 전원이 방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네 명 다는 아니어도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간음을 당하는 것에 비해

다소 지엽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식이나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재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이 동경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대적인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손이 어떤 손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횟수 등에 관하여 경찰 및 법원에서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장소에 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G 앞길 인근의 M미용실, N마트, O학원 등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범행장소의 상황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인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방법 및 범행시점에 관하여도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요 정보에 관한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고..... 위와 같은 세부정보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음에는 피고인을 호프집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다가 나이트클럽을 처음 갔는데 나오는 길에 그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또 그 이후에는 나이트클럽을 몇 차례 갔었는데 그 안에서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강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피해자가 두 시간 정도 쉬어가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적당한 장소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지금 갈 만한 곳이 없고 아무 짓도 안 할 테니 한두 시간만 같이 있다 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게 된 사실,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깔려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게 되자 혀를 깨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3일 연속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혀를 내밀게 하여 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점, 가슴을 만진 점, 가슴을 빨고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

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한 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각 범행일시 또는 그 당시의 추행행위 내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일부 판결은 피해자가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 판시 내용에서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피해자의 특별한 경험칙에 대한 이해가 엿보인다. 피해자의 강간두려움과 공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진술의 피로감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다

...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타의 횟수 등에 있어서도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심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강간의 두려움 등으로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당시 피해자의 이 같은 공포 및 흥분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판시 여관 이라고 진술하다가 공소제기 후 검찰의 추가조사에서 위 여관 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간범행 당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인 여관의 정확한 호실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오히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하여 수사과정에서 호실이라고 진술한 이후 그 진술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의 번복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소된다고 할 수 없다.**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감이나 피로감 등으로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일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부분, 즉 각 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등은 일관되어 있고, 각 범행은 상호간에 혼동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J는 검찰에서 “2012년 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 봄경 추행한 이외에도, 여러 번 가슴을 만지려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추가로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한 것이다. 그 사실 (2012. 봄경 추행) 이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가 추행 사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비밀관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오랫동안 성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술의 일관성이 부분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사례도 다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은 최초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3개월 가량 간격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 강간 등을 당하였으며, 각 범행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범행시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자연스러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맥락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날짜와 횟수를 다소 불명확하게 기억한다거나 주변 정황이나 공소사실 이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모순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모든 정황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진술은 추행에 관한 직접적 부분은 아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흐트해지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주취상태인 경우 일관된 진술이 어렵다는 점 역시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었다.

이 사건 당일 오피스텔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고, 일부 사항에 있어서는 주관적 오인 또는 착각에 빠져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기억나는 순간들을 조합하여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모든 상황을 기억한 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이후 약 1년 동안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혼란스럽다는 점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즉 경찰에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까지 약 4~5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계도 없었고, 느낀대로

이야기했을 뿐'임을 진술 변경의 이유로 언급하였던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밤늦도록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신 탓에 주의력 내지 집중력이 온전치 않았으리라 짐작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양 조사 시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변화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10분 정도인 것도 같지만,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간범행 장소로 이동하던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에 J 장례식장 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같이 돌렸다'고 말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운전 중이던 피고인의 팔을 잡거나 운전대를 함께 잡고 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의 핸들을 잡고 방향을 돌리는 것과 같은 비일상적인 상황을 겪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일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4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점 및 피해자가 위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핸들을 쥐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장애인인 경우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이 있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인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범행이 이루어진 2010. 5. 22.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하였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4개월여가 경과할 무렵인 2010. 10.경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일부 세부적인 부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비록 범행일시를 틀리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이 피고인, F 및 G와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 간 날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행일시는 실제 범행일시와 불과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며,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그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다소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진술내용의 일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내용이 구체화되어 경찰, 검찰, 법정의 단계별로 진술내용이 늘어나고 구체화되는 경우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목격한 이후 최초 진술내용이 그 이후의 진술보다 정확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을 거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해지는 경우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해자는 카메라 촬영 부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알몸을 수차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찍은 것 같다고 추측성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술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핵심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여 신빙성을 의심하는 판례들 역시 존재하는데, 판단근거로 제시된 일부 논리는 성인지각수성 혹은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특히 아래 제시된 사례의 경우 최초 강제추행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강간 피해에

대해 나중에서야 진술하였다는 점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피해자들이 수치심 등으로 성기삽입 피해를 진술하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근거한 판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판사는 여러 판단요소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판결문에 강간피해 진술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해서 전체 판결과 양형이 성인지감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궁에 넣었다 항문에 넣었다’라는 말은 맞다. 당시 피고인이 항문에 사정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성기를 자궁에 넣었다는 것은 당황해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은 곳은 항문뿐이다. 피고인이 항문 안이 아니라 밖에 사정을 했다. 정액을 보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성기를 질에도 삽입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사정 여부’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는 2010. 3. 22. 경찰에서 다시 진술을 할 때 사실은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전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기에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 강간 사실을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까지 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으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추행 사실만을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당초 추행 사실만을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그보다 더 중한 강간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도 피해자의 진술 반복 계기로는 충분히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초기 수사과정에서는 삽입, 간음 또는 이에 관한 특유의 경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도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신고가 되었고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가해행위를 먼저 진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강간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1)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의 일관성과 더불어 진술내용의 구체성 역시 흔히 명시되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이다. 진술의 구체성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그 상황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게 된 경위, 각 강간을 당한 장소,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자신을 돌려보내 준 경위 등 무려 10시간이 넘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오히려 피해자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거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아닌 것에 관하여도 현재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내용이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응, 상호 작용이 뚜렷이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하여 함께 피해자의 친구를 찾다가 빈방인 3번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으며 피해자도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비록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덩치 큰 사람(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안경 쓴 사람(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몸 위에

올라 앉아 가슴을 만졌고, 당시 자신의 상의는 가슴 위로 올려져 있었으며,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인상 착의, 자세 및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대체로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하여는 그 시기가 병원 직원들로부터의 피해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관하여도 검찰 2회 조사 시에 위에서 인정한 상해 피해를 당한 것과 전후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할 뿐 아니라 그 묘사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당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성관계 후 샤워를 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계속 울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엽적인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든 사정들은 모두 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내용의 구체성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장소, 발생 사건의 선후 관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지식 및 지적 능력을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생인 피해자로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수준의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열 번 정도 싫다고 말했고 또 피해자가 후다(성관계를 해본 사람) 라는 거짓말도 했으나, 피고인이 그냥 막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1세의 아동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신고 등 공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나 신체적 외상 등 흔적의 확보가 곤란하여 정확한 날짜나 시점을 알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의 학년, 학기, 방학, 계절 및 특정 사건 등 특별한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하고, 만약 범죄의 반복적 특성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느 경우이나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2) 진술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한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구체성은 피해자 혹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이기는 하지만,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거나, 반대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에는 일반적 피해자 경험칙에 대한 고려나 판단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조사대상 판결문 중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진술내용의 일관성 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진술내용의 구체성 면에서는 특히 성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유혹 부분이나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과 강제로 이 사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전혀 진술하지 않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당시 이 사건 성관계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이례적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항문성교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아팠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위하여 어떤 준비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삽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최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를 빨아준 후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아픈 기억은 있었던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사진을 찍을 것 같아서 얼굴을 돌리고 있어 삽입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아픈 기억이 있어 삽입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 다가 위와 같이 직접 그 장면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볼펜이나 소시지 등을 음부에 삽입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성기의 삽입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아팠다거나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갔다했다는 등 진술은 통상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의 성적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반드시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심리적 위해를 염려한 피해자 부모의 완강한 거부로 피해자 본인과와의 대면기회마저 갖지 못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는 영상진술 및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의 적발에 따른 전적인 죄책감 속에서 만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주된 논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을 온전히 채택하기도 어렵다.

반면 준강간 특히 피해자가 피해당시 주취상태였던 경우 진술의 구체성을 부족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팔을 약간만 움직여도 그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정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얼굴에 무엇인가가 튀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당시의 모든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사정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과정(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껴안고 위 H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바꿔주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모텔비를 계산한 사실) 및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와 그 지속시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 등에 관하여 아예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소 주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이 분명하므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적 정황사실에 관하여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블랙아웃 증상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바램에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다. 진술내용의 합리성

1) 진술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진술내용의 합리성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판결문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행위 내용이나, 피해자의 행동방식 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칙과 경험칙이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경위,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의 상황과 감정상태,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기는 것을 어렵듯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몸을 더듬거나 옷을 벗기는 행위와 성행위와의 시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두 번째 만남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었는바, 피해자가 결혼 상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서 술을 마시러 간다는 사실을 미리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만난 지 불과 3~4시간 정도 후에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서 성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구나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무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의식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이 부분 범행 직후 경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휴대폰 절도만을 신고한 사실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수치심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상편지, 피고인

과 피해자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데이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폭행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과 판시 범죄사실이 병존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합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항문 성교의 시도 여부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화된 이유를 추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매우 짧은 순간 피고인이 실수로 항문에 삽입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는 위 행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잠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누군가가 삽입을 하여 성관계가 진행 중이었는데, 바로 다시 잠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를 인식하고도 피고인을 밀치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지만(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의아스러우나,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을 수도 있거나 또는 성관계를 하는 사람을 G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여서 그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알몸으로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와 애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G도 자신이 모텔방을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겹옷만을 벗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날 처음보는 피고인과의 만남에서 호감을 느꼈다고 볼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먼저 애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발적으로 여관에 들어갔다거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크게 소리를 쳐서 여관 주인이 방 문 앞에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피해자는 여관 주인이 문 앞에 왔을 때에는 아직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는데, 아침에 잠에서 깨어 보니 상의(윗옷, 민소매 티, 브래지어)는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자리의 바로 옆의 바닥에, 하의(치마, 스타킹, 팬티)는 피고인의 누워 있던 침대 자리의 피고인의 발끝 바로 옆 바닥에 각각 뭉텅이로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애무를 하면서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의 타당한 의복의 배치상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모양의 옷 뭉텅이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 사건 성관계 직전까지 마신 술의 양, 마신 속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주취 정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한 피해사실 내지 정황에 있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가 아니라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보이는 모순이나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닦할 근거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한 사실관계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더욱 실체에 부합한다 하겠다.

또한 성폭력 상황에 처한 피해자 평균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도움을 구하는 행위, 강간 피해 이후의 행동방식을 판단하고, 진술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의미와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은 뒤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저는 배를 수십 회 맞았고, 피고인이 과도로 저를 위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벗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섣뽕

믿기 어렵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기 싫다는 말을 못 하였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무섭다. 말을 들어도 때리고, 안 들어도 때리며, 피고인이 손만 들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 한 3주 맞아보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자신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침대에 옷을 벗고 누워있어 피고인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고 화를 낸 후 옷만 입고 모텔방을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한 것은 출근 시간에 임박하여 회사에 촉박하게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날 처음 만나 연락처도 모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를 출근시켜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고 모텔에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출근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므로 위 사실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2) 진술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합리적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판례들은 매우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실에 있던 A가 피해 사실을 알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소문을 낼 것이 염려되었고, 피고인이 거실에 친구가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오해를 염려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거실에 있던 A가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나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던 도중 누군가 방문을 확 열고 “나 잔다”는 말을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으며,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잠을 들었다는 진술 내용까지 감안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정신이 들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저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자로서의 진술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생리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이 칼로 손목을 자해하고 배에 칼을 들이대는 등 매우 협박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음에도 제2회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간 당시 피고인이 칼을 사용한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피해자 스스로 겁을 먹었다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피해자가 추행이나 강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과 계속 만남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없고, 상위권의 학업 성적에다가 성교육을 여러 번 ○○중학교 3학년생이던 피해자가 키스만으로 임신이 된다고 믿었다거나 그에 따른 임신중절 비용이 걱정되어 피고인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접견민원서신, 인터넷 서신이나 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서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견 대화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면서 성폭행범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서 주거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짧은 치마 같은 것을 입고 다니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공판기록 387쪽), 피해자는 ‘성폭행범도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몇 개월밖에 감옥에서 안 사는데, 피고인이 뭘 했다고 왜 못나오냐’라는 2012. 9. 4.자 접견민원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것은 의사에 반하여 추행 또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내용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면 피해자

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측을 피해 사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자신의 지인들이 있던 1번방도 아닌 이 사건 노래방의 카운터 앞 통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중 일부는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강간피해 이후 피해자는 증거보존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서둘러 몸을 씻고픈 욕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강간당시나 강간 이후 피해자의 몸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평균적 피해자 경험칙이 아닌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신빙성을 부정한 판단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행위 후 부엌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소변을 보면서 수차례 뒷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거를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라.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1)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다른 진술과의 일치(물증이 있거나 제3자의 진술)’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또한 피해자 진술이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역시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라고 보았다.

조사대상 판결문 중에서 ‘물증’에 근거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경찰신고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의 객관적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경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역전E예요 죽을거같아요 빨리좀와주세요 전화하면 안돼요 강릉역이요’라고 신고하고, 20:38경 다시 문자메시지로 ‘빨리와주세요 죽을것같아요’라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심각한 위협적 상황에 처해있었고, 경찰이 전화를 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더욱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보인다)로서 증인이 위 혈액채취 당시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똑바로 서 있지 못하여 수시로 벽에 몸을 기대거나 허리를 숙였고 이에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증인을 부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증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증인이 약간 비틀대기 시작했으며, 성관계를 할 때 증인이 다른 남자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증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갑자기 뛰쳐나가 도망치다가, 시흥시 J에 있는 다가구(원룸)주택에 올라가, 3층 계단의 창문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려, 그 충격으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손상,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두개골 내 기종, 좌측 경막외출혈, 안와 바닥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증상을 입었는데.....

변호인은 또한, 감금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서는 ‘그냥 끌려갔다’ 내지는 ‘아는 사람인지 몰라서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주저앉았는데 질질 끌려갔다’는 등으로 종전과 다르게 이야기 하였고,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의 부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감금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추가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건발

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급받은 진단서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금 및 강간 당시의 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러나 일부 물증이 피해자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경우에도 법원은 진술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와 범행 이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 반응이 각 음성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 자신의 질 안에서 끈적끈적한 게 느껴져 물로 씻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질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일부라도 삽입된 이상 강간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강간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액 음성 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도 볼 수 없다(피해자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질을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물로 씻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사정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기되었으니까 사정했겠죠’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추측하는 진술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은 피해자진술이 ‘제3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온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한 방법, 피고인의 성기의 특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 서로 일치한다.

2)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판단

이와 반대로 피해자 진술내용이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지

못할 때, 혹은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진단서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상당성 결여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와 폭행을 당한 직후 주차장에서 뛰어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 주차장으로 들어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주차장에서 뛰어나왔다는 것인데, 앞서 본 블랙박스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가 다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주차장에서 뛰어나오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불과 1분 48초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15분간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당했으며, 그 직후 승용차 밖에서 3분 정도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력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대로의 추행 행위 및 폭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해보더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E의 진술과 같이 항문성교를 당하였다면, 상당한 통증과 함께 상처가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관한 치료나 처지도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E도 이 법정에서 항문이 굉장히 아팠고 주변이 빨갛게 부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다음날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진단서, 소견서, 응급기록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에는 항문성교로 인한 상처를 치료·처치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강간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기 밑에 혹이 있다는 등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신체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신이 원래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에 관한 부분보다는, 아동·청소년으로서 기억할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 즉 '가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기를 먹다가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전' 등과 같은 진술 부분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퇴원기록 등 피해자의 가출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피해자 기억의 왜곡·착오 등을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범죄 일시를 신중하게 특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평소 성관계를 가질 때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 때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야 안에다 사정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진술 외적 요소

가.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대법원 판례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도5407 판결)고 하여,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명확한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판단자는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동기나 이유 혹은 피해자가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고경위나 경찰의 수사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위한 금전적 요구를 한 바 없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을 뿐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 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원했고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

는 자신도 미성년자로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잘못이 있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7세의 어린이고,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발생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삽입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오면서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도 주는 등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친구인 M 등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위 M 등을 만나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장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고소 취하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역으로 고소 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거나 성매매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으며, 성매매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피해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술을 한 경우 진술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의 핵심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방 종업원과 손님으로 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 직후 진술부터 세 차례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허위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 중 니스흡입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 동기나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근거로 활용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결정되어진 진술신빙성 판단을 보완해주는 부가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합의금 요구가 없어 진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이므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범죄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특수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게재될 경위도 찾기 어려우며,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에 떨면서 피고인들과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낮 12시경 피해자의 집을 나간 후 친구인 A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 달라고 한 뒤 다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가 A가 온 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 집에 출동하였고, 그날 오후 5시 22분경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통해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K의 진술서 기재 등은 K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H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합의금 등 금원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C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감정이나 분쟁도 없었던 점... ④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정황이 인정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다수의 판결문에서 이와 관련된 판단근거가 언급되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태도’,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말하는 태도’,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 태도’, ‘진술 태도의 진지함’,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운 태도’ 등이 자주 언급되는 판단근거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진술과정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아니면 직접 경험 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A의 강간, 추행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의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나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증언한 바 있는데, 당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직접 관찰해 본 결과, 피해자의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변명과 증인 G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당시 상황이나 언행에 대한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자의 유도에 기한 진술이 아닌 점,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의 진지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일관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판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옷걸이에 묶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교할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직후 피해자가 취한 언동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 경우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거나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교정하여 답변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잠에서 깬 적이 '자주'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주는 모르겠고, 그 때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나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라고 대답하거나, 2005. 9.경 추석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뿌리쳤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피해 정도를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대답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의 일반적 경험칙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의 경우 피해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다소 적극적이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F은 언니인 피해자 E보다 더 어린 나이일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온 점, 피해자 E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태도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다.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판례는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노182 판결 등)”고 하여, 신빙성판단에 있어 진술의 진실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근거임을 밝힌 바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진술특징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발견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범행 과정의 피고인과 피해자 간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고(증거기록 203면,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서 막 저한테 입에다 갖다 댔어요.” 등), 피고인의 말투를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으며(증거기록 208면, “그래서 아빠가 ‘알겠어’ 그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등), 범행의 맥락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독특한 정보(증거기록 205면, “아빠가 해가지고 이상한 하얀 색깔 같은 거 그거 입에다가 놔 가지고 제가 수건에 뒀었어요”, 증거 기록 215면, “고추를) 계속 흔든 다음에”)를 포함하고 있고, 여분의 세부정보,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확하게 진술한 정보, 주관적 인지, 자발적 수정(첨가), 기억부족의 인정, 자신의 진술에 대한 의심, 가해자에 대한 용서 등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입은 바로 그날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시 음주량,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정치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재차 삽입이 있었다는 점 등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후에도 피고인에게 기사나 대나무 통을 준 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재차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 사실 되게 잘 한다 조여 볼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특별히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이 법정에서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만을 주장하였다).....

라.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피해자의 주변사람이나 진술조력인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여지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반대로 그러한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 역시 많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는 피해자의 시동생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계속 동석하였던 F가 경찰에서 증거가 없다고 하자 증거를 갖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인데, 이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의 반복적인 질문 등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강간 진술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L 소속 교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일시나 장소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러 번의 진술 내용 사이에 그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스스로 만들어 냈다거나 수사기관 종사자, 부모, 법률조력인 등 특정인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핵심 부분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해자는 친족 성폭력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피해 사실을 바로 폭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피해사실의 폭로과정이 자발적이었고, 주변 사람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강요한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진술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다움, 피해자의 저항정도, 이전 성관계, 신고 시기

가. 피해자다움

‘피해자다움’,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위’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김선희, 2019:12; 이수진, 2019:44).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피해자다움’, 즉 “진짜 성폭력 피해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태도 혹은 행위란,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사건 발생 즉시 경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절망적이거나 우는 등 감정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고 일상이 파괴되며 주눅 들어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모습을 포함한다(이선미, 박용철, 2020:114; 정대현, 2018:94; 최성호, 2019:393).

아래 인용된 판결문의 내용은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혹은 피해 이후 행동과 진술시 태도를 전형적인 피해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부정한 사례들에 해당된다. 인용된 부분은 판결문의 일부분으로 연구자는 사건 전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판단자가 적시한 신빙성 판단근거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자가 진짜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 즉 ‘피해자다움’에의 부합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관찰되는 경우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하면서 남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야 안에다 싸도 돼?”라고 물어 피해자가 “안에다 싸지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임신의 위험을 생각하여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상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억울하였으며, 허리가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진술하는 동안 자주 웃음을 지었는데, 이는 표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강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노래방에 가고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두 번이나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2시간 정도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온 피자를 피고인과 나눠 먹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하였다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에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나온 후 평상시와 똑같았고, 울거나 화난 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B의 추궁으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는 친구나 가족, 선생님, 수사기관 등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재산상 피해인 절도 범행보다는 여성으로서의 감내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D 등에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어차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변소와 대응태도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성폭행 피해자의 통상적인 사후 대응조치라고는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위 절도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5. 5.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애완견(별명 “꿈이”)을 선물 받았고, 2015.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버스카드 충전비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응태도는 비록 수년간 피고인과 교제했던 사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해자를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평상

시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I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또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과 A가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도 강간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부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후에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추행을 당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거나 항의를 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된 'G' 건물 주차장까지 걸어가 자의로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탔으며,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 있는 주정차단속카메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21:48:45경 이 사건 음식점 부근에서 위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서로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당시 시각이 오후 10시경에 불과하였고,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직장 인근으로 피해자가 주변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가 약 10년 전부터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식은 깨어 있어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른바 '가수면 상태') 에 빠지는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급하게 마셔 술기운으로 인해 '가수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행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피해 여성의 대응 태도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 설령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의 애무 및 성교를 전후하여 술에 취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애무와 성교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답다’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특정한 성질이나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는 복잡적이며, 유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 개인의 연령이나 성격, 가치관 등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범죄 전후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으로 일반화하거나 정형화하기 힘들다. 더불어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처가 반드시 일관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으며, 사건 직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피해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같은 반응을 보이거나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피해자상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성인지감수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윤덕경, 김차연, 2015:98; 이선미, 박용철, 2020:177).

성폭력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밝은 표정을 짓거나 웃는 등의 행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며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행위, 피해 내용 진술 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를 보이지 않는 모습 등을 보일 때, ‘피해자다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진술신빙성을 의심받기도 하지만(김선희, 2019:11; 윤덕경, 김차연, 2015:82; 이명신, 양난미, 2012:163; 정도희, 2019:27; 허민숙, 2017:25; 허민숙, 2018:74), 전형적인 피해자 다음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다수의 판례가 발견되었다.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강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은 사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놀라고 당황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범죄를 당하고도 곧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에 동승하여 중앙 전철역까지 가게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촬영을 기피하지는 아니하고 있고, 일부 장면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 및 협박을 당하고 장기간 감금당하기까지 하여 체념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감금되고 약 11시간 정도 경과한 후 촬영된 점, 위 동영상은 극히 단시간 동안 촬영된 것으로서 이로써 판시 각 성관계 및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각 성관계 및 촬영에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팔에 한 문신이 달리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거나,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울면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자고 하였다’거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거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의 위 제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 앞 복도 부분을 촬영한 CCTV 사진에 의하면, 성관계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가볍게 툅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켜 빨리 자리를 떠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혀 더 큰 피해를 면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다소 친근한 언행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을 안심시켜 자리를 떠난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위와 같이 다소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도중 피고인과 장시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으며 피해 후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 피고인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이례적으로 다른 행동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① 피해자는 새벽에 인적이 드문 피해 장소에서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자신을 공격하는 생면부지의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고 자신을 죽이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굳게 믿고 있었다.... ③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억지로나마 피고인이 요구하는 데로 성관계에 응하면서 피고인을 추후 다시 만나 줄 것처럼 설득하여 자신의 살인을 의뢰한 사람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 G와 함께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옷음을 보이기도 하는 장면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특수강간을 당하는 중에 큰 소리를 지르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을 떠나면서 피고인들과 포옹을 하기도 하고 두고 온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시 찾기 위해 돌아오기도 하였으며 G의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G에게 이 사건 집단 성관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함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계속 거부하면 피고인들 일행과의 성관계가 지속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지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저항을 멈추자 피고인들 일행은 마음대로 집단 성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 일행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로지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포옹을 하였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기 때문에 G의 차를 타게 되었다. G의 차량을 타고 올 때에서야 정신을 차렸고 그 차량 안에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위의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일행의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및 피해자와 피고인들 일행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특수 강간 범행의 시간·장소, 피해자의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심리상태 및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 이 사건 관계적, 환경적, 기질적 제반사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들 일행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피고인들 일행의 유형력 행사에 맞서서 대항하였으나 결국 저항을 포기하고 순응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진 이상 중간간좌가 기수에 이르렀음이 분명하여,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두 번째 삽입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한 동의로 의제하거나 추단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클럽을 출입하며 처음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등 통상의 강간 피해자로서는 취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숙소에 혼자 있으면 계속 강간 사건이 생각나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클럽에 데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의 한 단면만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행실 및 인격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난을 가함과 아울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마저 탄핵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많았다.

....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후 행동은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요구로 신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당시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였고, “그래 나는, 알제? 내 진짜 프리한 거. 아무리 (성폭행을) 당해도 진짜 프리한 거”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또래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성의식과 생활태도를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

여 정신이 없었고 결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정에서 M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 M, 피해자가 아는 언니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M과 이성교제 중이어서 M의 친구인 피고인 A과도 어울리게 된 점과 **피해자의 성의식과 평소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태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은 채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 채팅 어플에 피고인을 만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남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등의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의 아동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특히 피해자는 편부가정에서 생활 하던 중 아버지가 2010년 9월경부터 혈관성 척수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부터는 할머니마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가족들의 보살핌이 붕괴된 상태에서 혼자 집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때이었으므로,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행동도 나름대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는 위 K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사는 동안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거나 힘을 내라는 내용 등의 편지를 다수 보내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에 위 편지의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엄마인 E과 함께 살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외에는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을 자신을 보호하여 주고 키워주는 아버지와 자신을 성폭행하는 범인으로 분리하여 아버지이자 범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과 증오의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지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적으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동시에 연민·애정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나이가 어린데다가 또래에 비하여도 비교적 미숙하였던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경험해 보지 못한 범죄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생긴 감정이거나,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 등 특수한 범죄 상황 하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종종 갖는 것으로 알려진 긍정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저항 및 폭행협박의 인정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해서는 아니되는 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 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저항이나 폭행·협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피고인의 집은 지하에 있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온 것이어서 그 주변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위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졌는데, 위 범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미처 구조를 요청할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해 장시간 동안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강요받아 심리적·육체적 저항 능력이 무력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보면, ‘아무런 감시행위나 유형력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진하여 가해자인 피고인과 16시간 이상을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화장실에 가면 같이 가고, 샤워할 때도 감시를 했다’, ‘당시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조금만 반항을 하면 죽을 것 같았다. 피고인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3분 가량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합의 하에 하자.”는 말에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3분 동안 입이 막혀 있고 턱 부근이 눌러 있어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상황이었는바,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과도로 위협하거나 옷가지를 태우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당시 매우 겁에 질렸으며, 집에 가기 위해 최대한 피고인의 신경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각 강간에 있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면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응하였고, 세 번째, 네 번째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전혀 표정이 없이 무표정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감금행위에 수반되었던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52kg의 작은 체구인 반면, 피고인 A는

키 187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이었고 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키 176cm, 몸무게 72kg의 건장한 체격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싫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이외에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손과 몸으로 누르는 정도만으로도 피해자가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피로감과 술기운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대처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초기에 몸을 비틀거나 발을 드는 등의 저항을 하다가 계속 저항하면 더 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저항을 포기한 채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으로 피고인들 일행의 행동에 순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순응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G와 헤어져 완전히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 피해자에게는 집단 성폭행에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심리상태 및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상황이 끝나 현장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 있던 G의 차량 안에서야 G에게 집단 성관계는 싫다는 취지로 말하여 약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이의 제기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진정한 의사라고 할 것이다. **비록 적극적으로 표시되지는 못 했지만 이 사건 집단 강간 범행 도중에도 몸을 꼬거나 발을 드는 등의 태도로 항의의사를 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이후 연락을 끊거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내어 보복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정도의 폭력을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둔부 좌상 등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벼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의 결과 어느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것인지는 당시 상황 등 여러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둔부 좌상,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처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의 경위, 방법, 부위 등과 피해자가 각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치하는 이상, 단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2. 6. 8. 피고인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고소장에서 “2011. 11. 16. 05:00~06: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신이 좀 들었을 때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술에 만취하여 기절해 자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상황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고 무서워 저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올라올 수 있냐는 등 성행위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혐오스럽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의 구체적 경위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속옷 상의를 스스로 벗은 사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후배위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일부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로 끌려 들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이후에 벌어진 정황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폭력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여,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낸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정신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모텔로 옮겨진 상태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몸에 힘도 없고 겁도 나고 당황스러운 데다가 그 상황에 대한 혐오감으로 인하여 계속 정신을 못 차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그 이후로도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야 할 상황인 데다가 정규직 채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공판기록 244쪽) 피고인을 심하게 비난하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과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2. 6.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판례는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진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집어넣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마저 위 용변 칸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흥기를 휴대하지 않았고 용변 칸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피해 여성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교 경험이 있는 **유흥주점종사자**로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 등에 순순히 응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용변 칸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다른 여자가 들어오거나 화장실 청소부가 청소를 위해 위 용변 칸 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감금행위로 인하여 이미 외포되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저항을 단념하고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여성이나 화장실 청소부에게 구조를 요청하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용변 칸 안에 갇힌 상태에서는 화장실 문의 잠금장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구조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구조요청 사실이 피고인에게 쉽게 발각되어 구조되기 전에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인 경우, 저항정도와 폭행협박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헛바닥을 내밀었어요.”, “소리도 못 지르게 했어요.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 남자 손이 꼭 누르니까 꼼짝달싹도 못 했죠”, “팔을 꼭 누르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 하는바, 위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그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꼭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7년 전에 신고하지 못한 성폭행 피해 경력이 있고 그 이후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증세를 겪고 있었던 점, 이 사건 3번의 행위가 있을 무렵 피해자는 남편이 일하러 나간 뒤 자신의 집에서 몸 상태도 좋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점 등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년 전 성폭력 피해 당시에도 자신의 피해 내용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겪은 이전의 경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거실이나 방문을 잠그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현관문이든 거실문이든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도 확실치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범행 인정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논거는, 이 사건이 결국 피고인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입이나 추행을 사전에 제대로 방어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D, E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피했다가 D이 깰 것을 염려하여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준 상황이 이례적이고, 구체적인 추행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여중생의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노골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특수한 환경이나

피해자가 그 이전에 음란 동영상을 접하고 주변 남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내용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나 모든 판례가 피해자의 경험칙에 입각하여 피해자 저항과 폭행·협박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례의 경우 혐의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꿈치로 가슴과 어깨를 눌렀다. 일어나려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 두 팔을 잡아 포개어서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뒤로 가서 성기를 항문에 넣었다”, “엄마가 속상해 하실 것 같아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계속 손을 잡고 힘으로 눌러서 도망갈 수는 없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안되지 않냐고, 지금 소개도 시켜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라고도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E를 때리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거부나 반항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이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는 사이일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불신하며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으로 연결되기도 하고(허민숙, 2017:7; Lonsway, 2010:136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며, 강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를 낮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Ben-David, & Schneider, 2005:387).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혹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 해서 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2008년경부터 약 3~4년 동안

약 5~6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에 의한 간음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그 이전에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경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을 다시 만난 후 약 한 달 동안 자주 강압적인 성관계를 갖기는 하였으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때때로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곧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약 1년 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곧 바로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강간 후에도 연인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성행위의 동의나 피해자의 성경력에 대한 해석 면에서도 분석 대상 판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진술신빙성을 논의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오기 전 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D, C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

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잠만 자고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들어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관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강간 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피해자가 가라오케에서부터 F모텔 610호에서 술을 마실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였거나 자발적으로 같은 모텔 607호에 투숙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가 다소 늦은 시간에 평소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피고인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위 편의점에서 기다린 후, 근무를 마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강간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사를 합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16살 가량 위로써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왔고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자신과 모텔에 함께 입실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것으로 볼 지가 충분한 점..... 입실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있었다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수차례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 신고 시기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법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 판결)

많은 판례는 피해사실의 신고 시기를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고가 피해 직후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피하여 OO오피스텔 4□□호로 뛰어 들어가 그 즉시 동거하는 지인들에게 어떤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당일 그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그와 같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가 피해시기로부터 상당 시간 흐른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그리고,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후적 관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쓰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 A를 직접 마중 나가 모텔방으로 데려온 점, A는 자신의 오빠 가족과 지인 B도 현장에 불렀고,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로부터 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비로소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A의 진술 내용이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또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당시의 행동이 사후적 관점에서 보아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인 태도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첫 강간 피해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학교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여자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강간 피해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적 수치심의 정도, 당시의 가정환경(피고인 부부는 가정폭력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고 돌아 피해자의 어머니인 H는 피해자를 예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이 가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피해자의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뒤에는 무릎을 꿇고 울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을 때는 보통 연인들처럼 잘해주기도 한 점,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행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소위 '을'로서 끌려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곧바로 문제 삼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는데, 그러던

중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이 발생하자 위 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2013년 추석 무렵에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계속 만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뒤늦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신 자신의 잘못된 행실 탓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친구들의 조언에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경험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합의를 고려하다가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G으로부터 “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밤새면서 니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 너가 많이 화가 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을 했고 될 수 있으면 정말 밖에서 좋게 해결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안될까”라며 합의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악경찰서 성폭력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합의를 고려하다가 피고인 및 G이 합의이행을 하지 않자 강서경찰서에 강간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원심판결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성추행 사실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2014. 5.경 피고인 부부가 다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성추행 피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D에게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학교 진로상담 교사 내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사실을 언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강간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고 카카오톡 게임 초대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뒤늦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수증할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 허위고소를 할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형사과에 갔을 때 성폭행 얘기가 나왔다.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닌 줄 알았는데 형사가 손가락을 넣는 것도 성폭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폭행도 같이 고소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위 진술 내용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 관계자나 경찰관에게 유사강간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것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손에 상처난 것과 옷이 찢어진 것에 관하여 약값 및 수리비 조로 2만 원을 주었다. 그 후 전화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미안하다.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고, 2012. 11. 20.경 누군가가 네이트온으로 연락을 하여 “50만 원을 주겠으니, 누드모텔을 하라.”는 제의를 하자, 갑자기 그 전의 이 사건 피해사실이 떠올라 힘들었고, 언니에게 상의한 결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증할 수 있어 고소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3절 | 분석결과 요약

제1절에서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실제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를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고려된 사정과 태도’와 ‘법원의 판단 태도에 반영된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원의 판단에 고려된 사정과 태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진술 번복 여부, 번복 경위), 명확성, 객관적 상당성(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합리성 등과 같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사정’, ② 성적 행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이나 피해 방지 행위의 유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 또는 피고인을 겁내지 않는 모습 등과 같은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협조하였는지 등과 같은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④ 성적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하였는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피해 직후에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등과 같은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연애 또는 호의적인 감정, 기존의 신체접촉 유무 등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신고·고소의 경위 등과 같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1)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을 경우(‘피해자 진술 자체의 사정’에 해당)에는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2) 피해자 진술의 부수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성, 특정성, 명확성 등이 부족한 경우(‘피해자 진술 자체의 사정’에 해당), 성적 행위 이전에 피해자의 저항이나 피해 방지 행위가 없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가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 또는 피고인을 겁내지 않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경우(‘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에 해당), 피해자가 성적 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에 대하여 동의 또는 협조한 경우(‘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에 해당), 피해자가 성적 행위 이후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친밀한 유지하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에 해당),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연애 또는 호의적인 감정이 보이거나 기존에 신체 접촉을 해온 경우(‘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해당)에는 그러한 사정만을 보고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인다. 법원은 2)의 경우에 해당하는 발견

된 사정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위나 이유, 그러한 사정에서의 제3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와의 관련성, 피해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 및 정황, 피해자의 평소 태도 및 업무특성 등과 같이 그러한 사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 및 그러한 사정과 관련된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태도에 반영된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이란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이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⁴²⁾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되는 기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

4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1에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 판단 태도를 보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는 성인지감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판례들을 보면, 동일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각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상급법원인 항소심 법원이나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다움에서 탈피하지 못한 원심 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급법원의 판단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하는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부분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⁴³⁾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를 통하여 법원으로써도 형사재판의 기본원칙과 성인지감수성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지나치게 성인지감수성을 강조됨으로써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인정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제2절에서는 271개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성인지감수성/젠더 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극히 정형화된 언어와 구조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판단자의 유무죄 판결과 진술신빙성 판단이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판결문 성폭력사건의 유무죄 판결이나 피해자·피고인 진술신빙성 판단 전체에 대한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판결문에 적시된 진술신빙성 판단의 각 요소를 세분화한 후, 각각의 판단요소별로 기술된 내용이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이 아닌 성폭력피해자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사례들을 충분히 제시하였다.

진술의 일관성

하급심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 많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범행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며, 이 경우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 성폭력피해자 경험칙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리고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진술일관성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1) 일부 판결은 피해자의 강간두려움과 공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진술의 피로감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다. 2) 오랫동안 성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술의 일관성이 부분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된 사례도 다수 있다. 3) 피해자들이 주취상태인 경우 일관된 진술이 어렵다는 점 역시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자주 언급되었다. 4)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혹은 장애인인 경우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법원은 1)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내용이 구체화되어 경찰, 검찰, 법정의 단계별로 진술내용이 늘어나고 구체화되는 경우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2) 핵심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여 신빙성을 의심하는 판례들 역시 존재하는데, 판단근거로 제시된 일부 논리는 성인지감수성 혹은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구체성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그 상황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내용의 구체성 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에는 일반적 피해자 경험칙에 대한 고려나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진술내용의 일관성 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진술내용의 구체성 면에서는 특히 성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준강간 특히 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 주취상태였던 경우 진술의 구체성을 부족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

진술의 합리성

진술내용의 합리성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판결문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행위 내용이나, 피해자의 행동방식 등을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칙과 경험칙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상황에 처한 피해자 평균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도움을 구하는 행위, 강간 피해 이후의 행동방식을 판단하고, 진술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보인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합리적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판례들은 매우 다양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다른 진술과의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대상 판결문 중에서 ‘물증’에 근거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경찰신고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및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등의 객관적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일부 물증이 피해자진술 내용을 뒷받침해주지 못할 경우에도 법원은 진술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피해자 진술내용이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지 못할 때, 혹은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진단서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없는 경우,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 상당성 결여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법원은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명확한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거나 성매매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으며, 성매매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피해자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진술을 한 경우 진술동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진술 동기나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근거로 활용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진술신빙성 판단을 보완해주는 부가적인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합의금 요구가 없어 진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이므로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태도’,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는 태도’,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 태도’, ‘진술 태도의 진지함’,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없이 자연스러운 태도’ 등이 자주 언급되는 판단근거이다. 또한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가 소극적이거나 대답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의 일반적 경험칙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부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진술의 진실성 및 신뢰성

법원은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판단근거로 언급한 사례 역시 다수 있었다.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인한 진술 오염 가능성

피해자의 주변사람이나 진술조력인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여지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반대로 그러한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 역시 많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판단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혹은 피해 이후 행동과 진술시 태도를 전형적인 피해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부정한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

반면,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다수의 판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많았다.

피해자 저항 및 폭행협박의 인정

분석 결과, 피해자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저항이나 폭행·협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판례는 피해자가 유혹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지며, 특히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인 경우, 저항 정도와 폭행협박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피해자의 경험칙에 입각하여 피해자 저항과 폭행·협박의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례의 경우 합의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한다.

가해자-피해자 관계/ 이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며, 강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를 낮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혹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 해서 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행위의 동의나 피해자의 성 경력에 대한 해석 면에서도 분석 대상 판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진술신빙성을 논의하고 있다.

신고 시기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

많은 판례는 피해사실의 신고 시기를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고가 피해 직후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신고가 피해시기로부터 상당 시간 흐른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그리고,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후적 관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경험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합의를 고려하다가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제 4 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

강은영 · 강민영 · 박지선

제4장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함의

본 연구는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과 성인지감수성 문제를 연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실험연구, 판례분석, 판결문분석의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약600명의 로스쿨학생 대상 실험연구를 통해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 및 사건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판단자의 범위는 형사사법기관 전체에 적용가능하다. 둘째, 8개의 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실제 법원의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성인지감수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셋째, 성폭력범죄 271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문에 나타난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당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다. 우선 실험연구는 국내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연구참여자의 연령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연구참여자의 약 70%(420명)가 2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대가 약 25%(141명)를 차지한다. 따라서, 20-30대 연구참여자가 95%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령의 효과를 전 연령대, 즉 40대 이상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향후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판결문은 통상 매우 정형화된 틀과 언어로 기술되고, 사건과 피해자, 피고인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근거와 판단요소를 해석함에 있어, 과도한 일반화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와 성폭력사건 실무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국외 관련제도를 부가적으로 소개하고 도입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제1절 | 실험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1.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해자-피고인 관계’, ‘판단자 성별’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을수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경우에 비해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판단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되어 왔던 진술일관성 외에(Lievore, 2004:3; Voogt 외, 2019:52),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판단자의 성별 등의 요인이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경우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다는 기존 연구(Ben-David & Schneider, 2005:387; Lonsway, 2010:1361)와 일맥상통하는 본 연구결과는, 성폭력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피해자 관계 및 그에 따른 편향된 시각이 미치는 영향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 유무죄 판단: ‘피해자 진술 일관성’, ‘판단자 성별’, ‘판단자 연령’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는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이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30대 이상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20대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같은 사건을 보고도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판단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피고인 처벌 수준: ‘피해자 진술 일관성’, ‘피해자다움’, ‘피해자-피고인 관계’, ‘판단자 성별’

피고인의 처벌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피해자다움’, 피해자-피고인 관계, 판단자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수록,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관계보다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판단자가 여성인 경우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무겁게 평가하였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도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피고인의 처벌수준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거 상호 합의된 성관계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판단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등의 요소가 성폭력 사건의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피해자 책임 판단: ‘판단자 성별’, ‘판단자 연령’

피해자의 책임 판단에는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낮게 판단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요소보다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성폭력 사건 발생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실무자 등에 의한 이차 피해의 위험성을 시사하며,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예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수진, 2019:52; 허민숙, 2018:74).

‘판단자의 성차별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고인 유무죄 판단, 피고인 처벌 수준, 피해자 책임

판단자의 성차별의식 및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낮게 판단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낮게 판단하고,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판단자의 성과 관련된 인식이나 태도가 피해자 진술신빙성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 등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구분 짓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편향된 시선을 보내는 성차별의식과,

강간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반영하는 강간 통념 수용도가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및 처벌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2.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요인

본 실험연구에서는 ‘피해자다움’ 부합 여부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와,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증언 시 보이는 감정표현이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러 차례 보고되어 왔다(Bollingmo, Wessel, Eilertsen, & Magnussen, 2008:30; Kaufmann, Drevland, Wessel, Overskeid, & Magnussen, 2003:22).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울거나 흐느끼며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더 높게 평가된 반면, 피해자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며 덩덤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낮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Bollingmo 외, 2008:33; Kaufmann 외, 2003:26). 주목할 점은, 경찰 수사관들 스스로는 피해자의 행동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감정 표현의 영향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Bollingmo 외, 2008:37).

피해자다움: ‘피고인 처벌 수준’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피고인을 더 엄중히 처벌하였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전형적인 반응에 근거하여(정대현, 2018:94; 허민숙, 2018:73)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처벌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법원에서 성폭력 등 사건 심리 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개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성인지감수성’의 관점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양한 범위의 감정을 경험하며, 이는 울거나

흐느끼는 등의 반응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차분하거나 무덤덤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등 다르게 표현된다(Winkel & Koppelarr, 1991:30).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성폭력 사건 판단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형적이고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감정이나 반응, 대처에 대한 고정관념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형사사법 기관 성폭력 처리 절차 및 판단 개선에 대한 함의

‘양가적 성차별의식’, ‘적대적 성차별의식’: ‘판단자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을 매개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 및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성폭력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판단자의 성별과 연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판단자가 남성이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양가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완전매개 효과는 피해자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이 판단자의 성별이나 연령 그 자체가 아니라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성차별적 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은 감정적이어서 중요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경쟁적 성역할분화나, 여성은 필요할 때 남성을 이용한다는 등의 적대적 이성애를 포함하는 적대적 성차별적 의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로 그 발생 원인을 돌린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등 이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사법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막고 궁극적으로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성 관련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태도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온정적 성차별의식’: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을 매개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판단자의 성별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판단자의 성별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남성일 때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아지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여성을 우대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높게 판단한다는 본 결과는, 여성의 감성적이고 세심한 특성을 강조하며 여성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특성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과거 전통적 성역할 구분을 강조하는 적대적 성차별적 의식에 주목해오다가 최근 일견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이나 호의의 형태로 보이나 보다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온정적 성차별의식에 대해 보다 주목하고, 그 성편향적 특성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강간통념 수용도’: ‘판단자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을 매개/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을 매개

강간 통념 수용도는 판단자의 연령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또 판단자 연령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판단자의 연령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지고,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강간 통념 수용도는 강간 피해자의 행실이나 사건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왜곡된 편견과 태도를 의미하므로(이석재, 1999:132; Lonsway & Fitzgerald, 1994:134), 이러한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유발했다는 등의 인식에 동의하여 실제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 및 피해자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높은 강간 통념 수용도는 피해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선을 통해 이차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거나 신고를 꺼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성폭력 재범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Peterson & Mulenhard, 2004:130).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을 매개/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을 매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과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 피해자 진술

일관성과 피고인 처벌수준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 진술일관성은 피고인 처벌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일수록 진술신빙성이 높아지고, 진술신빙성이 높아질수록 피고인 처벌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신문 시에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사 기법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과 법집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매개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피고인-피해자 관계와 피고인 유무죄 판단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되며, 피해자 진술신빙성이 낮게 평가될수록 피고인의 무죄 판단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결과는 국내 강간 사건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안면이 없을 때보다 서로 아는 관계일 때 피고인의 무죄 확정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결과(이선미, 박용철, 2020:166)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 유무죄 판단과 직결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인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라는 요소가 성폭력 사건 판단에서 가져올 수 있는 편향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이전 성관계 여부가 편견으로 작동하여 강간의 성립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되고(허민숙, 2018:78; Campbell 외, 2015:31),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원에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피해자상’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자 진술신빙성’: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 성별’과 ‘피해자 책임’을 모두 매개

피해자 진술신빙성은 피해자 진술일관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 성별과 피해

자 책임 사이에서 각각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진술신빙성을 각각 더 높게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피해자의 책임은 더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책임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받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4. 성폭력 사건 실무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판단자의 성차별의식이나 강간 통념 수용도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책임 판단, 피고인 유무죄 및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실험연구 결과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강간 사건의 성립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실무자들의 편견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관적 인상, 법관이나 배심원의 주관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부정당하고 배척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경찰의 강간 통념 수용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박지선, 김정희, 2011:91), 강간 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여기고, 피해자의 고통은 적게 평가하며, 가해자에게 낮은 양형판단을 했다는 결과는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성편향적 태도를 지양하고 강간 및 강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신문 지침 마련 및 관련 교육 진행,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본 실험연구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생각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판단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특성(성별, 연령)보다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에 대한 편향적 인식과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 증명력 판단 시 개별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양상이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적 고려’와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이나 성편향적 태도와 관련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 피해나 부당한 비인격적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 기관에서 조사관 등 실무자 및 배심원, 판사 등의 성차별의식에 대한 인지 및 개선 교육이 요구된다.

본 실험연구에서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유죄 판단이 약 91%인 반면, 남성일 경우 66%였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이처럼 유무죄 판단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기에는 적대적 성차별의식이나 강간 통념 수용도 등 태도에 의한 간접적 효과의 영향도 있으나 성별 자체의 직접 효과도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서 법관의 성별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면에서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형사사법 기관의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2절 | 사례연구 결과 나타난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 개선을 위한 함의

1.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가. 주요 판례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주요 판례들은, 법원은 기존에 대법원이 실시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용한 다음,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다. 주요 판례들이 전제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들은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과 유죄 판단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⁴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의 법리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⁴⁵⁾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낱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⁴⁶⁾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4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4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4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⁴⁷⁾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⁴⁸⁾

낯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⁴⁹⁾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4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48)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4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⁵⁰⁾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하급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술신빙성 판단의 쟁점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271개의 강간사건 하급심 판결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근거 및 요소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성인지감수성/젠더편향성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판결문들을 검토한 결과, 실제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전형화된 근거와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고인이 진술한 범죄행위 내용이나, 피해자의 행동방식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여러 논리칙과 경험칙을 적용하고 있다.

50)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진술 내적 요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진술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 진술의 내적요소를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1)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당시의 심리상태, 범행방법,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2)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그 상황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3)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4)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다른 진술과의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모순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으며, 이는 성폭력 사건 자체와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에서 기인된다. 성폭력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강간의 두려움과 공포, 수사기관에서의 반복적인 진술로 인해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특히 오랫동안 성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피해자는 모든 피해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렵고,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진술의 구체성이 부분적으로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강간범죄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나, 피해 당시 피해자가 주취상태인 경우 역시 많아 피해자 진술내용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 경우 판단자의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혹은 판단자가 판단근거로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을 적용하였는지,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경험칙)’을 고려하였는지에 따라 진술신빙성 판단이 상이해진다. 분석 결과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 진술이 부분적으로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처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진술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간간 특히 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 주취상태였던 경우 진술의 구체성을 부족하나, 그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상황에 처한 피해자 평균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저항 정도나 도움을 구하는 행위, 강간 피해 이후의 행동방식을 판단하

고, 진술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들도 다수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인 경우 진술내적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물증'에 근거하여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경찰신고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및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의 객관적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진술 내적 판단요소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그러나 심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강간의 두려움 등으로 이 사건 폭행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바, 당시 피해자의 이 같은 공포 및 흥분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 이라고 판단된다.
- 강간범행 당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인 여관의 정확한 호실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며...
-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감이나 피로감 등으로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일부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된 경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피해자에게 세부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모든 정황까지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계속 울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엽적인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감금하고 강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는 피해자

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기 싫다는 말을 못 하였다, 성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무섭다. 말을 들어도 때리고, 안 들어도 때리며, 피고인이 손만 들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 한 3주 맞아보면 무서워서 말을 듣게 된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상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데이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 폭행사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
- 이러한 점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수치심 등 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의 학년, 학기, 방학, 계절 및 특정 사건 등 특별한 경험을 기준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행 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다소 포괄적인 기재가 부득이하고...

반면 1) 핵심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거나,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 검찰, 법정의 단계별로 진술내용이 늘어나고 구체화되어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나, 2)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사건, 3)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합리적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판례, 4) 피해자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진단서 또는 제3자의 진술이 없어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사례 역시 있고, 그 일부는 판단자의 성인 지감수성 부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1) 성폭력피해자들이 수치심 등으로 성기삽입 피해를 진술하기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최초 강제추행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인 강간 피해에 대해 나중에야 진술하였다는 점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제시하거나, 2) 강간피해 이후 피해자는 증거보존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서둘러

몸을 씻고픈 욕구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강간당시나 강간 이후 피해자의 몸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피해 이후 성기를 씻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간피해자의 행동양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하며, 3) 아동청소년 피해자임에도 항문삽입이나 성기삽입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까지 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으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추행 사실만을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장 큰 가해행위를 먼저 진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 ...삽입, 간음 또는 이에 관한 특유의 경험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성행위 후 부엌에서 수도물을 틀어놓고 소변을 보면서 수차례 뒷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증거를 보존하려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 ‘아팠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위하여 어떤 준비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삽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어린 나이에다가 위와 같이 직접 그 장면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볼펜이나 소시지 등을 음부에 삽입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성기의 삽입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아팠다거나 피고인이 앞뒤로 왔다갔다했다는 등 진술은 통상 중학교 1학년 학생 수준의 성적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 반드시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진술 외적 요소에 대한 판단

법원은 1) 피해자가 무고할만한 명확한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경우 2)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가 거짓이 없는 경우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가 다방종업원이거나 성매매종사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있다. 3) 법원은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판단근거로 언급한 사례 역시 다수 있었다. 4) 피해자의 주변사람이나 진술조력인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여지를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반대로 그러한 오염의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 역시 많다.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진술외적 판단요소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방 종업원과 손님으로 두 번 만난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 피해자도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허위로 위와 같이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 역시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수사기관 종사자, 부모, 법률조력인 등 특정인의 유도나 암시에 따라 핵심 부분이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피해자다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을 가능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 다수의 판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이 많았다.

-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혀 더 큰 피해를 면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다소 친근한 언행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움 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위와 같이 다소 친근함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 이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거나 두 번째 삽입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행위에 대한 동의로 의제 하거나 추단할 수 없는 바....
-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슴과 성기를 빨았다’거나,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울면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자고 하였다’거나,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거나 만남을 거부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니, 피해자의 위 제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성의식과 평소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태도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강간범행을 당하고도 곧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몸을 씻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중앙 전철역까지 가게 된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혹은 피해 이후 행동과 진술시 태도를 전형적인 피해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술신빙성을

부정한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 아래는 성폭력 피해자가 그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밝은 표정을 짓거나 웃는 등의 행위, 음식을 먹는 행위, 가해자와 일상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전형적인 강간피해자와 상이함을 근거로 진술신빙성을 의심한 사례들이다.

- 당시 피고인이 “야 안에다 싸도 돼?”라고 물어 피해자가 “안에다 싸지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진술하는 동안 자주 웃음을 지었는데, 이는 모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 강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노래방에 가고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두 번이나 위력으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2시간 정도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온 피자를 피고인과 나눠 먹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해자는 B의 추궁으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는 친구나 가족, 선생님, 수사기관 등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절도 범행보다는 여성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D 등에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위 변소와 대응태도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성폭행 피해자의 통상적인 사후 대응조치라고는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강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해자를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서로 손을 잡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저항 및 폭행협박의 인정

일부 사례의 경우 혐의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많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경험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저항이나 폭행·협박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판례는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지며, 특히 피해자가 이전에도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인 경우, 저항정도와 폭행협박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해 장시간 동안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강요받아 심리적·육체적 저항 능력이 무력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보면...
- 비록 적극적으로 표시되지는 못 했지만 이 사건 집단 강간 범행 도중에도 몸을 꼬거나 발을 드는 등의 태도로 항의의사를 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피해자는 7년 전에 신고하지 못한 성폭행 피해 경험이 있고 그 이후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적 증세를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특수한 환경이나 피해자가 그 이전에 음란 동영상을 접하고 주변 남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 내용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피해자 관계/이전 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람들은 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며, 강간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정도를 낮게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도 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혹은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 해서 강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성행위의 동의나 피해자의 성경

력에 대한 해석 면에서도 분석 대상 판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진술신빙성을 논의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자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때때로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약 1년 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 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곧 바로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강간 후에도 연인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에 대한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있었다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나이트클럽을 수차례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 동침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신고 시기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

많은 판례는 피해사실의 신고 시기를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데, 신고가 피해 직후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신고가 피해시기로부터 상당 시간 흐른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판례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그리고,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후적 관점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경험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는 합의를 고려하다가 합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 학교 친구들이나 형편이 어려웠던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극도로 수치스러운 뿐 아니

라 난폭한 성질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여자 형제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행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또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당시의 행동이 사후적 관점에서 보아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인 태도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합의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관악경찰서 성폭력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합의를 고려하다가 피고인 및 G이 합의이행을 하지 않자 강서경찰서에 강간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진술내적요소와 진술외적요소,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요소(피해자다움, 저항정도, 이전 성경력, 신고시기 등)을 판단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관점에서 이러한 판단요소의 적용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대체로 합리적 일반인의 경험칙보다는 성폭력피해자의 특수한 사정과 경험칙을 고려하여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판결문의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 등에 기반한 판단들이 적시되어있었다. 해당 사건의 유무죄판결이나 양형과 무관하게, 이러한 판단들이 판결문에 적시되는 것은 아직까지 일부 판사의 성인지감수성을 의심하게 한다.

3. 피해자 진술신빙성의 논증과 성인지감수성의 적용

가. 법원의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의 논증 구조 및 ‘성인지감수성’ 적용 단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논증 구조

앞에서 살펴본 법리로 인하여, 법원은 먼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주장하거나 법원이 다른 증거들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되는지를 논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수정, 신아름, 2020:22-23).

특히 유죄 인정여부가 다투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등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은 주로 피고인이 제시한 정황들에 관하여 그러한 정황이 과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이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논증하게 된다.

‘성인지감수성’ 적용 단계

법원의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논증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된다. 즉,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에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고정관념에 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이유가 되었던 정황에 관하여, ‘성인지감수성’을 유지한 채 조금 더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하여도 과연 그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 판례들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구조의 논증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정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적용하여 하급심 또는 피고인이 주장한 고정관념을 깨는 판단을 하였다.

나. ‘성인지감수성’의 구체적 기준 제시 및 적용의 어려움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그 판결은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나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김수정, 신아름, 2020:8), 그 판결의 내용에 의하여 특정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주요 판례들에서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에서의 논리도,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이라는 점에서 경험칙라고 볼 정도로 모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기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다움’을 강조하였던 고정관념의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배척되어야 할 논리는 아니고, 당연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며,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법원의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

따라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던 기존의 관념들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김수정, 신아름, 2020:49),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더라도, 그와 함께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강조되기 이전에 ‘피해자다움’을 강조한 관념들에 의한 판례가 오랜 기간 축적되었던 만큼, 기존의 관념들을 깨는 새로운 논리를 적용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증 과정을 판결이유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성폭력 사건 심리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나 관점라고 본다면, 법원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이 자세나 관점을 넘어 주관적인 느낌으로(김수정, 신아름, 2020:32-3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판결이유에서 충분한 논증 과정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례 이후의 주요 판례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구체성이나 일관성 또는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 진술의 부수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성, 특정성, 명확성 등이 부족한 경우, 또는 성적 행위 이전의 정황, 성적 행위 당시의 정황, 성적 행위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신고·고소의 경위 등에 다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경위나 이유, 그러한 사정에서의 제3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진술 전체와의 관련성, 피해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 및 정황, 피해자의 평소 태도 및 업무특성 등과 같이 그러한 사정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별한 사정 및 그러한 사정과 관련된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이 피해사실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성인지감수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인데, 주요 판례의 대부분이 상급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하는 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요 판례들에서 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단에서 적용한 논리도,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논리이지, 모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오랜 기간 판례로 축적된 기존 관념에 익숙해진 피고인과 변호인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나 ‘성인지감수성’을 근거로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서, 판결이유에서 충분한 논증 과정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국외 관련제도의 함의점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진술신빙성 판단이란, 일반화하거나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일반인 경험칙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형적인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폭력피해자의 반응은 연령, 성격, 가치관 등 개인적 특성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범죄 전후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복합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이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건 직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변화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우에도 성폭력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은 매우 적어, 영국의 형사지방법원 절차규칙과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과 함의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국의 ‘형사지방법원 절차규칙’

영국의 ‘형사지방법원 절차규칙(the Crown Court Compendium)’에는 성폭력범죄의 사실관계 판단시, 법관이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⁵¹⁾ 전형적 피해자다움에 근거한 판결에 대한 경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성폭력피해자 마다 성범죄에 반응방식이 상이하고, 전형적인 반응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성폭력 피해 이후 즉시 신고하는 피해자도 있지만, 수치심이나 충격 등으로 신고시점이 늦은 피해자 역시 존재한다. 3)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반드시 무고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19.; 이선미, 박용철, 2020:33-34 재인용)

또한 영국 형사지방법원에서는 배심원들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설명 예시 14개를 배포하는데(이선미, 박용철, 2020:36-43), 이는 일종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지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재판이나, 법원 내부 지침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 강간에 대한 잘못된 가정들

51)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rape-and-sexual-offences-chapter-13-hearsay>

2.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3. 피해자 신고가 지연된 경우
4.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경우
5.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경우
6. 진술시 피해자가 아무런 고통이나 동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7. 진술시 감정적 동요나 고통을 표현하는 경우
8. 피해자가 피해당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
9. 피해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경우
10.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전 성관계 여부
11. 피해당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경우
12. 폭행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 경우
13. 피고인이 피해자 외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였던 경우
14. 피고인이 동성애자인 경우

위 자료의 요지는 첫째, 피해자는 ① 자신의 진술의 일관성, ② 법정 진술시 삼정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둘째, 피고인은 ① 신고 지연, ② 증거제출시에야 신고, ③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④ 피해자가 법정에서 감정과 고통을 호소하지 않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자 한다. 셋째, 피고인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근거로 ① 피해자 복장의 노출성, ② 피해자가 제3자와 같이 있었고,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③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④ 피해 직전까지 동의한 성적접촉이었다는 점, ⑤ 강제, 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 흔적 없음을 주장한다. 넷째, 피고인은 ① 자신은 이미 지속적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② 자신의 성적취향이 다름을 언급한다(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2019.; 이선미, 박용철, 2020:35 재인용).

강간피해자보호법

학계 및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체계에 만연해있는 남성중심적, 성차별적 편견을 비판하고,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대책으로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해자 참여권 보장, 전문가 참여제도,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범죄피해자번호인

제도,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등이 있으며, 2018년 제8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금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로 형사소송 절차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윤지영, 2018:176),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대한 논의가 부각된 바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들이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성적생활을 공개를 방지하는데 있고, 그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에 대한 신문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재석은 우리나라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를 배려하려는 의지도 있으나, 신문의 내용 및 방식 면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사생활침해가 문제시 되는 사안의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이재석 2016:37-38), 2차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강간피해자보호법은 본 연구의 주제인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한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및 사생활침해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도입가능성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법관에 따른 편차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증인신문 제한의 주요 기준인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에 관한 증거능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지휘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이재석 2016:38)

1. 국내문헌

- Ulanbek Kyzy, Kymbat (2020). The Importance of Having Female Judges in Court.
국내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 강선미 (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고재홍 ·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1): 87-105.
- 공영호 (2016).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홍익법학*, 17(3): 451-473.
- 공정식 · 류경희 (2017). 아동과 지적 장애인 범죄피해 진술의 신빙성 평가기준 - 국내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1-24.
- 곽연희 · 정원철 (2018).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4: 51-73.
- 권순민 (2013).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1): 184-222.
- 권오걸 (2012). 진술증거의 신빙성과 Scan기법. *법학논고* 40(-): 629-656.
- 권희경 (2018). 성인지감수성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8(6): 94-112.
- 권희경 · 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민정 · 권인숙 ·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폭력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5(3), 117-139.
- 김민희 · 이승진 (2019).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신빙성 판단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3): 272-302.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

심리학회지:사회및성격, 21, 57-73.

-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27: 249-268.
- 김선희 (2019). 성범죄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이란 있는가?: 좁은 의미의 피해자다움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여성학논집*, 36(1), 3-25.
- 김성룡 · 김현조 (2013). 제2차 피해자화와 관련한 독일의 최근 논의의 시사. *被害者學研究* 21(1): 245-264.
- 김성현 · 임광현 · 성현준 · 성나경 · 김성희 · 김광수 · 이수정 (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8(4), 3-36.
- 김수정, 신아름 (2020). ‘성인지감수성’ 법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이후 판결계의 분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2017-2019 젠더 판례 다시읽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 김신영 (2010). 성폭력 피해자의 이차 희생 실태에 관한 질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양희 ·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용화 (2006). 성 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평등 실현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우석 (2018). 남성 스포츠지도자의 윤리적가치관이 성인지감수성 및 성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55-67.
- 김은지 ·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71-183.
- 김은하 · 김지수 · 박한솔 · 김도연 ·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재엽 · 이순호 · 최지현 (2011). 성인남성의 음란물 집착, 강간통념 수용과 성폭력 가해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 65-92.
- 김재엽 · 최지현. (2009). 성폭력 경험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 30(2): 231-247.
- 김정란 · 전해숙 (2006).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직무만족 및 경력개발 요구에 대한 연구. *인문학총론*, 11(2): 283-301.
- 김정혜 (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종률 (2010). 진술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2): 185-201.
- 김지현 (2018). 배심원의 성별과 피해아동의 연령이 성범죄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태명 (2018).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 간음·추행죄의 도입. *법학연구*, 57: 137-163.
- 김택수 (2009).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위강화. *형사정책연구* 79(-): 165-190.
- 김한균 (2018). 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서울법학*, 26(3): 259-29.
- 김현정 (2010).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신빙성 평가도구의 상대적 유용성 비교. *국내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나윤경·노주희 (2013).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연구. *여성학논집*, 30(2):169-20.
- 도미향 (2015).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전업주부와 직장인의 성인지력과 양성평등의식 및 여성 친화적 직장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3):543-561.
- 문영화 (2019).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민사소송*, 23(3), 263-305.
- 박경미 (2012). 성 인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전문대학생의 이성관계형성 자기효능감과 양성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미숙 (2010).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22-39.
- 박상기 (2016). 성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독일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被害者學研究* 24(1): 197-219.
- 박용철 (2009). 논문 : 미국법상 성격증거배제법칙과 그 예외로서의 강간피해자 보호법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被害者學研究* 17(2): 171-192.
- 박지선·강상훈 (2013). 성범죄 피해 아동의 기억력 및 증언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被害者學研究* 21(1): 163-189.
- 박지선·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박지선·박인선 (2011).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간 범죄자의 표상: 실제 국내 강간 범죄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362-371.

- 박찬걸 (2018). 업무상 위력 성폭력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9(4): 87-115.
- 박형민 외 (2019).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8)」.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현일(Park, Whon-il) (2019). Gender sensitivity. *글로벌기업법무리뷰*, 12(1): 253-258.
- 배수희 · 손승영. (2016).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26(1): 93-124.
- 배화정 (2018). 젠더 거버넌스 실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 연구. 국내박사학위청구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변혜정 (2008).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4권 제3호, 한국여성학회, 2008.
- 서운정 ·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60.
- 서혜진 (2018). 발표문 사례를 통해 본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 *법학연구*, 56: 173-188.
- 성유리 (2019).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의 확률적 의미.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송효진 (2018).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통한 교사의 성인지 역량 강화 토론.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113-118.
- 신기숙 (2011). 성폭력 피해아동의 피해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1255-1287.
- 신의진 (2010). 아동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정신의학적 지원.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173-178.
- 신의진 · 오태성 · 이영준 · 송원영 · 이경숙 · 유은희 (2005). 성범죄 청소년의 정신사회적 특징: 일반범죄 청소년과의 비교.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9(1), 39-52.
- 안경옥 (2015).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 방안. *경희법학*, 50: 205-231.
- 안상수 · 김금미 (2008).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299-324.
- 안상수 · 김혜숙 ·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안상수 · 백영주 · 김인순 · 김혜숙 ·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 타당화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7, 2-204.
- 여성가족부 (2015).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오기두 (2013).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조사(상). *저스티스* (138): 275-305.
- 오현규·김화연·박성민 (2016). 한국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 행정논집*, 28(2): 307-328.
- 오혜령 (2018). 권력형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가톨릭평론*, 15: 34-46.
- 유재두·송병호 (2009). 성범죄자와 일반인의 강간통념 비교 연구.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18: 134-165.
- 윤경희·양문승·장일식 (2019).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과 성평등 차이분석. *경찰학논총*, 14(4): 9-37.
- 윤덕경·김차연 (2015).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7(1): 73-107.
- 윤병해·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윤지영 (2013).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윤지영 (2018).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형사절차적 개선방안 모색: 피해자의 성적 이력 사용 제한 및 역고소 남용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0(1), 175-202.
- 이건호·강혜자 (2009).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3-40.
- 이남연 (2012). 兒童陳述의 信憑性 向上을 위한 搜查實務에 관한 研究.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명신·양난미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49-197.
- 이미경 (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국내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23(2), 43-75.
- _____ (2018). # 미투 (MeToo) 운동을 통해 본 법과 현실의 괴리. *경제와 사회*, 120, 12-35.

- 이미선 (2018).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 67-83.
- 이미선 · 조은경 (2015). 경찰의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한국경찰연구* 14(4): 377-402.
- 이미정 (2013).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 변화순 ·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정 · 정수연 · 양혜린 (2018). 「성폭력·가정폭력 남성피해자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3, 131-148.
- 이석재 ·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선미 · 박용철 (2020). 「성폭력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경험칙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02): 1-232.
- 이성기 (2019). 스포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서 '성인지감수성'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2(2), 105-129.
- 이수정 (2009). 아동 대상 성범죄 조사절차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진술타당성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의 형사사법적 활용가능성. *한국경찰연구* 8(3): 141-172.
- _____ (2010). 아동 성폭력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분석도구들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05-116.
- _____ (2011). 연구논문 :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5(1): 111-138.
- 이수정 · 유진옥 (2010). 지적장애인 성폭력피해자의 진술특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찰연구* 9(2): 161-184.
- 이수진 (2019).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이해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0(3): 35-62.
- 이승준 (2008).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본 경찰수사에 관한

- 소고. *법학연구*, 18, 295-314.
- 이영란 · 김정미 · 최소은 (2013).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 24(1): 40-50.
- 이유진 · 윤옥경 (2013). 아동 ·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교정담론*, 7(1): 165-190.
- 이윤정 · 조은경 (2014).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의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평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8(4): 71-89.
- 이재석 (2016).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05): 1-322.
- 이정원 ·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이지혜 · 박우현 ·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혜경 (2018). 젠더 감수성의 이해와 간호교육. *한국간호교육학회 학술대회*, 6-16.
- 이혜정 · 오선영 · 김은심 (2018). 예비유아교사의 성인지감수성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69-194.
- 이희경 (2013). 일반 논문 :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被害者學研究* 21(2): 215-251.
- 장용언 · 권오정 (2019).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1.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3(1), 235-263.
- 장응혁 (2016).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조사. 국내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전길양 · 신경아 · 이남희 · 김은희 · 조혜령 · 허민숙 (2015). 「성인지 교육의 효율적인 기반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정대현 (2018). 피해자다움을 왜곡한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의 부당성, *여성학논집*, 35(2), 87-112.
- 정도희 (2019).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 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2(2), 7-41.
- 정수정 · 박연주 (2018).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고찰.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6): 571-585.
- 정재원 · 이은아 (2018).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여성학 교양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5): 11-35.
- 정해숙 (2004). 「공무원의성인지력향상훈련실태및발전방안」, 서울 여성정책국 정책총괄과.
- 조상제 (2014). 독일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6(1): 283-302.
- 조성자 · 한완수 (2019). 청년 및 대학생의 Sexuality인식 및 성역할 관련 태도와 데이트 폭력성간의 관계: 젠더감수성 조절효과. *사회복지경영연구*, 6(2), 345-368.
-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타당도 분석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_____ (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被害者學研究* 18(2): 47-60.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에 대한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9-59.
- 최성호 (2019). 피해자다움을 위한 변론: 왜 우리는 성범죄 재판에서 고소인의 피해자다움을 물어야 하는가?. *법철학연구*, 22(1), 381-456.
- 최영미 · 정현용 (2020). 대학생이 인식하는 성인지감수성 실태 분석. *교육연구*, 34(2): 65-89.
- 최은경 (2019).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은하 (2015). 성적 자기결정권과 최협의의 폭행, 협박개념의 위헌성-성적 강요죄 (독일형법 제 177 조) 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23(3): 121-144.
- 최혜영 · 안수연 · 장혜진 · 정수진 · 백승경 · 이상기 · 이용문 (2015). 약물관련 성범죄 사건 유형 분석 및 검출 약물 경향. *약학회지*, 59: 230-234.
- 하경해 (2018). 청소년의 부모 · 또래요인, 인터넷음란물 접촉, 성인지감수성 간의 관계 및 성교육의 조절효과. 국내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한유화 · 박광배 (2014). 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5(3): 115-135.

- 허광준 (2018). 미투 운동 창시자 티라나버크는 무슨 말을 했는가?.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707> (최종검색일: 2020.6.24.).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한국여성학*, 34(4), 69-97.
- 허선주·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 *被害者學研究* 20(1): 381-415.
- 허창수 (2006). 성(gender)인지 관점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제언. *교육과정연구*, 24(4): 55-81.
- 홍유진·김시엽 (2017).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진술의 확보와 분석에서의 개입을 중심으로 -. *法學研究* 25(4): 285-320.

2. 국외문헌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
- Anson, D.A., Golding, S.L. & Gully, K.J. (1993).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Law Hum Behav* 17, 331-341 .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gany, J. J. & Milburn, M. A. (2002).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exual harassment: Authoritarianism, hostile sexism, and rape myth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3(2), 119-126.
- Ben-David, S., & Schneider, O. (2005). Rape perceptions, gender role attitudes, and victim-perpetrator acquaintance. *Sex Roles*, 53(5-6), 385-399.

- Bollingmo, G. C., Wessel, E. O., Eilertsen, D. E., & Magnussen, S. (2008). Credibility of the emotional witness: A study of ratings by police investigators. *Psychology, Crime & Law*, 14(1), 29-40.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mpbell, Bradley A. & Menaker, Tasha A. & King, William R., (2015). The determination of victim credibility by adult and juvenile sexual assault investigato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lsevier, vol. 43(1), pages 29-39.
- Candida L. Saunders (2012). The Truth, The Half-Truth, and Nothing Like the Truth: Reconceptualizing False Allegations of Rape,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2(6), November 2012, Pages 1152-1171.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_____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 & Annetje, B.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63.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perspective (2nd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rshkowitz, I., Fisher, S., Lamb, M. E., & Horowitz, D. (2007). Improving credibility assessment in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The role of the NICHD investigative interview protocol. *Child Abuse & Neglect*, 31(2), 99-110.
- Kaufmann, G., Drevland, G. C. B., Wessel, E., Overskeid, G., & Magnussen, S.

- (2003).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 Displayed emotions and witness credibilit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1), 21-34.
- Lievore, D. (2004). 「Victim credibility in adult sexual assault cases,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288」.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133-164.
- Lonsway, K. A. (2010). Trying to move the elephant in the living room: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false rape reports. *Violence against women*, 16(12), 1356-1371.
- McMahon, S., & Farmer, G. L. (2011). An updated measure for assessing subtle rape myths. *Social Work Research*, 35(2), 71-81.
- Parker AD, Brown J. (2000). Detection of deception: Statement Validity Analysis as a means of determining truthfulness or falsity of rape allegations. *Leg. Crim. Psychol.* 2000; 5(2): 237-259.
- Peterson, Z. D. & Muehlenhard, C. L. (2004). Was it rape? The function of women's rape myth acceptance and definitions of sex in labeling their own experiences. *Sex Roles*, 51, 129-144.
- Purna Sen(2019). What will it take? Promoting cultural change to end sexual harassment.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9/09/discussion-paper-what-will-it-take-promoting-cultural-change-to-end-sexual-harassment>. (최종검색일: 2020.06.29.)
- Rahmi, E., & Sudarti, E. (2019). STATE PROTECTION UPON ADOLESCENT VICTIM OF INCEST RAPE THROUGH GENDER LENS. *Diponegoro Law Review*, 4(1), 89-104. <https://doi.org/10.14710/dilrev.4.1.2019.89-104>.
- Sleath E, Bull R. (2017). Police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the impact on case decision making: A systematic review. *Aggress. Violent Behav.* 2017; 34: 102-112.
- Smith, O., & Skinner, T. (2017). How rape myths are used and challenged in

- rape and sexual assault trials. *Social & Legal Studies*, 26(4), 441-466.
- St. George, S., & Spohn, C. (2020). Liberating Discretion: The Effect of Rape Myth Factors on Prosecutors' Decisions to Charge Suspects in Penetrative and Non-Penetrative Sex Offenses. *Justice Quarterly*. <https://doi.org/10.1080/07418825.2018.1529251>
- UNDP Gender Equality Seal. Principles of Gender-Sensitive Communication. initiative<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AZRfMO7rWmEJ:https://www.undp.org/content/dam/jamaica/docs/gender/JM-AUG-29-UNDP%2520Gender%2520Seal-Principles%2520of%2520gender-sensitive%2520communications.pdf+&cd=1&hl=ko&ct=clnk&gl=kr>. (최종 검색일:2020.06.29.)
- Viki, G. T., Abrams, D., & Masser, B. (2004). Evaluating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sexism in perpetrator blame and recommended sentence length. *Law and Human Behavior*, 28(3), 295-303.
- Voogt, A., Klettke, B., & Crossman, A. (2019). Measurement of victim credibility in child sexual assault cases: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20(1), 51-66.
- Wang LH, Hung YY, Chow PC, et al. (2019). Credibility Judgment Predictors for Child Sexual Abuse Reports in Forensic Psychiatric Evaluations. *Psychiatry Investig*. 2019;16(2):139-144. doi:10.30773/pi.2018.12.03.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 Winkel, F. W., & Koppelaar, L. (1991). Rape victims' style of self-presentation and secondary victimization by the environment: An experi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29-40.

[판례]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6248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9도821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92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47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43, 2019노454(병합), 2019전노44(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7. 선고 2018고합13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노2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노6057 판결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Abstract



Judgment and improvement pla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Kang, Eun-Young · Kang, Min-Young · Park, Ji-Sun

Chapter 1 Overview of research

- The ability to prove the victim's statement on the criminal fact is the core issue in judging guilty or not in sexual violence cases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case of which major contents are sexual contact of each individual.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how and in which manner rules of experience based on gender sensitivity are applied to the ruling of sexual violence cases.

Chapter 2 Experimental research

☐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Survey contents and structure
 - Investigates how different the judgment of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nd punishment of the accused, judging guilty or not, and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are according to 12 conditions (2 x 2 x 3) which consist of case related 3 factors (whether victim's statements are consistent, whether the victim conforms to the stereotype of the

'genuine' victim, and whether there existed the prior sexual relation between the accused-victim).

-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people's attitude of sex on the judgment of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punishment of the accused, and responsibility of victim by measuring the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with the sex and age of people together.
- How to collect the data
 - The data was collected from 600 law school students nationwide for about 2 weeks from September 8 to September 22, 2020.

□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ase and people related factors

- Case related factors
 - The research participants of which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is higher judged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to be high than the research participants with lower condition, and showed the higher rate that judges the accused to be guilty and judged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ould be more serious.
 -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se victim conformed to the stereotype of the 'genuine' victim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judged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ould be more serious than the research participants whose victim did not conform to the stereotype of the 'genuine' victim.
 - When the victim and the accused were strangers,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was judged to be higher than the case in which they were lovers, and the level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evaluated to be more serious. In the case in which lovers with a prior agreed sex relation the level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as evaluated to be less serious than

in the case in which lovers without one.

- People related factors
 - Women judged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to be higher, the level of punishment to be more serious, and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to be lower, and showed the higher rate of judging the accused guilty than men.
 - The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of men are higher than that of women.
 - Research participants in their 20s were more likely to answer the accused to be guilty than those with 30's or more, and less likely to attribute to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Participants in their 30's or more showed higher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than those in their 20's.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judgment of sexual violence cases

-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 If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is evaluated to be higher. If the closer the accused-the victim and the higher the evaluator's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is evaluated to be lower.
 -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it shows the higher rate in judging the accused to be guilty, and if the evaluator has the higher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the accused is judged to be not guilty.
 - If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the victim corresponds with the conventional 'ideal victim',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the accused is judged to be punished more seriously. If the accused and the victim are close, and the evaluator's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is higher, the punishment level of the accused is judged to be lower.

- If the evaluator is older, and has higher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is judged to be higher in the occurrence of rape case. If the evaluator is a woman,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was evaluated to be lower,
-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 In terms of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if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it is high, but when the accused and the victim is close, it is evaluated to be lower.
 - In terms of judging the guilty of the accused, if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it is high.
 - In terms of level of punishment of the accused,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victim corresponds with the conventional ideal victim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and the age of evaluator is higher, it gets higher, but if the accused and the victim is close, it gets lower.
 - When the evaluator is a woman,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is evaluated to be lower, but when the age of evaluator is higher, it is evaluated to be higher.

□ Results of mediation analyses

-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 Ambivalent, hostile sexism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age and sex of evaluato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respectively. That is, when the evaluator is a man, and is older, the ambivalent sexism is higher, and when ambivalent sexism is higher,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was evaluated to be higher.
 - Benevolent sexism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sex of evaluato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That is, when the evaluator is a man, the benevolent sexism is higher, and when benevolent sexism is higher,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was evaluated to be higher.

- The rape myth acceptance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age of evaluator and judging the accused to be guilty or not, and the age of evaluator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respectively. That is, when the evaluator is older, the rape myth acceptance is higher, and when rape myth acceptance is higher, the accused is evaluated to be innoc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is evaluated to be higher.
-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and judging the accused to be guilty or no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accused-the victim and judging the accused to be guilty or not. That is,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high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higher, the accused is likely to be judged as guilty. When the accused and the victim are closer,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was judged to be low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lower, the accused is likely to be judged as innocent.
 -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and the level of punish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accused-the victim(2nd stage) and the level of punishment, respectively. That is,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high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higher, the accused is the subject to the more severe punishment. In addition, if the accused and the victim are lovers,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was judged to be low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lower, the accused is the subject to the less severe punishment.

-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cts as complete mediator between the consistency of victim's stat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used -the victim, and the sex of evaluator, and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That is,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the evaluator is a woma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was evaluated to be high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is higher,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was judged to be lower. In addition, if the accused and the victim are close,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was judged to be lower, and w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was judged to be lower, the responsibility of victim was evaluated to be higher.

Chapter 3 The ground and the factor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sexual violence victim's statement: Case study

□ Analysis of judgments on sexual assault case

- Summarizes and analyzes the standard and the ground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presented on the judgment of higher court targeting 8 sexual violence cases and the case of which judgments are different in the lower court and the higher court since the supreme court emphasized 'gender sensitivity'.
- In judg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the court should confirm that it considered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statement, the circumstances before the sexual act, the circumstance at the time of sexual act, the circumstances after the sexual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accused, and various circumstances which can be classified others.
- When the major part of victim's statement has no specificity, consistency,

and reasonability, the court tended to reject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but in other cases, even if the circumstance which can doubt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is found, the court considers the additional circumstances in relation with this such as the reason of such a circumstance and individual special circumstance of victim comprehensively, if such circumstances can be consider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fact of damage, it showed the tendency to recognize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 In many cases among analyzed cases, lower court rejected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on the ground that doubt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while the higher court recognized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by considering the additional circumstances in relation with this such as the reason of such a circumstance and individual special circumstance of victim comprehensively, and such an attitude of higher court judgment can be described to reflect 'gender sensitivity'.

□ Analysis of lower court judgments

- The case analysis of lower court judgments on 271 rape cases allows to categorize the judgment ground of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nd its factor and to suggest the case in which the gender sensitivity/gender bias by type.
- When judg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the court use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statement, and the factors that reflect the specificity of the sexual violence crime (victim-likeness, the degree of resistance, previous sex history, reporting date, etc.) are used as the basis for judg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in which such judgment factors are applied from the view based on the gender sensitivity, it shows the court tends to judge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by considering each circumstance and the experience rule of sexual violence cases rather than the experience

rule of reasonable common people. However, some judgments describe the decisions based on the prejudice about the conventional victim likeness not considering the individual nature of sexual violence victim, regardless of the conviction or sentencing in the case, the presence of these decisions in the judgments still cause some doubt regarding the gender sensitivity of some judges.

Chapter 4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and improving the system

-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shown as a result of research.
 -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at the ambivalent sexism (hostile, benevolent) and rape myth acceptance affects judg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nd responsibility, the guilty of the accused and their punishment shows the possibility that the establishment of rape case and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in the criminal procedure can be denied and rejected depending on the prejudice of the working staffs or intuitive impressions of the victims, subjective evaluations and arbitrary interpretations of judges and juror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to arrange the concrete guidance for the investigation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and to perform the related education and to continue the monitoring so that the professional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an proceed with objective and fair procedure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and testimony of the victims.

- Implications of system improvement shown through case analysis and case judgment analysis
 - The court should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m by critically reviewing the existing ideas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be able to be applied in judging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s, and even if the circumstance which can doubt the reliability of victim statement is found, it should consider the specific circumstance of victim more elaborately.
 - Because many cases have been accumulated over time by the idea that emphasizes 'victim-likeness' before 'gender sensitivity' is emphasize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process of proving which is sufficient to persuade the accused and the attorney in judging the case in which new logical arguments breaking the old ideas.
 - Therefore, when the court judges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of sexual violence victim with 'gender sensitivity', it should review the old ideas critically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m or not. It is necessary to list the sufficient process of proving to persuade the accused and the attorney who are accustomed to the old idea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or to prevent from judging the reliability of victim's statement according to the subjective feelings.

부록

1. 판결문 기록조사지설문

☐ 판결문 조사기록지 일련번호:

			-	
--	--	--	---	--

▪ 조사원 _____

A. 사건개요

1. 사건판결법원

- | | | | | | |
|---------|---------|---------|---------|----------|---------|
| ① 광주 | ② 광주/목포 | ③ 대구 | ④ 대구/경주 | ⑤ 대구/김천 | ⑥ 대구/서부 |
| ⑦ 대구/영덕 | ⑧ 대구/포항 | ⑨ 대전 | ⑩ 대전/공주 | ⑪ 대전/논산 | ⑫ 대전/서산 |
| ⑬ 대전/천안 | ⑭ 대전/홍성 | ⑮ 부산 | ⑯ 부산/동부 | ⑰ 서울남부 | ⑱ 서울동부 |
| ⑲ 서울북부 | ⑳ 서울서부 | ㉑ 서울중앙 | ㉒ 수원 | ㉓ 수원/성남 | ㉔ 수원/안산 |
| ㉕ 수원/안양 | ㉖ 수원/평택 | ㉗ 울산 | ㉘ 의정부 | ㉙ 의정부/고양 | ㉚ 인천 |
| ㉛ 인천/부천 | ㉜ 전주 | ㉝ 전주/군산 | ㉞ 전주/남원 | ㉟ 제주 | ㊱ 창원 |
| ㊲ 창원/거창 | ㊳ 창원/마산 | ㊴ 창원/진주 | ㊵ 창원/통영 | ㊶ 청주 | ㊷ 청주/제천 |
| ㊸ 춘천 | ㊹ 춘천/강릉 | ㊺ 춘천/속초 | ㊻ 춘천/원주 | | |

2. 사건번호 _____

3. 선고일 _____

4. 현 사건의 선고심급

- | | | |
|------|-------|-------|
| ① 1심 | ② 항소심 | ③ 상고심 |
|------|-------|-------|

개월

11. 판사 _____

B. 가해자 관련

1. 가해자의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2. 가해자의 직업(직접기입) _____

3. 가해자의 연령(직접기입) _____세

4. 가해자의 국적

- ① 내국인 ② 외국인(※ 4-1)

4-1. 외국인인 경우, 국적(직접기입) _____

5. 가해자의 정신 및 신체장애여부

- | | |
|--------|----------|
| ① 신체장애 | ⑤ 정신지체 |
| ② 정신분열 | ⑥ 알코올 중독 |
| ③ 우울증 | ⑦ 기타질환 |
| ④ 정동장애 | |

6. 가해자의 혼인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7. 가해자의 범죄경력여부

- ① 있음 ② 초범(※ C-1)

7-1. 범수 _____범

7-2. 성폭력범죄전과 여부

- ① 있음 ② 없음

C. 피해자

1. 피해자의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2. 피해자의 직업(직접기입) _____

3. 피해자의 연령(직접기입) _____세

4. 피해자의 국적

- ① 내국인 ② 외국인(※ 4-1)

4-1. 외국인인 경우, 국적(직접기입) _____

5. 피해자의 정신 및 신체장애여부

- | | |
|--------|----------|
| ① 신체장애 | ⑤ 정신지체 |
| ② 정신분열 | ⑥ 알코올 중독 |
| ③ 우울증 | ⑦ 기타질환 |
| ④ 정동장애 | |

6. 피해자의 혼인여부

- ① 미혼 ② 기혼

D. 사건관련

1.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① 친인척
- ② 서로 잘 아는 사이(사건 전 상호작용 있음)
- ③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사건 전 상호작용 없음)
- ④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사건 전 상호작용 없음)
- ⑤ 온라인상으로 알다가 만난 사이
- ⑥ 사건 직전 처음 만난 사람(사건 전 상호작용 있음)
- ⑦ 모르는 사람(사건 전 상호작용 없음)
- ⑧ 기타(직접기입) _____

1-1. 가해자와 피해자 이전 성관계 여부

- ① 있음 ② 없음

2.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 | | | |
|------------------|-----------|-----------------|
| ① 친부모 | ② 의부모/양부모 | ③ 조부모 |
| ④ 형제(자매) | ⑤ 동거친척 | ⑥ 비동거친척 |
| ⑦ 배우자 | ⑧ 동거인 | ⑨ 애인 |
| ⑩ 전 배우자 | ⑪ 전 동거인 | ⑫ 전 애인 |
| ⑬ 친구 | ⑭ 동네사람 | ⑮ 선생님(학교/학원/교회) |
| ⑯ 직장상사 | ⑰ 직장동료 | ⑱ 부하직원 |
| ⑲ 거래처 직원 | ⑳ 종교관련자 | |
| ㉑ 기타(직접기입) _____ | | |

3. 사건발생일시(동일가해자)

3-1. 피해횟수가 일 회인 경우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오전/오후) _____시 _____분 경

3-2. 동일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경우 범행 횟수

_____회

3-3. 동일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신고가 지연된 원인(직접기입)

4. 사건발생지역 및 구체적인 장소

4-1. 사건발생지역

- | | | | | |
|------|------|------|------|------|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부산 | ⑤ 대구 |
| ⑥ 광주 | ⑦ 대전 | ⑧ 울산 | ⑨ 세종 | ⑩ 강원 |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경북 | ⑭ 경남 | ⑮ 전북 |
| ⑯ 전남 | ⑰ 제주 | | | |

4-2. 사건발생장소(동일가해자, 중복체크가능)

- | | |
|-------------------------|------------------|
| ① 피해자의 주거 | ② 가해자의 주거 |
| ③ 양자 공동 주거 | ④ 양자 공동 영업, 근무지 |
| ⑤ 피해자의 영업, 근무지(아르바이트포함) | ⑥ 가해자의 영업, 근무지 |
| ⑦ 뒷골목이나 공터(동네주변) | ⑧ 공원이나 야외의 한적한 곳 |
| ⑨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 ⑩ 차량 내 |
| ⑪ 유흥업소 | ⑫ 숙박업소 |
| ⑬ 노래방(비디오방, DVD방 등) | ⑭ 공중화장실(상가화장실) |
| ⑮ 기타(직접기입) _____ | |

5.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 | | |
|---------|----------------|
| ① 음주안함 | ②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
| ③ 약간 취함 | ④ 만취 |

6.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 | | |
|---------|----------------|
| ① 음주안함 | ②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
| ③ 약간 취함 | ④ 만취 |

7.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 복용 여부

- | | |
|--------------|----------------|
| ① 복용안함 | ② 복용했으나 정신은 있음 |
| ③ 복용하여 약간 혼미 | ④ 복용하여 극도로 혼미 |

8. 범행당시 피해자의 약물 복용 여부

- | | |
|--------------|----------------|
| ① 복용안함 | ② 복용했으나 정신은 있음 |
| ③ 복용하여 약간 혼미 | ④ 복용하여 극도로 혼미 |

9. 성폭행 특성

- | | |
|-------------------|------------------|
| ① 성적키스 | ② 애무 |
| ③ 자위 | ④ 구강삽입 |
| ⑤ 손가락 삽입 | ⑥ 항문 삽입 |
| ⑦ 성기삽입 | ⑧ 이물질 삽입 |
| ⑨ 드라이 섹스(성기 문지르기) | ⑩ 기타(직접기입) _____ |

10. 폭행특성

- ① 협박 및 폭행 없음(피해자 만취 등 저항불능상태 포함)
- ② 완력사용
- ③ 흉기로 위협
- ④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기(1회)
- ⑤ 2회 이상 구타
- ⑥ 흉기로 찌르기
- ⑦ 발로 밟기
- ⑧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 ⑨ 결박(테이프, 끈 등)
- ⑩ 감금
- ⑪ 피해자의 겉옷이나 속옷을 찢거나 자름
- ⑫ 기타(직접기입) _____

10-1. 물리적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했는지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0-2. 물리적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한 경우, 원인
(직접기입)

11. 범행 시 도구사용여부

① 사용안함

② 콘돔사용

③ 장갑착용

④ 흉기소지

⑤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

⑥ 결박도구 소지(끈, 테이프 등)

⑦ 차량 사용

⑧ 약물사용

⑨ 기타(직접기입) _____

12. 범행 시 피해자의 복장(노출정도)

① 있음(☞ 12-1)

② 없음

12-1 피해자 복장 노출에 대한 판결문 내 언급사항(직접 기입)

13. 범행 시 피해자의 저항정도

① 특별한 반응 없음

② 간청(폭행을 그만두기를 빌기 등)

③ 협상(돈을 주겠다고 협상 등)

④ 언어적 저항(소리 지름 등)

⑤ 물리적 힘 사용(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밀기)

⑥ 협박

⑦ 도망

⑧ 기타(직접기입)

E. 피해자 진술신빙성 관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없는) 이유

(※ 피해자 진술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기입-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판단 부분 입력)

2. 실험연구 설문지

**성폭력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및
판단자 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본 설문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되며, 참여에 대한 감사 표시로 소정의 기프티콘이 제공될 것입니다. 설문지 문항은 총 58문항이며,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귀하께서 동의서를 잘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연구 참여에 체크해 주십시오. 모든 내용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께서 생각하신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____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다음 사건에 대한 묘사를 읽고, 이후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실험조건 1: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부합), 처음 만난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2: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 발생 이전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실험조건 3: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

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으나,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실험조건 4: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처음 만난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5: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 발생 이전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6: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으나,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7: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 발생 이전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8: 진술 일관성(높음), '피해자다움'(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력 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으나,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2회 진술에서도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대체로 상이한 부분이 없었다.

실험조건 9: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비부합), 처음 만난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이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사실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실험조건 10: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부합), 처음 만난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여, 2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그 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실험조건 11: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역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고, 본 사건 발생 이전 과거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실험조건 12: 진술 일관성(낮음), '피해자다움'(부합), 연인 사이(성관계 전역 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월 중순 피고인(남, 24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여 밤 00:20-01:00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DVD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다음,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연인 관계였으나,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피고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2회 진술에서는 폭행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을 반복하는 등 재판에 이르는 절차 동안 진술의 주요 내용에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앞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은 사회통념상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가깝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가깝다

2. 앞의 내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____

① 처음 만난 사이 ② 이웃 ③ 직장 동료 ④ 연인 ⑤ 가족

3. 앞의 내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 일관성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일관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일관적이다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이 사건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신빙성이 없다

매우 신빙성이 높다

2. 이 사건의 피고인이 유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예 ② 아니오

3. 이 사건의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처벌 받지 않는다

최대한 무거운 처벌

4.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책임이 없다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 등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 여성들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평등만을 주장한다. 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3. 여성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4. 신체상의 위험부담이 큰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감당해야 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 남자는 이지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므로 그에 맞는 일을 할 때 남녀가 조화를 이룬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6. 남성은 여성과의 사랑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7. 여학생보다는 책임질 줄 아는 남학생이 학급반장이 되어야 학급운영이 더 잘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8.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하여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9. 여자가 먼저 성적으로 유혹하고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0. 가벼운 집일 지라도 여성에게 들리기보다는 남성이 들어 주어야 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1.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2. 여성의 사랑을 얻은 남자가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3.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남성에게 여성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4.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직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5. 여성들은 데이트 비용은 모두 남성에게 떠맡기면서 비싼 명품만을 선호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6. 추운 날씨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7.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8. 사랑하는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19. 남자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성들은 항상 불평을 늘어놓는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0.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기분이 쉽게 상하는 편이어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1.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2. 좁은 길에서 남녀가 마주치면 남성이 먼저 길을 양보해야 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3.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좋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24. 사랑하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의 삶은 무의미 할 것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면, 여성 또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2.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3. 여성이 남자와 단 둘이 방안으로 들어간다면, 강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탓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4. 문란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문제를 자초하는 것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5. 여성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는 종종 '싫다'고 말하는 방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6. 여성이 먼저 키스를 하거나 유혹하기 시작했다면, 남성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7.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대체로 강한 성욕 때문이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8. 남성은 보통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의도는 없으나, 때로는 견장을 수 없이 너무 흥분하기도 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9. 강간은 남성의 성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0. 남성이 술에 취했다면,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강간할 수도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1. 남성이 술에 취해서 스스로가 하는 행동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강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면 이는 강간이라고 할 수 없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3. 여성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말로 표현했을지라도, 신체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14. 만약 여성이 신체적으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15. 여성에게 멍이나 상처가 없다면, 강간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16. ‘강간죄’로 기소된 사람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_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17. 여성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_____

① ② ③ ④ ⑤

☒ 전적으로 동의한다

18.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은 실제로는 성관계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이를 후회하는 것이다. 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19. 강간 신고는 종종 남성에게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_____

① ② ③ ④ ⑤

☐ 전적으로 동의한다

20.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여성들 중 많은 경우가, 남성을 유혹했지만 나중에 이를 후회한 것이다._____

① ② ③ ④ ⑤

전적으로 동의한다

21. 많은 경우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22. 바람을 피우다 걸린 여성들은 때때로 그것이 강간이었다고 주장한다.____

①

②

③

④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____

1) 여성 2) 남성

2. 귀하의 만 나이를 적어주십시오.

()세

3. 귀하의 현재 소속을 적어주십시오.____

1) 강원대

2) 건국대

3) 경북대

4) 경희대

5) 고려대

6) 동아대

7) 부산대

8) 서강대

9) 서울대

10) 서울시립대

11) 성균관대

12) 아주대

13) 연세대

14) 영남대

15) 원광대

16) 이화여대

17) 인하대

18) 전남대

19) 전북대

20) 제주대

21) 중앙대

22) 충남대

23) 충북대

24) 한국외대

25) 한양대

연구총서 20-A-03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판단 및 개선방안: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발행 | 2020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한인섭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5283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9908-74-4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